**금삼십육억육천이백만원(￦3,662,000,000)**

**우송, 예리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사업 자금재조달 프로젝트금융**

**대 출 약 정 서**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 차주 -

**주식회사 신한은행**

(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 대주 -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 대리금융기관 -

**2021년 9월 일**

목 차

[제 1 조 정의 및 해석 2](#_Toc83073595)

[제 1 항 정의 2](#_Toc83073596)

[제 2 항 참조사항 15](#_Toc83073597)

[제 2 조 대출약정 16](#_Toc83073598)

[제 1 항 차입의 종류 및 금액 16](#_Toc83073599)

[제 2 항 차입의 목적 16](#_Toc83073600)

[제 3 조 인출 16](#_Toc83073601)

[제 1 항 인출적격 및 인출순서 16](#_Toc83073602)

[제 2 항 인출의 방식과 절차 17](#_Toc83073603)

[제 3 항 인출요청의 취소불능 17](#_Toc83073604)

[제 4 조 이자, 연체이자 및 수수료 18](#_Toc83073605)

[제 1 항 이자의 상환 및 이자율 18](#_Toc83073606)

[제 2 항 연체이자 18](#_Toc83073607)

[제 3 항 대리기관수수료 18](#_Toc83073608)

[제 4 항 비용 18](#_Toc83073609)

[제 5 항 계산 19](#_Toc83073610)

[제 6 항 인지세 19](#_Toc83073611)

[제 7 항 지급의 미반환 19](#_Toc83073612)

[제 5 조 상환 및 기한전 상환 20](#_Toc83073613)

[제 1 항 상환 20](#_Toc83073614)

[제 2 항 기한전 상환 20](#_Toc83073615)

[제 3 항 약정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취소 24](#_Toc83073616)

[제 4 항 변제의 충당 24](#_Toc83073617)

[제 5 항 영업일 25](#_Toc83073618)

[제 6 항 지급방법 및 장소 25](#_Toc83073619)

[제 7 항 대출금 내역 25](#_Toc83073620)

[제 6 조 자금의 관리 26](#_Toc83073621)

[제 1 항 유보계정 26](#_Toc83073622)

[제 2 항 부채상환적립계정 28](#_Toc83073623)

[제 3 항 대수선비적립계정 29](#_Toc83073624)

[제 4 항 담보계정 29](#_Toc83073625)

[제 5 항 공통조항 30](#_Toc83073626)

[제 7 조 담 보 30](#_Toc83073627)

[제 1 항 예금계정에 대한 예금근질권 30](#_Toc83073628)

[제 2 항 전력대금청구권에 대한 질권 31](#_Toc83073629)

[제 3 항 계약상의 권리에 관한 채권담보계약서 31](#_Toc83073630)

[제 4 항 이건사업시설 등에 대한 동산양도담보 32](#_Toc83073631)

[제 5 항 출자자의 주식에 대한 주식근질권의 설정 32](#_Toc83073632)

[제 6 항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보험근질권의 설정 32](#_Toc83073633)

[제 7 항 이건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담보신탁 설정 33](#_Toc83073634)

[제 8 항 책임운영확약서 33](#_Toc83073635)

[제 9 항 출자자확약서 33](#_Toc83073636)

[제 10 항 기타 담보제공 33](#_Toc83073637)

[제 11 항 담보계약서 체결권한의 위임 33](#_Toc83073638)

[제 8 조 위법, 세금 및 공제 34](#_Toc83073639)

[제 1 항 위 법 34](#_Toc83073640)

[제 2 항 공제금지 34](#_Toc83073641)

[제 3 항 추가지급 34](#_Toc83073642)

[제 9 조 차주의 확인사항 35](#_Toc83073643)

[제 1 항 법인격 및 권한 35](#_Toc83073644)

[제 2 항 법령 및 기타 약정의 준수 36](#_Toc83073645)

[제 3 항 인·허가 등 36](#_Toc83073646)

[제 4 항 계약의 적법성 및 유효성 36](#_Toc83073647)

[제 5 항 사업관련서류 등 36](#_Toc83073648)

[제 6 항 채무불이행사유의 부존재 37](#_Toc83073649)

[제 7 항 이건사업부지에 대한 사용권의 확보 37](#_Toc83073650)

[제 8 항 분쟁 37](#_Toc83073651)

[제 9 항 지적재산권 등 37](#_Toc83073652)

[제 10 항 보험 등 38](#_Toc83073653)

[제 11 항 법적 절차 38](#_Toc83073654)

[제 12 항 제세공과금의 납부 38](#_Toc83073655)

[제 13 항 환경관련 사항의 준수 및 제반인·허가및승인 취득 38](#_Toc83073656)

[제 14 항 정보의 정확성 38](#_Toc83073657)

[제 15 항 부담의 부존재 39](#_Toc83073658)

[제 16 항 담보권 39](#_Toc83073659)

[제 17 항 회계 및 우발채무 39](#_Toc83073660)

[제 18 항 자금의 사용 40](#_Toc83073661)

[제 19 항 법령 위반사항의 부존재 40](#_Toc83073662)

[제 20 항 타법령 위반사항의 부존재 40](#_Toc83073663)

[제 21 항 신용정보 제공의 동의 40](#_Toc83073664)

[제 10 조 적극적 준수사항 41](#_Toc83073665)

[제 1 항 법인격의 유지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 41](#_Toc83073666)

[제 2 항 중요사항의 통지 41](#_Toc83073667)

[제 3 항 재무제표 등 41](#_Toc83073668)

[제 4 항 보험계약들의 체결 42](#_Toc83073669)

[제 5 항 확인사항 44](#_Toc83073670)

[제 6 항 법령의 준수 및 제반인·허가및승인 등의 유지 44](#_Toc83073671)

[제 7 항 의무의 이행 및 권리의 실행 44](#_Toc83073672)

[제 8 항 이약정에 따른 자금의 사용 45](#_Toc83073673)

[제 9 항 담보권의 제공 및 대주 채권의 지위 45](#_Toc83073674)

[제 10 항 사업관련자료 및 회계장부의 작성 및 유지 45](#_Toc83073675)

[제 11 항 중요통지문서 등의 제출 45](#_Toc83073676)

[제 12 항 이건사업시설의 유지관리 46](#_Toc83073677)

[제 13 항 검사 46](#_Toc83073678)

[제 14 항 신고사항, 출자자, 시공사 및 관리운영회사 변경 등에 대한 동의 46](#_Toc83073679)

[제 15 항 일정 사유 발생시 대안의 제시 47](#_Toc83073680)

[제 16 항 관련계약 체결의 통지 및 준수의 보장 48](#_Toc83073681)

[제 17 항 사업관련 자료 등의 작성 및 제출 48](#_Toc83073682)

[제 18 항 공급인증서매매계약 및 전력판매계약 관련 준수사항 48](#_Toc83073683)

[제 19 항 후순위조건의 충족 49](#_Toc83073684)

[제 20 항 사업개시신고 및 설비확인 등 49](#_Toc83073685)

[제 21 항 부채상환적립요구액의 유지 49](#_Toc83073686)

[제 22 항 임원진의 무보수 49](#_Toc83073687)

[제 23 항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50](#_Toc83073688)

[제 24 항 임대차계약의 준수 50](#_Toc83073689)

[제 25 항 자금부족법인에 대한 후순위 대여 50](#_Toc83073690)

[제 26 항 대수선비적립계정의 유지 50](#_Toc83073691)

[제 11 조 소극적 준수사항 50](#_Toc83073692)

[제 1 항 채무부담의 금지 50](#_Toc83073693)

[제 2 항 담보제공의 금지 51](#_Toc83073694)

[제 3 항 제한된 지급(Restricted Payment) 51](#_Toc83073695)

[제 4 항 계약변경 등의 금지 51](#_Toc83073696)

[제 5 항 자본감소 등의 금지 52](#_Toc83073697)

[제 6 항 증권발행 및 양도의 금지 52](#_Toc83073698)

[제 7 항 추가적 비용지출의 금지 52](#_Toc83073699)

[제 8 항 기타 금지되는 행위 53](#_Toc83073700)

[제 12 조 인출선행조건 및 후행조건 53](#_Toc83073701)

[제 1 항 대출금의 최초인출에 관한 선행조건 53](#_Toc83073702)

[제 2 항 기타 공통된 선행조건 54](#_Toc83073703)

[제 3 항 인출후행조건 54](#_Toc83073704)

[제 13 조 채무불이행사유 55](#_Toc83073705)

[제 1 항 채무불이행사유 55](#_Toc83073706)

[제 2 항 기한의 이익 상실의 결과 58](#_Toc83073707)

[제 14 조 대리금융기관과 대주 59](#_Toc83073708)

[제 1 항 선 임 59](#_Toc83073709)

[제 2 항 대주결정사항 및 권한 60](#_Toc83073710)

[제 3 항 비용의 상환 62](#_Toc83073711)

[제 4 항 책임 및 신용평가 62](#_Toc83073712)

[제 5 항 대리금융기관의 신뢰 62](#_Toc83073713)

[제 6 항 대리금융기관에 의한 지급 63](#_Toc83073714)

[제 15 조 기타 조항 63](#_Toc83073715)

[제 1 항 기간 63](#_Toc83073716)

[제 2 항 완전한 합의 63](#_Toc83073717)

[제 3 항 약정서의 수정 63](#_Toc83073718)

[제 4 항 포기, 누적적 권리 64](#_Toc83073719)

[제 5 항 양도 64](#_Toc83073720)

[제 6 항 준거법 65](#_Toc83073721)

[제 7 항 관할법원 65](#_Toc83073722)

[제 8 항 상계 65](#_Toc83073723)

[제 9 항 통지 66](#_Toc83073724)

[제 10 항 비밀유지 67](#_Toc83073725)

[제 11 항 일부무효 등 67](#_Toc83073726)

부록

부록 I 출자자의 지분비율

부록 II 상환계획표

부록 III 인출선행조건

부록 IV 시설 및 부지내역

부록 V 금전대여 법인

별첨 서류 및 계약서

별첨 가 인출요청서

별첨 나 예금인출동의서

별첨 다 예금근질권설정계약서

별첨 라 채권근질권설정계약서

별첨 마 채권양도담보계약서

별첨 바 동산양도담보계약서

별첨 사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별첨 아 보험근질권설정계약서

별첨 자 책임운영확약서

별첨 차 출자자확약서

**대 출 약 정 서**

이 대출약정(서)(“이약정(서)”)는 2021년 9월 28일 아래 당사자들간에 체결된다.

경상북도 상주시 지천동 312-5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이하 “차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이하 “대주”);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1, 9층(여의도동, SK증권빌딩)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대리금융기관” 또는 “집합투자업자”)

차주는 부록 IV에 기재된 부지(이하 “이건사업부지”) 일원에 신재생에너지법(제1조에 정의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인 태양광발전소 및 그 부속시설(이하 “이건사업시설”이라 하며, 이건사업부지 및 이건사업시설의 상세내역은 부록 IV에 기재된 바아 같음)을 건설하고 그로부터 전력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건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

차주는 이건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KIAMCO 태양광발전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전문투자형)의 신탁업자}(이하 “기존대주”)과 2019년 10월 25일자 금삼십억사천구백만원(￦3,049,000,000) 대출약정서(이하 “기존대출약정(서)”라고 하고 이에 대한 수정, 변경, 보충계약을 포함함)를 체결하였다.

차주는 기존대출약정서에 따른 대출원리금(이하 “기존차입금”) 전액 및 이에 수반하는 비용을 상환 및 지급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이 약정서에 따른 금융비용 기타 대주가 인정하는 이건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금 총액이 금삼십육억육천이백만원(￦3,662,000,000)(이하 “대출약정금” 또는 “약정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주에게 대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에 대주는 이약정서의 제조건에 따라 차주가 요청한 대출을 실행하고자 한다.

한편 대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인 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이하 “본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로서 본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이약정을 체결하며, 대주가 이약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비용과 의무는 본건 투자신탁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 제 1 조 정의 및 해석

## 제 1 항 정의

위에서 정의된 용어 외에 이약정서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문맥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용어는 단수 및 복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감리계약(서)”

는 이건사업시설의 공사감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감리자와 차주 사이에 체결된 감리계약(서)를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또는 보충계약을 포함한다.

“감리자”

는 차주와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이건사업시설의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전문회사 및 그의 적법한 승계인을 의미한다.

“거래서류”

는 금융관련서류와 사업관련서류를 의미한다.

“건설기간”

은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른 착공일로부터 운영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공급인증서” 또는 “REC”

는 차주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의미한다.

“공급인증서매매계약(서)”

는 이건사업과 관련하여 차주가「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건사업시설에 대해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판매하기 위하여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공급인증서매매계약서를 말하며, 그 수정, 변경 또는 보충계약을 포함한다.

“공급인증서매매대금”

은 차주가 공급인증서매매계약서에 따라 공급인증서 매매의 대가로 수령하는 대금을 의미하며, 공급인증서현물시장판매로 수령한 것을 포함한다.

“공급인증서현물시장판매”는 공급인증서매매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급인증서를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대금” 또는 “공사비”는 이건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서의 제규정에 따라 차주가 시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을 말한다.

“공사도급계약(서)”

는 이건사업시설 또는 그와 관련된 설계의 변경(필요한 경우), 조달, 건설 및 완공 등을 위하여 차주와 시공사 사이에 체결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또는 보충계약을 포함한다.

“관리운영수수료”는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른 관리운영수수료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역 및 지급조건은 관리운영위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와 같다.

“관리운영위탁계약(서)”

는 차주가 이건사업시설의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등을 관리운영회사에게 위탁하는 내용으로 차주, 관리운영회사 및 재수탁사 주식회사 센트럴이엔지 사이에 체결되는 관리운영위탁계약(서)를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또는 보충계약을 포함한다.

“관리운영회사”

는 관리운영계약에 따라 차주로부터 이건사업시설의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업무를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위탁받은 한화에너지 주식회사 및 그 적법한 승계인을 의미한다.

“금융관련서류”

는 이약정서 및 담보계약서를 의미한다.

“기초현금잔액”은 차주의 어느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부채상환적립금을포함 또는 제외한 현금 및 현금등가물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

“누적부채상환비율”

은 차주의 어느 사업연도 동안의 “누적순가용현금잔액”을 그 사업연도 동안의 대출원리금 상환액(당해 사업년도 동안 상환되기로 예정된 대출원리금 및 각종 수수료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누적순가용현금잔액”은 (가) “기초현금잔액” 및 “제예금의 기초잔액” + (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다) 대출금의 이자 및 수수료 + (라) 당해년도 동안의 자본적 지출에 사용된 추가 차입금 및 추가 자본금 – (마) “당해년도 자본적 지출액” – (바) “배당금지급액”을 말한다.

위 산식에서 “대출원리금 상환액”은 동 기간 동안 차주가 부담한 대출금의 원금, 이자 및 각종 수수료의 합계액을 말하며, “기초현금잔액”은 대차대조표상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부채상환적립계정 예치금과 같이 대출약정서상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등가물을 제외함)을 말하고, “제예금의 기초잔액”은 대차대조표상의 단기금융상품과 장기금융상품의 합계액을 말하며, “당해년도 자본적 지출액”은 현금흐름표상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에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단순부채상환비율”은 차주의 어느 사업연도 동안의 “순가용현금흐름”을 그 사업연도 동안의 대출원리금 상환액(당해 사업년도 동안 상환되기로 예정된 대출원리금 및 각종 수수료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담보계약서”

는 다음의 계약 또는 문서(그 수정, 변경 또는 보충의 경우를 포함)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에 의한 예금근질권설정계약서(“예금근질권설정계약서”);
2. 제7조 제2항에 의한 채권근질권설정계약서(“채권근질권설정계약서”);
3. 제7조 제3항에 의한 채권양도담보계약서(“채권양도담보계약서”);
4. 제7조 제4항에 의한 동산양도담보계약서(“동산양도담보계약서”);
5. 제7조 제5항에 의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6. 제7조 제6항에 의한 보험근질권설정계약서(“보험근질권설정계약서”);
7. 제7조 제7항에 의한 토지담보신탁계약서(“토지담보신탁계약서”);
8. 제7조 제8항에 의한 책임운영확약서(“책임운영확약서”);
9. 제7조 제9항에 의한 출자자확약서(“출자자확약서”); 및
10. 기타 차주 또는 출자자를 포함한 제3자가 이약정을 포함한 금융관련서류와 관련하여 차주가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주 또는 대주의 대리인인 대리금융기관과 체결 또는 작성하거나 체결 또는 작성하여 대주 또는 대주의 대리인인 대리금융기관에게 제출하는 계약서, 약정서 및 서류

“담보계정”

은 이약정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대수선비적립계정”은 이약정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대수선비적립금”은 이건사업시설의 대수선 및 대리금융기관이 별도로 승인하는 용도를 위하여 차주가 최초인출일에 대수선비적립계정에 적립하여야 하는 금원으로서 부록V에 기재된 바와 같다. 대수선비적립금의 적립일정은 대리금융기관이 차주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대출금”

은 이약정을 포함한 금융관련서류에 따라 차주가 행하는 모든 인출의 합계액의 그때 그때의 미상환 잔액을 의미한다.

“대출원리금” 또는 “피담보채무”

는 이약정에서 달리 구분하여 정의하지 아니하는 한 (i) 이약정에 따른 대출금과 그에 대해 발생하는 미상환인 이자의 합계액 및 (ii) 금융관련서류에 따라 그때 그때 지급하여야 할 기타 금액 및 그에 대해 발생한 미상환 이자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

“목표만기일”

은 부록II 상환계획표의 최종상환일부터 역순으로 4번의 회차 상환일까지의 각 상환금액을 역순으로 모두 상환하는 날을 의미한다. 의문을 피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만약 부록II 상환계획표의 최종 상환회차가 80회차라고 가정할 경우, 목표만기일은 상환 80회차부터 77회차까지의 각 상환금액이 역순으로 모두 상환되는 날을 말한다.

“보험계약(들)”

은 차주가 이약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이건사업시설 또는 이건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체결하거나 또는 시공사, 관리운영회사로 하여금 체결하도록 한 보증 또는 보험계약(들)을 의미한다.

“부채상환적립계정”은 이약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부채상환적립요구액”은 최초인출일 또는 어느 이자지급일 기준 삼(3)개월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원리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최초부채상환적립액”은 부채상환적립요구액 중 최초인출일에 적립하여야 하는 금원으로서 부록V에 기재된 바와 같다.

“분기”

는 특정 연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 4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9월 30일 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각 기간을 의미한다.

“사업관련서류”

는 차주의 정관, 공사도급계약서, 공급인증서매매계약서, 관리운영위탁계약서, 보험계약, 감리계약서, 전력판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기타 이건사업과 관련하여 작성 또는 체결된 차주가 당사자인 제반 문서 및 계약들(동 문서 또는 계약들에 따라 작성 또는 체결된 문서 또는 계약들을 포함한다)을 의미하며, 기타 금융관련서류에 따라 대주 또는 대주의 대리인인 대리금융기관과 차주 간에 합의된 다른 계약서나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상환기일”

은 이약정서에 따라 대출금이 상환되어야 할 날로서, 구체적으로 이약정서 제5조 제1항 (가) 및 부록 II (상환계획표)에서 정한 날들을 의미한다.

“수수료”

는 차주가 이약정을 비롯한 금융관련서류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반 수수료를 의미한다.

“순가용현금흐름”은 (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나) 대출금의 이자 및 수수료 + (다) 당해년도 동안의 자본적 지출에 사용된 추가 차입금 및 추가 자본금 – (라) “당해년도 자본적 지출액”을 의미한다.

“순처분대가”

는 (i) 자산의처분에 있어서는 동 자산의처분과 관련하여 수령한 순현금지급금액을 의미하고, (ii) 보험사고에 있어서는 차주가 동 보험사고에 대하여 수령한 보험금, 수용보상금 기타 보상금에서 (A) 동 사고와 관련하여 차주에게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과 (B) 동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차주가 지급하여야 할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시공사”

는 차주로부터 이건사업과 관련한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센트럴이엔지 및 그 적법한 승계인을 의미한다.

“신재생에너지법”

은 대한민국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의미하며, 그 개정 또는 대체된 경우를 포함한다.

“약정(금)”

은 이 약정서에 따라 대주가 차주에게 금삼십육억육천이백만원(￦3,662,000,000)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할 것을 약정한 금액 또는 문맥에 따라 대주가 이약정서의 제조건에 따라 총원금이 위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차주에게 대출할 의무(내지 그 금액)를 의미한다.

“영업일”

은 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개점하여 영업을 하는 날을 의미한다.

“예금계정”

은 이약정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제6조에 따라 대주 또는 대리금융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개설하는 모든 예금계정을 의미한다.

“예치금지급일”은 제6조 제1항 (다)호에 정하고 있는 차주의 유보계정으로부터 자금의 출금이 이루어지는 날로서 각 이자지급일을 말한다. 단, 동 예치금지급일은 차주와 대리금융기관 간의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하여질 수 있다.

“운영개시일”은 차주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이건사업시설의 전부에 대한 준공 및 사용을 승인받고, 이건사업시설의 용도에 따라 생산된 전력의 전력시장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배전계통에 대한 공급이 개시됨으로써 상업운전이 개시(이하 “운영개시”)된 날을 말한다.

“운영기간”

은 이건사업시설의 운영개시일로부터 상업운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유보계정”

은 이약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원” 또는 “￦”

는 대한민국의 법정통화인 원화를 의미한다.

“이건사업”

은 전문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이건사업부지”는 전문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이건사업시설”은 전문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이약정의기간”

은 이약정 제15조 제1항에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이자기간”

은 (i) 최초 이자기간은 최초인출일로부터, 최초인출일이 포함된 해당 이자단위분기의 말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ii) 그 후부터는 직전 이자기간의 말일부터 해당 이자단위분기의 말일까지의 각 삼(3)개월의 기간을 말한다. 단, (a) 최초인출 이외의 인출이 이자지급일 이외의 영업일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최초의 이자기간은 해당 인출일로부터 당시 진행 중인 이자기간 말일까지로 하고, (b) 어느 이자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이자기간은 당해 이자기간 말일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까지로 하고, 다음 이자기간은 직전 이자기간 말일로부터 당해 이자기간의 말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동 이자기간 말일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까지로 하며, (c) 이자기간의 말일이 해당 대출금의 최종상환기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해당 이자기간의 말일은 해당 대출금의 최종상환기일에 도래하는 것으로 하며, (d)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한전 상환되거나 만기 상환될 경우에는 상환된 대출금에 대한 최종 이자기간은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당해 상환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자단위분기”는 어느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부터 해당 연도 3월 31일, 해당 연도의 3월 31일부터 6월 30일, 6월 30일부터 9월 30일, 9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한다.

“이자지급일”

은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금의 각 이자기간의 말일을 의미한다.

“인출”

은 제6조에 따른 계정 또는 예금의 인출을 제외하고는, 차주가 대출약정금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차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출가능기간”

은 이약정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i) 이약정 체결일로부터 삼(3)개월이 되는 날 또는 (ii) 대출금이 전액 인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인출가능일”

은 인출가능기간 중의 어느 영업일 중에서 대리금융기관과 차주가 협의하여 이약정에 따른 인출을 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한다.

“인출일”

은 제12조에서 정한 인출선행조건들이 모두 충족 또는 면제되어 약정금에 대한 각 인출이 실행되는 날을 말한다.

“일반사무관리위수탁계약”은 차주의 일반사무를 일반사무수탁회사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차주와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체결하는 일반사무위수탁계약을 말한다.

“일반사무수탁회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86, 6층 641호(쌍림동, 쌍림빌딩)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이씨인브파트너스(그 적법한 승계인 및 양수인 포함)를 말한다.

“임대차계약(서)”은 이건사업부지가 임대부지인 경우 이건사업부지와 관련하여 임차인으로서 차주와 임대인과 체결된 토지 임대차계약서를 말하며,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건사업부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지상권설정계약을 포함한다.

“자기자본금”

은 출자자가 차주에 납입하거나 납입할 예정인 자본금으로서 합계 금이억사천만원(￦240,000,000)을 의미한다.

“자산의처분”

은 차주가 제3자(정부를 포함한다)에게 이건사업시설 또는 이건사업에 대한 사업권의 매매, 양도, 이전 기타 처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적용할인율”은 CD 90일 금리를 의미한다.

“전력대금청구권”

은 차주가 이건사업시설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여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그 대가로 수취할 전력판매대금청구권을 의미한다.

“전력시장운영규칙”

은「전기사업법」제43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제정한 전력시장운영규칙을 말하며, 그 개정 또는 대체된 것을 포함한다.

“전력판매계약서(서)”

은 차주가 이건사업시설로부터 발생한 전력을 판매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또는 기타 제3자와 체결하는 전력매매계약(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한 신청서나 청약서 포함)을 의미한다.

“전력판매수입”

은 운영기간 동안 차주가 이건사업시설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여 수취한 수입을 말한다.

“정부”

는 대한민국정부를 의미하며, 이건사업에 대한 주무관청과 관계당국 및 정부조직법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조직을 포함한다.

“제반인·허가및승인”

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인∙허가 관청으로부터 사업시설의 착공, 준공 및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3자(정부를 포함한다)로부터 취득하거나 제3자(정부를 포함한다)에게 이행하여야 할 모든 승인, 허가, 동의, 인가, 특허, 자격, 내규, 양허, 증명, 면제, 신청, 평결, 명령, 규칙, 공시, 통지, 등록 등을 의미한다.

“제세공과금”

은 정부에 의하여 부과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국세, 지방세, 과징금, 수입세, 관세, 공제, 부담 및 원천징수 등 일체의 재정적 성격의 부과금을 의미한다.

“제예금”이라 함은 차주의 단기금융상품과 장기금융상품의 합계액을 말한다.

“주무관청”

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건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각 그 하부조직을 의미한다.

“준공”

은 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리금융기관에게 만족스러운 형식과 내용으로 다음의 각 사항이 충족된 상태를 말한다. 이약정을 포함한 금융관련서류상 “준공일”, “준공예정일” 또는 기타의 용어에 포함된 “준공”의 의미 또한 같다.

1. 이건사업시설이 공사도급계약서를 포함한 사업관련서류, 금융관련서류 및 관련 법령(환경, 전력 관련 법령 포함)에 따라 완공되고 즉시 완전한 운영개시가 가능할 것.
2. 관련 법령, 금융관련서류 및 사업관련서류상 이건사업시설의 완공 및 운영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승인(감리자의 준공확인, 계통연계,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검사 완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포함)이 완전하게 충족되었을 것.
3. 금융관련서류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건사업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담보(허용된 부담을 제외함)나 부담도 존재하지 아니할 것.
4. 금융관련서류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공사나 그 하수급인이 차주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권도 보유하지 아니할 것.
5. 기타 사업관련서류에 따른 준공의 제반 조건이 충족되었을 것.

“중대한 부정적 영향”

은 이약정서 체결 후 차주, 시공사 또는 관리운영회사의 영업 또는 재정상태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단, 이약정서와 관련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태의 인정 여부는 대주의 의견에 따른다.

1. 차주, 시공사 또는 관리운영회사의 이건사업과 관련된 영업, 운영이나 그 자산 기타 재정적 상태나 사업수행의 전망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한 때;
2. 차주, 시공사 또는 관리운영회사가, 이약정서를 포함한 여하한 금융관련서류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거나 그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또는 사업관련서류상 그 지급 기타 중요한 의무사항의 이행이나 사업관련서류상 어느 당사자에 대한 그의 권리실행에 있어, 이행불능 등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한 때;
3. 이건사업의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제반인·허가및승인이 무효이거나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등 사업관련서류 자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 또는 동 계약서상 차주, 시공사 또는 관리운영회사의 권리나 권리구제수단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한 때;
4. 차주, 시공사 또는 관리운영회사가 이건사업에 관한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하는 등 금융관련서류 자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차주가 제공한 담보의 유효성 내지 집행가능성을 포함함) 또는 동 계약서상 대주의 권리나 권리구제책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한 때; 또는
5. 기타 위 각 호에 유사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내용

“채무불이행가능사유”는 채무불이행사유와, 치유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하는 한 시간의 경과, 통지 또는 위 양자를 갖춤으로써 채무불이행사유를 구성할 어떠한 사건들을 말한다.

“채무불이행사유”

는 이약정 제13조 제1항에 열거된 각 사유를, “채무불이행”은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총투자비”

는 문맥에 따라 이건사업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총비용 또는 총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차주가 조달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i) 자기자본금 및 (ii) 타인자본을 총칭하여 의미한다.

“총현금수입”은 (a) 전력판매수입, 공급인증서판매수입, 최저발전시간보장금을 포함하여 관련 제계약에 따라 차주에게 지급되는 모든 현금 또는 그에 준하는 수입, (b) 차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모든 현금 또는 그에 준하는 수입, (c) 차주의 예금계정으로부터 발생하여 차주에게 이자로 지급되는 모든 현금 또는 그에 준하는 수입, (d) 금융관련서류에 의하여 허용되는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현금 또는 그에 준하는 수입, (e) 제세공과금의 환급 명목으로 차주가 수령하는 모든 현금 또는 그에 준하는 수입의 합계액을 말한다. 단, 총현금수입에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최소유지적립금”은 차주가 이약정서에 따라 최초인출일에 대수선비적립계좌에 예치, 적립하는 대수선비적립금 중 차주의 관리운영회사에 대한 관리운영수수료 지급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금원으로서 이약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한 이건사업시설에 대한 대수선을 위한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수선비적립계좌에 적립 및 유지되어야 할 최소한의 대수선비적립금액을 의미하고, 이건사업시설에 대한 최소유지적립금은 부록V에 기재된 바와 같다.

“최종상환기일”은 상환계획표상의 최종 상환기일을 말한다.

“최초인출일”은 차주가 이약정서에 따라 약정금을 최초로 인출하는 날을 말한다.

“추가공급인증서매출”은 차주의 신청에 따라 이건사업시설이「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민참여형 설비로 인정되어,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대한 추가 가중치를 부여받은 경우, 해당 추가 가중치에 따라 증가된 공급인증서 매출액을 말한다. 이를 명확히 하면, 추가공급인증서매출이란 이건사업시설이「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민참여형 설비에 해당할 경우의 공급인증서매출에서 이건사업시설이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민참여형 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의 공급인증서매출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출자자(들)”

는 차주의 주식을 취득한 차주의 주주(들) 및 그들의 승계인을 의미한다. 이약정 체결일 현재 출자자(들) 및 출자자별 예정 출자지분은 “부록 I 출자자(들)의 지분비율”에 기재된 바와 같다.

“출자지분”

은 각 출자자가 차주에 출자한 금액을 차주의 납입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며 이약정서 체결일 현재의 각 출자자의 (예정)출자지분은 “부록 I 출자자(들)의 지분비율”에 기재된 바와 같고, 그 이후의 출자지분은 차주의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그때 그때의 어느 출자자 소유 주식수를 그 당시의 차주의 발행주식 총수에 의하여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타인자본”

은 차주가 이건사업을 위하여 조달하여야 할 총투자비 중 이약정 및 금융관련서류에 따라 대주로부터 조달하여야 할 차입금을 의미한다.

“파산사유”

는 어느 당사자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1. 어느 당사자가 그 자신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파산, 회생절차, 또는 협조융자, 부도유예, 채무재조정, 사적 화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절차 또는 위 절차 등과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때;
2. 어느 당사자가 이러한 절차를 위한 보전관리인, 파산관재인, 관리인 등 직무수행자의 선임을 신청하거나 그 선임에 동의한 때;
3. 제3자가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 위에 기재된 절차의 개시 신청 또는 직무수행자의 선임을 신청하고 그 신청이 육십(60)일 이내에 기각 또는 각하되지 않은 때;
4.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 해산 또는 청산의 결의가 있거나, 법원에 그 해산 또는 청산을 위한 절차의 신청이 있는 때;
5. 어느 당사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된 때; 또는
6. 어느 당사자가 제세공과금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발행의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된 때.

“하자보수금”

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시공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하자보수금을 의미한다.

“허용된 부담”

은 ㈀ 거래서류에 따라 설정되었거나 설정되는 담보권, ㈁ 이약정서 체결일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취득 전부터 존속하고 있거나 동 재산의 취득가격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취득시 설정되는 담보, ㈂ 차입, 신용공여와 관계없이 통상적인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유치권(단, 차주가 가능한 조속히 동 유치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또는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담보 기타 재산상의 부담을 의미한다.

“허용된 부채”

는 (i) 사업관련서류 및 금융관련서류에 따라 부담하는 부채 (ii) 차주의 통상적인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상거래에 따른 부채 및 (iii) 차주가 대출금의 원금, 이자 또는 수수료 기타 이약정을 포함한 거래서류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차주가 대리금융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부록 V 금전대여 법인” 목록에 기재된 법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한도로 후순위조건으로 금전 차입하는 거래에 따른 부채를 의미한다.

“후순위” 또는 “후순위조건”

은 이약정을 포함한 금융관련서류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운영회사, 시공사, 출자자(들) 및/또는 제3자(이하 “후순위권리자”)의 차주에 대한 신용제공 등(출자자(들)의 차주에 대한 주주대여금, 거래서류에 따른 차주에 대한 공사대금, 관리운영비 기타 채권 수령 유보의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차주에 대하여 파산, 회생, 해산, 청산, 기업구조개선절차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를 포함함), (a) 후순위권리자가 차주에 대해서 보유하는 권리가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이 차주에 대해서 가지는 모든 권리에 대하여 변제의 순위, 담보권의 순위 등 권리의 우열관계에 있어서 항상 후순위이고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이 위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것(청구,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신청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것 포함)을 포함하여,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이 이약정서를 포함한 금융관련서류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모든 금원(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변제받는데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신용제공 등을 한 후순위권리자가 변제를 받기로 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그에 반하여 어느 후순위권리자가 변제를 받는 경우 이를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b) 위 (a)에 의한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후순위권리자가 위 지급을 위한 청구, 강제집행,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조건을 의미한다.

## 제 2 항 참조사항

이약정서에서

1. “개월(들)”이라 함은 어느 역월에서 개시하여 해당 역월 중 기간이 개시된 날에 숫자상으로 상응하는 날에 종료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단, 위 기간이 역월의 최종일에 개시된 경우 또는 해당역월에 숫자상으로 상응하는 날이 없는 경우 위 기간은 해당역월의 최종일에 끝나는 것으로 한다.
2. 이약정에서 모든 계약, 약정, 협약 및 문서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약정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규정 등에 대한 언급은 이약정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규정 등을 말하고, 이약정 체결일 이후 개정 또는 그를 대체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규정 등을 포함한다.
3. 이약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회계용어는 이약정에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에서 인정되는 일반회계원칙에 따른다.
4. 이약정에서 달리 규율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 대주, 대리금융기관, 출자자, 시공사, 관리운영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 기타 이약정에서 언급된 자는 그 적법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5. 이약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약정에 언급된 각종 사건, 사태, 상황 또는 현상(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구성하는 사유와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야기하는 사건, 사태, 상황 또는 현상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대주가 해당 시점에 대주에게 알려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판단에 따른다.

# 제 2 조 대출약정

## 제 1 항 차입의 종류 및 금액

대주는 인출가능기간 동안 이약정의 제조건 및 제9조에 기재된 차주의 확인에 의거하여 제3조에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약정금의 한도 내에서 차주에게 대출하기로 한다. 단, 대리금융기관은 사업타당성보고서 등을 근거로 약정금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초인출일 이전에 차주에 대한 통지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약정서상 약정금과 상환기일 및 기타 수치는 대리금융기관의 통지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으로 한다. 대출금의 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약정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금 중 기한전 상환되었거나 만기상환된 금액은 재차입할 수 없다.

## 제 2 항 차입의 목적

대출금은 차주가 기존차입금의 상환, 이건사업시설에 대한 설계, 건설 등 이건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총투자비 및 총투자비 조달에 따른 이자의 조달, 기타 대리금융기관이 인정하는 비용(제반 수수료, 건설자금이자 및 비용, 부채상환적립요구액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된다. 차주는 대출금을 위 각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 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다.

# 제 3 조 인출

## 제 1 항 인출적격 및 인출순서

차주는 이약정 제12조에 정한 약정금의 인출을 위한 인출선행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인출가능기간 동안 대주에게 본 조 제2항에 따라 대출을 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인출가능일에 약정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1)회에 한하여 대출금을 인출할 수 있다(단, 대리금융기관이 동의하는 경우 추가 인출이 가능함).

## 제 2 항 인출의 방식과 절차

(가) 차주는, 이약정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출가능기간 동안, 인출가능일 오(5)영업일(대리금융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작은 기간)전까지 대리금융기관에게, 해당 인출금의 사용처 및 필요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청구서, 영수증 등)을 포함한 “별첨 가”의 양식으로 된 인출요청서를 제출하여 인출하여야 할 금액을 대리금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대리금융기관은 차주의 증빙서류를 기초로 약정금의 한도 내에서 인출금액을 결정하여 대주에게 통보하며, 대주는 대리금융기관이 통보한 금액 및 인출일자 또는 기간을 확인한 후 제6조에 정한 유보계정에 당일 인출 가능한 자금으로 입금함으로써 약정금을 대출한다.

(나) 대주는 이약정에 따라 차주에게 대출하여야 하는 약정금을 위 인출가능일 서울시간 14:00시 이전에 제6조에 정한 유보계정에 당일 인출 가능한 자금으로 입금하여야 하고 그 입금(수령을 의미함)에 의하여 대주의 대출이 일어난 것으로 한다.

(다) 대주는 인출가능기간의 만료 후에는 이약정서에 따른 대출약정금에 대한 대출의무를 지지 않는다.

(라) 차주가 이약정 체결일로부터 삼(3)개월이 경과하도록 대출약정금의 인출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단, 불가항력 사유 등에 의하여 공사의 진행이 지체되는 경우 대리금융기관이 대주와 협의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대주는 이약정을 취소하고, 이약정서에 따른 대출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3 항 인출요청의 취소불능

이약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인출요청서는 차주를 구속하고, 철회할 수 없으며, 차주는 인출요청서의 내용에 따라 인출하여야 한다. 단, 차주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인출가능일 오(5)영업일 전(당일 포함)까지 대리금융기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인출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4 조 이자, 연체이자 및 수수료

## 제 1 항 이자의 상환 및 이자율

차주는 대출금의 최초인출일로부터 그 인출한 금액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대출금에 대하여 매 이자기간 동안 고정금리 연 삼점칠퍼센트(3.7%)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후불로 매 이자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 2 항 연체이자

차주가 금융관련서류에 따라 지급기일이 도래한(상환기일의 도래, 기한의 이익의 상실, 비자발적 기한전 상환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의 원금, 이자 또는 수수료 기타 이약정을 포함한 금융관련서류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기일에 상환하거나 지급하지 못하는 때에는, 차주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일로부터 전액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연체기간(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함) 동안 연 육점영퍼센트(6.00%)를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 제 3 항 대리기관수수료

차주는 대리금융기관에게 이 약정에 따른 대리금융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대한 대가로 최초인출일에 금이천만원(￦2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차주는 이 약정의 무효 또는 취소 등 여하한 사유로든 본 항에 따라 지급한 대리기관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 4 항 비용

차주는 이약정서에 따른 대출약정금의 인출여부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기타의 금전지출(동 비용 및 금전지출과 관련하여 그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 포함)을 부담하며, 대주 및/또는 대리금융기관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는 즉시, 대주 및/또는 대리금융기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이약정서, 담보계약서 및 그에 따라 작성되는 모든 서류(이약정서에 관한 실제의 또는 제안된 준비, 수정 및 약정상의 포기 또는 그에 대한 요청을 포함함)와 관련되는 수입인지대, 인쇄비, 통신비용, 기타 모든 부대비용과 서명식 행사비용 및 광고비용
2. 이약정서에 따른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자문비용, 회계자문비용, 기타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3. 이약정서에 따른 대출거래와 관련한 담보를 설정·유지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
4. 대주 또는 대리금융기관이 이약정서에 따른 대출거래와 관련한 대출채권 및 기타 지급받을 금액의 지급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타 위 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부담하는 수수료와 법률비용(변호사비용 포함) 등 모든 법적 절차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금액
5. 기타 대주 또는 대리금융기관이 이약정서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지출하거나 부담하는 제반비용

## 제 5 항 계산

이약정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나) 연체이자 및 (다) 모든 수수료는 일(1)년을 365일로 하고 위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기간 동안 실제 경과된 일수(초일은 산입하고 최종일은 불산입하는 방식에 의함)를 기초로 계산한다.

## 제 6 항 인지세

차주는 금융관련서류에 대해 부과되는 현재 및 장래의 인지세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격의 세금, 공증료, 등록 수수료, 법률비용 및 이와 유사한 제반 수수료 등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 동 세금 및 수수료를 체납함으로 인하여 대주 또는 대리금융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 제 7 항 지급의 미반환

차주가 본조에 따라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에게 지급한 이자, 비용, 수수료 등은 이 약정의 무효 또는 취소, 기한의 이익 상실과 조기상환을 포함한 여하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한다.

# 제 5 조 상환 및 기한전 상환

## 제 1 항 상환

차주는 조건 없이 대출금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한다.

1. 대출금의 상환

차주는 “부록 II 상환계획표”에 따라 정해진 상환기일에 대주에게 대출금을 분할 상환한다.

1. 상환계획표

(i) 차주의 기한전 상환 등의 결과 대출금의 분할상환금이 변경된 경우 대리금융기관은 수정된 대출금의 확정 상환계획표를 작성하여 차주와 대주에게 통지한다. 수정된 대출금의 확정 상환계획표는 명백한 계산상의 오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ii) 위 (i)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금융기관은 이약정 제15조 제3항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차주와 협의하여 수시로 이약정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상환일정 및 상환계획표를 변경할 수 있다.

## 제 2 항 기한전 상환

(가) 차주의 요청에 의한 기한전 상환

(1) 기한전 상환방식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주는 대리금융기관에게 삼십(30)일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고, 대리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출금의 전부를 대출금의 이자지급일에 한하여 기한전 상환할 수 있다. 차주는 대출금의 전부를 기한전 상환하는 경우, 해당 상환원금에 대하여 이약정의 조건에 따라 기한전 상환일까지 지급기일이 도래한 모든 이자 및 기타 금액과 기한전 상환수수료를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차주가 영업현금흐름에 따라 기한전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리금융기관과 협의하는 경우 매 이자지급일에 이자 지급 후, 대출금의 전부를 기한전 상환할 수 있다. 기한전 상환된 금액은 다시 차입할 수 없다.

(2) 기한전 상환수수료의 계산

기한전 상환수수료는 기한전 상환하는 해당 대출금 원금의, (i) 최초인출일로부터 오(5)년이 되는 날(당일 포함)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오점영퍼센트(5.0%), (ii) 최초인출일로부터 오(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당일 포함) 이후의 기간 동안에는 일점영퍼센트(1.0%)에 각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차주가 영업현금흐름에 따라 기한전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리금융기관과 사전 합의를 거쳐 제세공과금, 보험료, 대출원리금, 관리운영수수료, 일반사무위탁수수료, 공사비 등 차주가 이건사업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필요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한전 상환하는 경우 및 차주가 대리금융기관이 승인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이약정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기한전 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되는 기한전 상환수수료는 그 지급시점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약정의 조건에 따라 계산되는 기한전 상환수수료와는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이 변경되어 이 약정에도 명백히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그에 따라 조기상환수수료 등 금융조건을 적법하게 변경하기로 한다.

(3) 기한전 상환절차

기한전 상환하는 경우, 기한전 상환금액은 전액이어야 한다.

(나) 비자발적 기한전 상환

(1) 비자발적 기한전 상환사유 및 상환시기

차주는 아래에 기재된 시기의 직후에 도래하는 대출금의 이자지급일에 한하여 아래에 기재된 금액을 대주에게 기한전 상환하여야 한다.

(a) 자산의 처분

차주의 자산의 처분에 따라 순처분대가가 발생하는 경우, 차주는 그 자산의 처분 오(5)영업일 이전에 대리금융기관에게 대리금융기관이 만족하는 형식과 내용으로 작성된 자산의 처분에 따른 순처분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하는 서면을 대리금융기관에게 제출하고, 수령 즉시 순처분대가의 전액(대리금융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으로 대출금을 기한전 상환하여야 한다.

(b) 보험사고

차주가 보험계약(들)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은 제외)을 수령한 경우, 대리금융기관은 대리금융기관의 선택에 따라 사업시설의 보수 및 재시공에 동 보험금을 투입치 아니하고 동 보험사고에 따른 순처분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수령 즉시 동 금액으로 대출금을 기한전 상환하도록 할 수 있다.

(c) 하자보수금

차주가 사업시설과 관련하여 하자보수금을 수령한 경우, 동 금액 중 하자보수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 즉시 대출금을 기한전 상환하여야 한다.

(d) 인출한도액 초과금액

인출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인출가능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약정 제3조 제2항 (다)호에 따라 대주의 대출의무는 소멸되며, 차주는 인출한도액을 초과하여 실행된 대출금(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기한전 상환하여야 한다.

(e) 임대차계약의 해지

차주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동 계약에 따른 임대인으로부터 금원(보증금, 지료, 손해배상금 등 명목을 불문함)을 수령하는 경우, 동 금액으로 즉시 기한전 상환하여야 한다.

(f) Cash Sweep

차주는 부록II 상환계획표의 최초 상환기일부터 잔존하는 대출금의 최종 상환일이 목표만기일에 이를 때까지, 매 상환일 이(2)영업일 전 유보계정 내 잔액(매 상환일 유보계정의 출금 순위에 따라 지급 예정인 모든 출금액을 제한 후 예상되는 잔액) 중 대리금융기관이 다른 용도로 사용을 승인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전액으로서 상환계획표의 상환일정의 역순 충당 방식으로 대출금을 기한전 상환하여야 한다.

(2) 기한전 상환수수료 등

본 (나)호와 관련한 비자발적 기한전 상환에는 기한전 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비자발적 기한전 상환된 금액은 다시 차입할 수 없다.

(다) 상환금액 및 상환순서

본 (가)호 및 (나)호와 관련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기한전 상환 조건 및 그에 따른 상환금액 및 상환순서는 본 (가)호 및 (나)호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첫째,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서로 상환하며,

둘째, 대출금의 원금 내에서는 기한전 상환되는 금액은 상환계획표의 최종상환일로부터 역순으로 충당된다.

(라) 통지 등

차주의 요청에 의한 기한전 상환의 경우, 차주는 기한전 상환일로부터 삼십(30)일 이전 서울시간 오전 11:00시까지 자발적 기한전 상환에 대한 의사를 대리금융기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각 통지는 취소할 수 없으며(따라서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전 상환금액은 동 문서에 명시된 기한전 상환일에 지급되어야 한다), 차주는 위 통지서에 기한전 상환일, 기한전 상환되는 대출금 내지 기한전 상환예정액에 해당하는 원금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비자발적 기한전 상환의 경우, 차주는 비자발적 기한전 상환의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그 요건 및 비자발적 기한전 상환금액에 대한 산정내역 등을 기재하여 대리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리금융기관은 대출금과 관련된 위 통지서를 수령한 후 지체없이 대주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기한전 상환금액에는 제4조에 정하고 있는 범위와 방법에 따라 산정된 이자발생액도 포함되어야 한다.

## 제 3 항 약정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취소

(가) 대주는 대출약정금을 위한 인출선행조건의 미비로 인한 대출금 인출의 지연이 삼(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대주의 결정에 따라 대리금융기관의 차주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당해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차주는 그 이전에 지급한 수수료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이약정서에 따라 대주 또는 대리금융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기타 비용 등으로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지급하기로 예정된 수수료의 지급에는 변화가 없다.

(나) 약정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된 경우, 이러한 취소는 철회될 수 없으며, 항구적인 효력을 가진다.

## 제 4 항 변제의 충당

금융관련서류에 따라 대주 또는 대리금융기관이 받은 모든 금액은 대주 및/또는 대리금융기관의 계산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채무변제에 충당한다.

1. 금융관련서류에 따라 대리금융기관 및/또는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수수료 및 비용 일체)으로서 이 항에서 달리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금액
2. 지급기일이 도래한 모든 수수료 및 비용(이에 대한 연체이자 포함)
3. 지급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4. 지급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5. 지급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의 원금
6. 기한전 상환하는 대출금의 원금

단, 대주 및/또는 대리금융기관이 강제집행, 담보의 실행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채무변제에 충당한다.

1. 채권회수를 위하여 대리금융기관 및/또는 대주가 지출하거나 부담한 비용(이에 대한 연체이자 포함)
2. 지급기일이 도래한 모든 수수료(이에 대한 연체이자 포함)
3. 지급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4. 지급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5. 지급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에 대한 원금

## 제 5 항 영업일

어떠한 지급을 하기로 정한 날이 영업일인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지급은 그 이후에 도래하는 최초의 영업일에 하기로 한다.

## 제 6 항 지급방법 및 장소

(가) 이약정서를 포함한 금융관련서류 또는 기타 관련 서류에 따라 대주가 차주에게 대출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 기타 모든 금원은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유보계정으로 당일 인출 가능한 자금으로 지급한다.

(나) 이약정서를 포함한 금융관련서류 또는 기타 관련 서류에 따라 차주가 대주 또는 대리금융기관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출금, 이자,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모든 금원은 제6조 제1항의 유보계정(기한의 이익 상실 이전) 또는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담보계정(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 이약정서를 포함한 금융관련서류 또는 기타 관련서류에 따라 대주가 대리금융기관의 계산으로 대리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기타 모든 금원은 해당 지급일의 은행 영업시간 내에 대리금융기관이 대주에게 통지하는 계정으로 당일 인출가능한 자금으로 지급한다.

## 제 7 항 대출금 내역

대주는 대출금, 상환금, 기한전 상환금, 이자와 기타 금액의 계산 및 지급을 나타내는 대출금 내역을 관리·유지한다. 대출금 내역은 계산상의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차주를 구속한다.

# 제 6 조 자금의 관리

차주는 이건사업의 납입자본금, 대출금, 총현금수입 등 모든 자금의 입금관리와 사업비, 관리운영수수료, 대출원리금 상환 등 모든 출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금계정들을 개설하거나 개설하게 하고 그 계정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조항에 따를 것을 약정하며, 대리금융기관은 동 계정들을 관리한다. 단, 대리금융기관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차주와 협의하여 자금관리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예금계정의 잔액은 대출원리금의 상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차주가 최대한 그 잔액의 운영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제 1 항 유보계정

(가) 계정의 개설

차주는, 이약정의기간 동안, 납입자본금, 대출금, 전력판매수입, 공급인증서매매수입, 보험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의 입금과 사업비, 관리운영수수료, 대출원리금 기타 비용의 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차주의 명의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계정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요구불예금계정(이하 “유보계정”)을 대리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어느 금융기관의 지점에 개설한다.

(나) 계정에의 입금

이약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출금, 자기자본금 및 모든 총현금수입은 직접 유보계정에 입금된다. 차주는 모든 전력판매수입, 공급인증서판매수입이 유보계정에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추가공급인증서매출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침에 따라 별도 계정을 통해 입금받을 수 있다.

(다) 계정의 출금 순위

유보계정의 예치금의 출금은, 예치금지급일에 차주와 대리금융기관이 협의한 내용을 기초하여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앞선 순위의 항목의 지급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항목의 지급을 위한 출금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기존차입금 상환금 및 차주의 미지급금 중 대리금융기관이 이약정에 따른 대출금으로 상환을 인정하는 금액
2. 법령에 의한 제세공과금,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전기요금, 광열비 등 관리운영위탁계약상 정의되지 아니한 이건사업시설 운영을 위한 직접 비용
3. 금융관련서류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비용(각 이에 대한 연체이자 포함)
4.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기한전 상환의 경우 포함)
5.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출금 상환원금
6. 부채상환적립요구액 및 그 부족분의 부채상환적립계정으로의 이체
7. 대수선비적립금의 대수선비적립계정으로의 이체
8. 관리운영위탁계약서에 따른 관리운영수수료
9. 일반사무관리위수탁계약에 따른 위탁수수료 및 회계감사비용(있는 경우)
10. 부록 V 기재 금전대여 법인 중 자금부족법인에 대한 후순위 대여
11. 추가공급인증서매출(추가공급인증서매출이 유보계정으로 입금되는 경우) 및 기타 대리금융기관이 동의하는 지출
12. 기타 대리금융기관이 이건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또는 미지급금의 지급
13. 출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제11조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함)
14. 출자자의 출자금(청산의 경우에 한함)

(라) 계정의 인출방법

차주가 유보계정으로부터의 출금을 위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금융기관에 예금인출동의서 및 예금출금요청서(“별첨 나”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를 제출하면 대리금융기관은 차주의 증빙서류를 기초로 용도, 금액, 출금시기 등을 고려하여 합당한 경우 이를 승인하고 예금인출동의서 및 예금출금요청서를 유보계정 개설금융기관에 교부한다. 차주는 유보계정 개설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인출동의서 및 예금출금요청서에 기재된 금액 및 출금일자 또는 기간을 확인한 후 그에 따라 예금의 출금을 허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2 항 부채상환적립계정

1. 계정의 개설

차주는 부채상환적립요구액의 입금 및 출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리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어느 금융기관의 영업점에 차주의 명의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계정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요구불예금계정(이하 “부채상환적립계정”)을 개설한다.

1. 계정에의 입금 및 유지

차주는 최초인출일로부터 이약정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부채상환적립계정의 예치금 잔액이 부채상환적립요구액 이상의 금원을 부채상환적립계정에 예치하여야 한다. 어느 날 현재 부채상환적립계정에 예치된 자금이 부채상환적립요구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미달 금액은 유보계정으로부터 즉시 이체된다. 단, 차주가 부채상환적립요구액을 부채상환적립계정에 적립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약정에 의한 채무불이행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1. 계정으로부터의 인출

어느 이자지급일 현재 유보계정에 예치된 자금만으로 해당 이자지급일에 차주가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위 (나)호에 따라 입금된 그 당시 금원으로 위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유보계정 또는 대리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예금계정으로 차주의 별도의 지시 없이 이체되는 것으로 한다.

“부록 V 금전대여 법인” 목록에 기재된 법인 중 어느 하나가 해당금융관련서류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한도로 대리금융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법인이 보유한 유보계정으로 인출할 수 있다.

## 제 3 항 대수선비적립계정

1. 계정의 개설

차주는 대수선비적립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대리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어느 금융기관의 영업점에 차주의 명의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계정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요구불예금계정(이하 “대수선비적립계정”)을 개설한다.

1. 계정에의 입금

대수선비적립계정에의 입금은 유보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에 의한다. 차주는 최초인출일에 대수선비적립금을 대수선비적립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1. 계정으로부터의 인출

대수선비적립계정에 예치된 자금은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른 지급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대리금융기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대리금융기관이 인정하는 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인출된다. 다만, 전단의 규정을 조건으로, 대수선비적립금은 최소유지적립금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관리운영위탁계약상 관리운영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차주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리금융기관의 승인을 얻어 관리운영회사의 수익분(관리운영위탁계약에서 별도 정의함)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수수료의 지급을 위하여 인출될 수 있다.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수선비적립계정에 예치된 자금은 대리금융기관이 별도로 승인하는 용도로도 인출될 수 있다.

## 제 4 항 담보계정

1. 대리금융기관은 차주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시 대주의 채권회수를 위한 준비계정으로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정을 기한의 이익 상실 즉시 대주 명의(또는 대주와의 협의에 따라 대주를 위하여 대리금융기관의 명의로 할 수 있음)로 대리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어느 금융기관의 지점에 개설한다.
2. 이약정서에 의하여 차주는 대리금융기관과, 위 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된 각 예금계정이 개설된 금융기관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시 위 각 예금계정에 예치된 잔액 전부를 담보계정으로 이체하도록 지시하고 수권한다. 담보계정 개설 이후의 전력판매수입, 공급인증서판매수입, 보험금 수령액, 기타 사업수입, 자산의 처분에 따른 대가, 기타 차주의 모든 수입금은 담보계정에 직접 입금되도록 한다.

## 제 5 항 공통조항

차주는 최초인출일 이전까지 담보계정을 제외한 모든 예금계정을 개설하기로 한다. 본 조에 따라 차주 명의로 된 모든 예금계정의 통장과 거래인장은 대리금융기관이 보관한다. 차주는 추가공급인증서매출을 지급받기 위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경우 및 이약정서에 따라 개설이 허용된 예금계좌 이외에는 차주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다. 이 항에 따라 차주가 각 예금계정이 개설된 각 금융기관 및/또는 대리금융기관에게 부여한 계정으로부터의 출금 및 사용, 다른 계정으로의 이체에 관한 지시·수권 및 승인은 이약정의기간 동안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다. 이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대수선비적립계정의 인출방법은 유보계정의 인출방법을 준용한다.

# 제 7 조 담 보

차주는 피담보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주(대주의 지위를 양수, 승계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본 조에서 동일함)에게 아래와 같은 담보권을 설정하고 이약정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담보계약서를 늦어도 최초인출일로부터 칠(7)영업일(대리금융기관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시점까지) 이전에 대리금융기관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단, 위 기일까지 담보를 설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설정이 가능한 즉시 담보를 설정하여야 한다. 모든 담보서류는 대리금융기관이 만족할 만한 내용과 양식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제 1 항 예금계정에 대한 예금근질권

차주는 대주 및/또는 대주의 대리인인 대리금융기관과 예금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6조에 따라 개설한 차주 명의의 예금계정에 대하여 대주를 위한 근질권을 설정하고 그 즉시 동 예금계정들이 개설된 은행으로부터 확정일자에 의한 각 승낙서를 받아 이를 대리금융기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주 또는 대리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정에 대하여는 예금근질권설정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서 위 승낙서에 갈음(예금근질권설정계약서상에 해당 예금계정이 특정된 경우에 한함)할 수 있다. 예금계정에 예치된 금액은 근질권 설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라 인출하고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예금근질권설정계약서는 실질적으로 “별첨 다”의 양식과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제 2 항 전력대금청구권에 대한 질권

(가) 차주는 대주 및/또는 대주의 대리인인 대리금융기관과 차주의 전력대금청구권에 대한 채권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차주가 한국전력거래소(또는 한국전력공사) 및 기타 전력구매자와의 거래에 따라 보유하는 모든 전력대금청구권에 대하여 대주를 위한 근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근질권설정계약서는 실질적으로 “별첨 라”의 양식과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나) 다만, 전력시장운영규칙 또는 한국전력거래소(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실무상 전력대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이에 갈음하여 본조 제3항에 따른 채권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전력대금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담보권을 설정하기로 하며 전력시장운영규칙 또는 한국전력거래소(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요구하는 양식으로 확정일자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하기로 한다.

## 제 3 항 계약상의 권리에 관한 채권담보계약서

차주는 아래 계약상 차주가 상대방(상대방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도 포함함)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상의 지위 내지는 권리, 의무를 채권양도담보계약 체결에 의하여 대주 또는 대리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전하되, 그 이전의 효력은 차주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대주가 이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건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차주와 관련 계약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채권양도담보계약은 실질적으로 “별첨 마”의 양식과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 공사도급계약
2. 관리운영위탁계약
3. 일반사무위탁계약
4. 임대차계약(해당하는 경우)
5. 공급인증서매매계약
6. 전력판매계약(제7조 제2항 (나)호의 경우)
7. 기타 차주가 이건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와 체결할 기타 계약으로서 동 계약상 일정한 경우 차주가 금원을 지급받거나 재산권을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계약 중 대리금융기관이 양도대상계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계약

## 제 4 항 이건사업시설 등에 대한 동산양도담보

차주는 이건사업시설 및 기타 이건 사업과 관련하여 차주가 보유하는 동산(“동산”)에 대하여 대주 및/또는 대주의 대리인인 대리금융기관과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양도담보권이 동산에 표기되도록 함으로써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산양도담보계약서는 실질적으로 “별첨 바”의 양식과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제 5 항 출자자의 주식에 대한 주식근질권의 설정

차주는 출자자로 하여금 대주 및/또는 대주의 대리인인 대리금융기관과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동 출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주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대주를 위한 근질권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는 실질적으로 “별첨 사”의 양식과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제 6 항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보험근질권의 설정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제3자 배상책임보험(Third Party Liability) 및 일반배상책임보험(General Liability Cover)을 제외하고, 차주는 대주 및 대주의 대리인인 대리금융기관과 보험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에 따라 차주가 가지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단, 차주가 가입하여야 할 보험으로서 시공사 또는 관리운영회사로 하여금 가입하게 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동 보험과 관련된 권리도 포함함)에 대한 질권의 설정은 제10조 제4항에 따른다. 이 경우 보험근질권설정계약서는 실질적으로 “별첨 아”의 양식과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제 7 항 이건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담보신탁 설정

차주는, 이건사업부지(자가부지)에 관하여, 대리금융기관이 만족할만한 형식과 내용으로 대주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고 우선수익권금액을 대출약정금의 120%(대리금융기관이 동의하는 경우 그 이하로 가능함)로 하는 토지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최초인출일로부터 7영업일 또는 대리금융기관이 달리 인정하는 기한 이내에 그에 따른 토지담보신탁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8 항 책임운영확약서

차주는 관리운영회사로 하여금 “별첨 자”의 양식과 내용에 따른 책임운영확약서를 작성하여 대리금융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9 항 출자자확약서

차주는 차주의 출자자로 하여금 “별첨 차”의 양식과 내용에 따른 출자자확약서를 작성하여 대리금융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10 항 기타 담보제공

위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추가하여, 차주가 이약정의기간 동안 담보설정이 가능한 물적 자산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대리금융기관이 그에 대하여 대주를 담보권자로 하는 담보권 설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차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 11 항 담보계약서 체결권한의 위임

대주는 이약정서로써 대리금융기관에게 대주를 대리하여 차주와 담보계약서(제10항의 기타 담보제공과 관련된 계약 포함)를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부여하는 데 동의하며, 대리금융기관은 이러한 담보계약서 체결권한의 위임, 부여에 따라 대주의 대리인으로서 대주를 위하여 차주와 각 담보계약서를 체결하고, 동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담보권의 목적물을 관리한다. 단, 담보계약의 체결위임에도 불구하고 주권 및 주주명부 등 담보권을 표창하거나 표시하는 서면에는 대주의 담보권이 적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 제 8 조 위법, 세금 및 공제

## 제 1 항 위 법

이약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약정 체결일 이후에 법령상 대주가 ㈀ 대출약정금을 지급하거나 ㈁ 그가 대출한 금액을 최종상환기일까지 유지하는 것이 위법으로 되는 경우, 대주의 대출약정금은 해지되고 차주는 즉시 또는 당해 법령 등에 의하여 허용되는 기간 내에, 대주가 대출한 금액(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 기타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을 포함함)을 기한전 상환수수료 없이 기한전 상환하여야 한다. 단, 대주가 대출약정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인 경우와 관련하여, 대주가 신규대출 이외에 기 대출금을 유지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주의 신규대출은 중지되나 기 대출금은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 제 2 항 공제금지

차주는 이약정서상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에 관하여, 어떠한 공제나 원천징수(조세부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를 함이 없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 3 항 추가지급

1. 만일 차주가 금융관련서류상 대리금융기관 및/또는 대주에게 지급할 금원에 관하여, 관련법령에 의하여 어떠한 공제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경우, 차주는 당해 공제 내지 원천징수된 지급액과 함께 대리금융기관 및/또는 대주가 그러한 공제나 원천징수가 없었더라면 받았을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차주는 대리금융기관에게 그러한 공제액이나 원천징수액이 적절한 세무당국 기타 관청에 납부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해 공제 내지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대리금융기관 및/또는 대주가 관련 정부당국으로부터 환급을 받은 경우, 동 금액을 즉시 차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위 (가)호가 적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대리금융기관 및/또는 대주가 금융관련서류상 차주로부터 수령한 금원과 관련하여, ① 제세공과금 기타 어떠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거나(단, 당해 대리금융기관 및/또는 대주가 본점이나 대출사무소의 통상의 영업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제외된다) ② 어떠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단, 대리금융기관 및/또는 대주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차주는 대리금융기관을 통하여 그러한 요구 즉시, 대리금융기관 및/또는 대주가 그로 인하여 입은 모든 비용이나 손해(이자, 과태료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3. 위 (가)호 또는 (나)호의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차주는 일십(1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 당해 서면통지에서 지정한 날(영업일이어야 함)에 대주의 대출금과 그에 대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및 당해 대출금과 관련하여 이약정서상 차주가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원을 합한 금원을 대주를 위하여 대리금융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 9 조 차주의 확인사항

차주는 대리금융기관 및 대주에게 이약정 체결일 및 인출일에 다음 각 항의 사항들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 제 1 항 법인격 및 권한

1. 차주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법인(주식회사)이다.
2. 차주는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능력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3. 차주는 거래서류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능력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4. 차주는 거래서류와 관련한 모든 서류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사회결의, 주주총회의 결의 등 차주 내부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 제 2 항 법령 및 기타 약정의 준수

차주에 의한 거래서류들의 체결 및 이행은 (i) 차주에게 적용되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ii) 차주의 정관에도 저촉되지 아니하며, (iii) 차주가 당사자인 계약 또는 이건사업과 관련되거나 사업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계약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계약상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또한 차주는 제반인ㆍ허가및승인을 포함하여 모든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이건사업을 영위한다.

## 제 3 항 인·허가 등

차주는, 이건사업의 수행 및 거래서류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제반인·허가및승인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취득하였거나 필요한 시기에 취득할 예정이다(다만, 차주의 이건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장래에 취득하여야 할 제반인·허가및승인이나 통상의 업무수행과정 중에는 장래의 어느 시점 이전에 취득하기 어려운 어느 제반인·허가및승인의 경우, 차주가 아는 한, 이러한 제반인·허가및승인은 차주의 영업 또는 재정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정, 변경 등을 요하지 아니하고 취득될 수 있다).

## 제 4 항 계약의 적법성 및 유효성

차주가 일방 당사자인 거래서류들은 모두 적법·유효하고, 차주에 대하여 집행가능하며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 제 5 항 사업관련서류 등

1. 최초인출일까지 대리금융기관에게 제공된 사업관련서류 및 제반인허가 및 승인은 모든 중대한 점에서 이건사업의 추진을 위한 완전하고 적법·유효하며 충분한 계약 및 승인을 구성하며, 이건사업은 동 사업관련서류 및 제반인허가 및 승인에 따라 적법·유효하게 추진될 수 있다.
2. 대주가 달리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주는 사업관련서류를 변경하거나 이에 대한 변경에 합의한 바 없으며, 대주의 승인 없이 거래서류 이외의 중요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3. 차주가 대리금융기관에게 제공한 사업관련서류의 사본은 동 계약의 진정한 사본이며, 이건사업과 관련한 중요 계약으로서 차주가 대리금융기관에게 원본 또는 사본을 제공하지 아니한 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사업관련서류와 관련하여 해당 계약에서 정한 어떠한 불가항력사유도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지 아니하고, 차주는 사업관련서류와 관련하여 해제, 해지, 중지, 중단, 불가항력사유의 발생 또는 중요사항의 위반에 대한 통지를 받은 바가 없으며, 이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 제 6 항 채무불이행사유의 부존재

이약정 체결일 현재 차주에게 어떠한 채무불이행사유 또는 채무불이행가능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지 아니하다.

## 제 7 항 이건사업부지에 대한 사용권의 확보

차주는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으로부터 이건사업부지에 관하여 대출원리금 최종상환기일 이후의 날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하였다.

## 제 8 항 분쟁

차주, 이건사업, 사업부지, 사업시설, 거래서류 또는 동 계약서에 기한 어떠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대리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소송, 조사, 수사, 중재, 행정절차 또는 기타 법적 절차나 분쟁도 현재 계속되고 있지 아니하고, 차주가 아는 한 제기될 우려도 없다.

## 제 9 항 지적재산권 등

차주는 이건사업시설을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 및 사용권(차주의 사업명칭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나 부담없이 유효하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다만, 위에 언급된 권리 중 이를 취득하지 아니하여도 이건사업시설을 소유, 운영 및 유지·관리하는데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대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권리의 취득은 예외로 한다.

## 제 10 항 보험 등

차주는 금융관련서류에 따라 가입·유지되어야 하는 모든 보험은 해당 보험의 가입 이후 완전한 효력이 있고, 이에 대한 보험료는 모두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동 보험에 대하여 관련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상 의무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실의 누락이나 은폐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 제 11 항 법적 절차

차주와 관련하여 파산사유상의 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차주가 아는 한 개시될 우려가 없다.

## 제 12 항 제세공과금의 납부

차주는 납입기일이 도래한 모든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다.

## 제 13 항 환경관련 사항의 준수 및 제반인·허가및승인 취득

차주는, 이약정 체결일 현재 이건사업과 관련하여 환경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제반인·허가및승인을 취득하였거나 동 법령상 인정되는 적법한 기간 내에 이를 취득할 예정이며, 환경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일체의 규제 및 제한을 준수하고 있다.

## 제 14 항 정보의 정확성

차주는 차주, 이건사업, 이건사업부지 및 이건사업시설과 관련하여 중요한 일체의 정보를 대리금융기관 또는 대주에게 제공하였고, 이약정과 관련하여 차주가 대리금융기관 및 대주에게 교부한 차주, 이건사업, 이건사업부지 및 이건사업시설에 관한 정보는 동 정보가 제공된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완전하고 정확하다.

## 제 15 항 부담의 부존재

차주는, 허용된 부담을 제외하고, 차주의 모든 자산이나 권리를 일체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다.

## 제 16 항 담보권

1. 금융관련서류에 따라 허용된 부담 이외에 이건사업, 이건사업부지 및 이건사업시설과 관련된 차주 또는 출자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된 담보 또는 부담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약정서에 따른 차주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이건사업, 이건사업부지, 이건사업시설 및 기타 차주의 자산과 관련된 차주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기타 권리가 각 담보계약서에 따라 유효하게 설정될 것이다.

## 제 17 항 회계 및 우발채무

1. 차주 및 출자자가 대리금융기관에게 제공한 감사보고서(주석사항 포함)(감사보고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주 및 출자자가 대리금융기관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는 관련 법령, 기업회계기준 및 대한민국에서 인정되는 일반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대상 회계연도에 대한 차주 및 출자자의 진실하고 정확한 재무상태를 표시하고 있다.
2. 이약정 체결일 현재 차주가 대주에게 통지한 사항 및 허용된 부채를 제외하고, 차주에 관하여 이약정 체결일 현재 작성되어 있는 최근 감사보고서(주석사항 포함)(감사보고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주가 대리금융기관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은 부채(우발채무 사항 포함)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동 감사보고서 기준일의 익일부터 이약정 체결일 또는 각 인출일까지 대주가 인정한 부채 이외의 부채(우발채무 사항 포함)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제 18 항 자금의 사용

차주는 이약정서에 따라 조달한 자금을 거래서류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사용할 것이다. 차주는 이약정서에 의한 예금계좌 및 대라금융기관이 별도로 승인한 예금계정 이외의 차주 명의의 예금계정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다. 차주는 이약정서에 의한 예금계좌 및 대리금융기관이 별도로 승인한 예금계정 이외 기존 차주 명의의 예금계정을 모두 유효하고 적법하게 해지하였다.

## 제 19 항 법령 위반사항의 부존재

이약정서 체결일 현재 차주에 대하여 이건사업에 중요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 제 20 항 타법령 위반사항의 부존재

1. 차주는 거래서류에서 예정하고 있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건사업 이외의 어떠한 영업이나 활동(단독 또는 합작관계에 의한 경우를 불문함)도 영위하지 아니한다.
2. 차주는 금융관련서류에 따라 허용된 투자 이외에 어떠한 투자활동(다른 회사 또는 단체 등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을 포함한 일체의 출자행위나 타인에 대한 대부행위 또는 타인에 대한 보증이나 손해담보약정의 제공행위를 말한다)도 영위한 바 없다.
3. 차주는 금융관련서류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어떠한 대리권도 수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권한도 위임한 바가 없다.

## 제 21 항 신용정보 제공의 동의

차주는 대주가 차주, 출자자 및 연대보증인(있는 경우)과 관련하여 취득한 식별정보[성명(상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 및 채무보증현황(이 약정 체결 이전 및 이후의 보증 포함)에 관한 신용정보에 대하여 피담보채무가 전액 상환될 때까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이를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차주, 출자자 및 연대보증인(있는 경우)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 동의하였음을 확인한다

# 제 10 조 적극적 준수사항

차주는, 이약정의기간 동안, 대리금융기관 및 대주에게 다음과 같은 적극적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 제 1 항 법인격의 유지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

차주는 법인으로서의 권리, 권한 및 지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차주는 대리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제세공과금을 그 납기일 도래시 납부하여야 한다.

## 제 2 항 중요사항의 통지

차주는, 각각 또는 전체로서, ㈀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사업관련서류와 관련한 소송이나 법적 절차 또는 중요한 위반이나 분쟁의 발생사실, 재정상태 및 그 운영이나 재산에의 중요한 변화를 알게 되는 경우, ㈂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 및/또는 차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차주의 영업 또는 재정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나 초과비용이 발생한 경우, ㈃ 차주 또는 사업관련서류상 상대방 당사자의 사업관련서류의 해제∙해지, 중지∙중단, 불가항력사유의 발생 또는 중요사항의 위반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 차주에 대하여 신규 또는 추가적으로 인∙허가 취득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는 경우, ㈅ 차주, 시공사, 관리운영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명하는 판결 또는 명령(단, 시공사, 관리운영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의 경우에는 이건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이 내려진 경우 즉시 대리금융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3 항 재무제표 등

차주는, 대리금융기관에게 대리금융기관이 만족할 만한 내용과 양식으로 작성되고 대표이사가 확인한 다음 서류들을 충분한 분량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주의 예산서: 매회계년도말 이전에 다음 회계연도의 월별 및 연간 예산서를 제출하되, 대리금융기관과 차주간에 합의된 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동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2.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회계년도 종료 후 일백이십(120)일 이내
3. 매년말 주주명부 사본: 다음 해 삼(3)월말까지
4. 매분기별 사업시설의 발전량 및 수입현황 등 사업시설의 운영에 대한 보고서: 매 분기 종료 후 사십오(45)일 이내
5. 대출금에 의해 지급될 기성부분 내역서, 기성금청구서(세금계산서 포함), 감리자가 작성한 기성확인서와 공정계획대비 실적기성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대리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차주의 재정상태나 영업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일별, 주간별, 월별보고서 등 대리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차주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제공한다.

## 제 4 항 보험계약들의 체결

1. 보험의 가입

차주는 이건사업과 관련하여 이 항의 조건에 따라 적정한 보험프로그램의 작성능력, 신인도, 대주의 이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리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보험회사(들) 또는 공제조합(들)을 보험자(들)로 하여 직접 보험에 부보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부보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한 보험가입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대리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대리금융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차주 또는 직접 보험에 부보한 제3자는 대리금융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다. 차주는 대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대주가 지정하는 보험자로 보험회사를 변경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변경되는 즉시 해당 보험계약상 차주가 보유하는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대리금융기관이 만족할 만한 내용과 형식으로 대주를 위한 근질권이 설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보할 보험의 종류와 그 주요내용

차주는 이건사업시설의 운영기간중의 보험으로서, 사업시설에 관하여 다음의 보험을 직접 또는 관리운영회사나 시공사 등으로 하여금 관리운영위탁계약, 공사도급계약 등에 따라 부보하고 운영기간 동안 이를 가입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차주는 보험료 납부 즉시 그 납입영수증을 대리금융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기계종합보험(재산종합보험)
2. 영업배상책임(Commercial General Liability)보험
3. 운영기간 중 이건사업시설을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차주에게 발생하는 육(6)개월 동안의 기간에 대한 예상수익의 상실 및 간접비용을 보상하는 기업휴지손해위험(Business Interruption)
4.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위에 열거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 보험의 조건 및 내용은 대리금융기관에게 만족스러운 조건과 내용이어야 한다.

1.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

차주는 모든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업계의 관행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를 질권자로 하여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리금융기관이 대주를 대리하여 보험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하여야 하며, 보험증권에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 특별배서를 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상 보험자로부터 확정일자에 의한 승낙서를 받아 대리금융기관에게 각 제출하여야 한다. 차주는 모든 보험증권의 원본을 대리금융기관에게 교부하거나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근질권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보험과 관련된 보험료의 지급의무는 보험사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여전히 차주에게 있으며, 보험사고 발생 이후 관련 보험금을 대리금융기관이 위와 같이 수령하여 당해 보험사고의 치유나 이약정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는데 대하여 차주는 동의한다. 보험근질권설정계약서는 실질적으로 “별첨 아”의 양식과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 보험금의 사용
2. 건설공사보험(조립보험) 및 기관기계종합보험(재산종합보험)

위 보험계약(들)상의 보험금은 대리금융기관이 각 보험자로부터 수령하여 사업시설의 복구를 위한 공사비의 지급에 충당한다. 단, 보험사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리금융기관이 수령한 보험금은 이약정서 등에 따른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지급에 충당된다.

1. 예정이익상실(Advanced Loss of Profit) 보험과 기업휴지(Business Interruption) 보험

위 보험계약들상의 보험금은 대리금융기관이 각 보험자로부터 수령하여 원칙적으로 손실 발생 추정기간 중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지급에 충당한다.

1.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제3자 배상책임보험(Third Party Liability)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위 보험계약들상의 보험금은 차주가 대리금융기관의 위임에 따라 각 보험자로부터 수령하여 근로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손해배상의 지급에 충당한다.

## 제 5 항 확인사항

차주는 이약정서 등에 포함된 차주의 확인사항이 항상 진실하고 정확한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6 항 법령의 준수 및 제반인·허가및승인 등의 유지

차주는 환경관련 법령을 포함한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이건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제반인·허가및승인 등이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7 항 의무의 이행 및 권리의 실행

차주는 사업관련서류상 자신의 주요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 제 8 항 이약정에 따른 자금의 사용

1. 차주는 이약정서에 따라 조달한 자금을 대주와 사전에 합의한 운영 예산 범위 내에서 오로지 이건사업을 위하여 투입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2. 차주는 대리금융기관 및 대주를 제외한 거래서류의 모든 상대방 당사자들로 하여금 금융관련서류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예금계졍에 관련 금원을 직접 입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거래서류에는 금융관련서류에 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차주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관련 금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 9 항 담보권의 제공 및 대주 채권의 지위

차주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 이약정서에 따라 명시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담보권 이외에 금융관련서류에 따른 차주의 의무이행에 대한 담보로서 대리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담보권을 제공하기로 한다. 또한 차주는 금융관련서류에 따른 대주의 차주에 대한 채권이 언제나 차주에 대한 모든 다른 담보채권자나 후순위 아닌 채권자들의 채권과 최소한 동순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10 항 사업관련자료 및 회계장부의 작성 및 유지

차주는 차주 자신 및 이건사업과 관련한 장부 및 기록 등의 자료를 대한민국 관련법령 및 대한민국에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제 11 항 중요통지문서 등의 제출

차주는 다음 각 호의 통지문서 등을 송달받거나 송달하는 경우 또는 아래 ③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그와 동시에 동 통지문서 등의 사본을 대리금융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이건사업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 정부 및/또는 주무관청 또는 어느 출자자가 차주에게 송달한 모든 통지문서나 기타 서류 및 의사교환서신과, ㈁ 차주가 정부 및/또는 주무관청 또는 어느 출자자에게 송달한 모든 통지문서나 기타 서류.
2. 차주가 그의 채권자들에게 발송하는 모든 중요한 보고서, 통지, 회람문서 및 이와 유사한 서류들
3. 차주의 주주총회 의결사항 및 이사회의사록

## 제 12 항 이건사업시설의 유지관리

차주는 이건사업시설과 관련한 유지, 관리 및 안전에 있어, 이건사업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며, 이건사업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고자 하거나 동 제3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금융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 13 항 검사

대리금융기관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차주는 대리금융기관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대리금융기관의 직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통상의 영업시간 내에 차주를 방문하여 차주의 재산을 조사하거나 회계감사를 하고 이약정서를 포함한 금융관련서류에 따라 작성된 서류상의 차주의 이행능력과 관련이 있는 장부, 기록 및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관련 부분을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리금융기관은 조사 또는 검사에 의하여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차주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사, 감독할 수 있으며 차주는 이에 협력하고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다. 다만, 이러한 조사 등으로 인하여 차주의 중요업무가 방해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차주와 대리금융기관은 협의하여 그 시기 및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 제 14 항 신고사항, 출자자, 시공사 및 관리운영회사 변경 등에 대한 동의

1. 차주는 거래에 필요한 차주의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인감 및 서명 등을 대리금융기관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 인감 및 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다. 신고사항, 출자자 또는 출자지분, 시공사 및 관리운영회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주는 곧 서면으로 대리금융기관에 신고하기로 한다. 차주의 신고는 대리금융기관이 이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대리금융기관은 신고의 효력발생 전에 생긴 차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출자자 및/또는 출자지분, 시공사 및 관리운영회사가 변경될 경우 차주는 대리금융기관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후적으로 출자자 및/또는 출자지분, 시공사 및 관리운영회사의 변경절차를 완료한 다음 이를 대리금융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차주는 출자자 및/또는 출자지분을 변경하려 할 경우 변경절차 진행 이전에 ㈀ 출자자가 새로운 출자지분에 따라 관련 금융관련서류상의 채무(있는 경우)를 부담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서면과 ㈁ 출자자 및/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주무관청의 인·허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를 대주에 제출하여 대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후적으로 출자자 및/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절차를 완료한 다음 이를 대주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5 항 일정 사유 발생시 대안의 제시

차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1)개월 이내에 대리금융기관이 만족할 만한 추가재원 제공 방안 또는 달리 이건사업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리금융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1. 총투자비가 이약정서 체결 당시의 예상하였던 총투자비를 초과할 것으로 대리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차주에게 통지하는 경우
2. 이약정 체결일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기타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공급인증서 관련 제도,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등이 폐지되거나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3. 운영개시일 이후 삼(3)년 동안, 어느 회계연도의 이건사업으로 인한 수입 합계액에서 당해년도의 관리운영비를 포함한 운영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당해 연도에 지급할 대출원리금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4. 어떠한 사유로든 준공예정일로부터 삼(3)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설의 전부가 준공이 되지 아니한 때
5.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한국전력공사 및/또는 정부가 차주에게 전력판매대금 및/또는 공급인증서매매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이건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대리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차주에게 통지하는 경우
6. 어떠한 사유로든 그 때까지 건설된 사업시설 부분이 전부 파손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로 파손된 경우

## 제 16 항 관련계약 체결의 통지 및 준수의 보장

차주는 이약정서의 체결 이후 이건사업과 관련된 여하한 계약(다만, 차주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일상적인 계약은 제외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대리금융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약정서 체결 이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약정서의 제조건에 반하는 조항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리금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동 요청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차주는 위 각 계약의 상대방이 각 관련 계약서상의 약정사항과 의무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그 상대방이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각 관련계약서 및 법령에 따라 차주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관련계약서의 이행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리금융기관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17 항 사업관련 자료 등의 작성 및 제출

차주는 이약정서 등 또는 그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서류에 따른 거래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주의 감사보고서, 발전량 및 판매량 예측자료 등 대리금융기관 또는 대주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건사업 관련 제반 서류와 증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등 기타 필요한 행위를 한다.

## 제 18 항 공급인증서매매계약 및 전력판매계약 관련 준수사항

1. 차주는 대주가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공급인증서가중치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한국전력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약정의기간 동안 동 계약들 및 등록을 유지함으로써 전력판매대금 및 공급인증서매매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차주는 공급인증서매매계약 및 전력판매계약을 수정, 변경하거나 동 계약을 해지하거나 한국전력거래소 등록을 취소,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동 계약상의 구매자가 아닌 제3자로 구매자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대주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차주는 공급인증서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급인증서매매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대리금융기관이 차주에게 공급인증서매매계약을 해제/해지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차주는 지체 없이 공급인증서매매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대리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 19 항 후순위조건의 충족

차주가 출자자(들) 또는 기타 제3자로부터 차입하는 제반 자금에 대한 차입조건은 이약정에 의한 후순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제 20 항 사업개시신고 및 설비확인 등

차주는 준공일 이후 일(1)개월 이내 또는 대리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시기까지 사업시설에 대해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개시신고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확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 21 항 부채상환적립요구액의 유지

차주는 부채상환적립계정에 최초인출일로부터 대출원리금이 전액 상환되는 날까지 이약정서에서 요구하는 부채상환적립요구액 이상의 금원을 예치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단, 차주가 부채상환적립요구액을 부채상환적립계정에 적립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약정에 의한 채무불이행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제 22 항 임원진의 무보수

차주는 차주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되기 전까지는 차주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차주의 다른 임원진들이 차주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 23 항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차주는 대리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승인하거나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자신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대리금융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감사인을 변경할 수 없다.

## 제 24 항 임대차계약의 준수

차주는 이약정의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차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제 25 항 자금부족법인에 대한 후순위 대여

대리금융기관이 “부록 V 금전대여 법인” 목록에 기재된 어느 법인(이하 “자금부족법인”)이 대주로부터 차입한 해당 대출금의 원금, 이자 또는 수수료 기타 해당 거래서류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여 차주에게 후순위조건의 금전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차주는 그 요청일로부터 삼(3)영업일 또는 대리금융기관이 지정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자금부족법인에게 대리금융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후순위조건으로 금전대여하여야 한다.

## 제 26 항 대수선비적립계정의 유지

차주는 대수선비적립계정에 운영개시일 이후 도래하는 최초 이자지급일부터 대출원리금이 전액 상환되는 날까지 이약정서에서 요구하는 대수선비적립금(최소유지적립금 포함) 이상의 금원을 예치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 제 11 조 소극적 준수사항

## 제 1 항 채무부담의 금지

차주는, 허용된 부채를 제외하고, 대리금융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일체의 다른 사람(개인, 법인, 공적인지 사적인지 여부를 불문한 기관이나 단체, 기타 차주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채무(보증채무를 포함)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기타 신용의 공여나 배상약정 기타의 조건부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제 2 항 담보제공의 금지

차주는, 허용된 부담을 제외하고, 이약정서 등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한 대리금융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채무(보증채무를 포함)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의 유형 또는 무형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저당권, 질권 또는 기타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그의 존속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제 3 항 제한된 지급(Restricted Payment)

차주는,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어느 이자지급일에 출자자(들)에게 배당을 할 수 있다.

1. 채무불이행사유 또는 채무불이행가능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2. 기일이 도래한 대출원리금 및 제4조의 수수료와 비용 전액이 지급되었을 것;
3. 누적부채상환비율(부채상환적립금 제외)이 1.35 이상일 것;
4. 배당 후 누적부채상환비율(부채상환적립금 제외)이 1.30 이상일 것;
5. 직전 연도의 일(1)일 평균발전시간이 삼점오(3.5)시간 이상일 것;
6. 차주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없을 것;
7. 제6조 제1항 (다)호에 따른 선순위 항목의 출금이 이루어졌을 것;
8. 주주총회,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완료될 것; 및
9. 상법 및 차주의 정관상 배당 조건이 모두 갖춰질 것;

## 제 4 항 계약변경 등의 금지

1. 차주는 이약정의기간 동안 대리금융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사업관련서류를 취소 또는 해제(지)하거나 그 중요 내용을 변경(사업관련서류의 당사자의 대체 또는 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하거나 동 계약상의 차주의 권리를 포기, 양도, 이전, 담보제공 기타 처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관련서류의 중요 내용의 수정, 변경, 개정 또는 동 계약 또는 동 계약상의 상대방의 권리 및/또는 의무의 양도, 이전, 담보제공 기타 처분에 대해서 합의, 동의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차주는 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사업관련서류의 철회, 무효화, 효력정지 또는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차주의 사업관련서류상의 권리의 유효성, 우선순위 및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위를 회피하여서도 아니된다.
2. 차주는 대리금융기관의 사전동의 없이 정관을 포함한(이에 한정되지 않음) 차주의 설립 및 존속에 본질적인 서류를 금융관련서류에 반하거나 또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수정, 변경하거나 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차주는 이건사업과 관련한 보험을 무효화시키거나 그 부보범위를 적절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고의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차주는 대리금융기관의 사전동의 없이 공급인증서매매계약상의 공급인증서매매대금 결정 등과 관련하여 임의로 공급인증서매매계약의 상대방과 합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5 항 자본감소 등의 금지

차주는 대리금융기관의 동의 없이는 그 등기된 납입자본금을 상각 또는 자본감소 기타 여하한 형태의 출자환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6 항 증권발행 및 양도의 금지

차주는 금융관련서류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금융기관의 사전동의 없이 다른 제3자에게 어떠한 증권(이약정서 체결일 현재 출자자(들)에게 기발행된 주식은 제외)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차주는 차주의 주주로 하여금 대리금융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그 주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7 항 추가적 비용지출의 금지

차주는 대리금융기관의 사전동의 없이 연도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비용을 지출하거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8 항 기타 금지되는 행위

차주는 대리금융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리금융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차주의 정관에 의하여 이약정서 체결일에 차주가 영위하기로 허가된 사업 이외의 사업의 영위 또는 이건사업의 포기
2. 이약정서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 다른 회사 또는 단체 등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을 포함한 일체의 출자행위나 타인에 대한 대부행위 또는 타인에 대한 보증이나 손해담보약정의 제공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분사나 분할, 기타 다른 형태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의 참여, 청산 또는 해산
4. 타인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취득
5. 차주가 현재 소유하거나 장래 취득하게 될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이전, 임대 또는 기타 처분
6. 차주 발행 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
7. 이약정에서 허용된 것 이외의 투자행위 또는 증권의 발행
8. 예금계정 이외의 계좌의 개설
9. 소송, 중재, 절차 등 각종 분쟁 해결절차의 개시 또는 이를 위한 합의,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합의, 재판상·재판외의 화해
10. 기타 사업관련서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제 12 조 인출선행조건 및 후행조건

## 제 1 항 대출금의 최초인출에 관한 선행조건

대주가 대출약정금의 최초 인출과 관련하여 대출을 할 의무는, 대리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당해 인출가능일로부터 칠(7)영업일(단, 대리금융기관이 동의하는 경우 그보다 짧은 기간) 이전에, 차주로부터 대리금융기관이 만족할 만한 내용과 양식으로 된 부록 III 기재 서류들을 수령하고 그러한 서류들이 당해 인출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질 것을 조건으로 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가 대리금융기관이 만족할 만한 양식과 내용으로 작성되지 아니하여 보완을 요하는 경우 그러한 보완은 인출일 삼(3)영업일 전(당일 포함. 대리금융기관이 동의하는 경우 그보다 짧은 기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 제 2 항 기타 공통된 선행조건

대주가 인출을 행할 의무는, 이약정서 제7조에 정한 차주의 담보제공의무가 이행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간의 경과, 통지 또는 위 양자를 갖춤으로써 채무불이행사유를 구성할 어떠한 사건도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지 아니할 것, ㈁ 차주의 재정상태나 이건사업에 대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사태(민원이나 소송 포함)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도 없을 것, ㈂ 이약정서를 포함한 금융관련서류에 기재된 확인사항 및 준수사항이 마치 그것이 당해 인출일에 행해진 것처럼 모든 점에서 계속하여 진실하고 정확할 것, ㈃ 차주가 해당 인출일 현재 이행하여야 할 이약정서를 포함한 금융관련서류에 따른 중요 의무사항을 이행하였을 것, ㈄ 이약정서를 포함한 금융관련서류와 관련된 모든 법률적 사항이 대리금융기관에게 만족스러울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제 3 항 인출후행조건

차주는 최초인출일 이후 제1항 내지 제2항의 조건들이 효력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다음 각 호의 서류들을 대리금융기관에게 만족스러운 내용과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단, 대리금융기관은 그 재량에 따라 다음 각호의 후행조건 중 일부를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줄 수 있다.

1. 기존대주 또는 기존대주의 대리금융기관이 작성한 기존대출약정의 상환 관련 확인서 및 이에 따른 담보해제확인서: 최초인출일로부터 칠(7) 영업일 또는 달리 대리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기한 이내
2. 제7조 제1항에 의한 예금계정 개설은행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 및 예금계정 개설은행의 확정일자부 승낙서: 최초인출일로부터 칠(7) 영업일 또는 달리 대리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기한 이내
3. 제7조 제6항의 보험근질권설정계약서에 따른 차주의 보험회사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 및 보험회사로부터의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확정일자 있는 승낙서, 해당 보험에 대한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 또는 보험컨설팅회사의 부보의견서 및 보험료 납입 영수증: 최초인출일로부터 칠(7) 영업일 또는 달리 대리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기한 이내에 제출
4. 제7조 제7항에 의한 토지담보신탁계약서에 따라 대주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토지담보신탁 설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초인출일에 토지담보신탁을 설정함에 필요한 서류 일체가 제출된 경우, 최초인출일로부터 칠(7) 영업일 또는 달리 대리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기한 이내
5. 기타 대리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대리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날까지

# 제 13 조 채무불이행사유

## 제 1 항 채무불이행사유

이약정서상 다음 각 호의 사유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구성한다.

(가) 차주가 이약정서, 그가 당사자인 담보계약서 및 기타 금융관련서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차주의 금융관련서류의 불이행이나 위반이 치유되지 않고 삼십(30)일이 경과한 경우

(다) 차주가 사업관련서류에 따른 의무와 각종 준수사항(적극적, 소극적 준수사항 포함)를 불이행한 경우로서 그 불이행이 치유될 수 없거나, (치유될 수 있는 경우) 해당 불이행이 치유되지 않고 삼십(30)일이 경과한 경우

(라) 차주의 이건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여되거나 필요한 제반인·허가및승인이 종료 또는 취소되거나 대리금융기관이 이를 수락할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된 경우

(마) 공급인증서매매계약이 해지되거나, 대주의 동의 없이 공급인증서매매대금 등 공급인증서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바) 이약정서를 포함한 금융관련서류 또는 인출요청서에서 차주 또는 담보의 제공자가 한 확인사항이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사) 차주의 영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이 대리금융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국유화, 몰수, 수용, 매각, 이전되거나 또는 달리 처분된 경우

(아) 이약정 체결 당시와 비교하여 이건사업과 관련한 법령의 변경 또는 정부 및/또는 주무관청의 정책 등 정치, 경제적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여 이건사업의 지속이 곤란하고 차주가 이약정서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친다고 대리금융기관이 판단하여 차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차주가 이건사업의 지속에 필요한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대안을 삼(3)개월 이내에 대리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제10조 제15항에 열거한 사유 발생시 차주가 동항이 정한 기간 내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 대주 또는 대리금융기관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예정일까지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설에 전부에 대한 준공 이후 육(6)개월 이후에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인수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차) 위 (가)호, (나)호 및 (다)호 이외에 담보제공자가, 그가 당사자인 이약정서, 담보계약서 기타 거래서류의 중요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고 그러한 불이행이나 위반이 치유될 수 없는 때, 또는 그 치유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리금융기관이 차주 또는 당해 담보제공자에게 불이행에 관하여 통지한 때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그러한 불이행이나 위반이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카) 어느 거래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어떠한 사유로든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타) 차주 또는 어느 담보제공자가 그가 당사자인 이약정서, 담보계약서 기타 금융관련서류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거나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게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기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파) 대주에게 제공된 담보권이 금융관련서류상 허용되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하) 이약정서 체결 후 차주가 합계 금 일억원(￦100,000,000) 이상의 부채 또는 금전채무에 관한 다른 계약 또는 약정(서면이든 아니든) 또는 서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관련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때, 또는 위 다른 계약, 약정 또는 서류상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기한이익 상실 선언이 되거나 또는 통지, 시간의 경과 또는 양자를 갖춤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거) 이약정서 체결 후, 차주에 대하여 금 일억원(￦100,000,000)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급,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명하는 판결 또는 명령이 확정되고 차주가 삼십(30)일 이내에(단, 그러한 판결 또는 명령에서 지급에 관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약정서를 위반함이 없이 그 지급을 위한 충분한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한 때

(너)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계정을 포함한 차주의 대주에 대한 채권이나 차주가 제공한 차주 또는 제3자 소유의 담보재산에 대하여, ㈀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이 발송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의 신청이 있고 그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동 가압류나 가처분, 기타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신청이 기각, 각하, 취소 또는 철회되지 아니한 때 또는 ㈁ 압류명령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 또는 체납처분절차의 착수가 있는 경우. 단, 차주가 제공한 차주 또는 제3자 소유의 담보재산 중 예금과 관련하여서는 ㈀에 규정한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의 발송이나 기타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신청이 있는 경우만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구성한다.

(더) 이약정서 체결 후, 차주, 시공사 또는 관리운영회사가 지급불능으로 되거나 파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러) 차주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있어 그가 당사자인 이약정서, 담보계약서 기타 거래서류상의 채무를 각 관련 계약서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또는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머) 차주가 이약정서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버)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건사업의 지속이 곤란하다고 대리금융기관이 판단한 때

1. 사업시설 또는 그 기성부분이 전부 파손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로 파손된 경우
2.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공급인증서 거래제도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우선구매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로 인하여 이건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차주가 이건사업을 관련법령 및 이건사업 관련 제반인·허가및승인의 내용에 따라 수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위반이 삼십(30)일 내에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차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건사업을 삼십(30)일 이상 중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4. 임대차계약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등의 사유로 차주가 사업부지 임차권 또는 지상권을 상실하는 경우 또는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사업부지를 이건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서) 사업관련서류가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유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또는 대리금융기관의 사전동의 없이 수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또는 차주가 사업관련서류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기타 형태로 처분하는 경우

(어) 사업관련서류상의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여 사업관련서류상 어느 당사자가 육십(60)일 이상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때 또는 전쟁, 폭동, 사변, 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 무력행사가 있는 경우

## 제 2 항 기한의 이익 상실의 결과

(가) 위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대리금융기관은 대주의 서면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대리금융기관은 차주에게 통지함으로써 대주의 대출의무가 소멸하였음을 선언할 수 있다.
2. 대리금융기관은 차주에게 통지함으로써 이약정서에 따른 대출원리금 및 차주가 대리금융기관 및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변제기에 도달함을 선언할 수 있다. 단, 위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중 차주에 관하여 (가)(미지급), (너)(가압류 등) 또는 (더)(파산 등)에 정한 어느 사유가 발생한 경우(위 (너)의 단서에 정한 사유를 포함함), 차주에 대한 독촉, 통지 등이 없이 대출원리금 및 차주가 대리금융기관 및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변제기에 도달하고, 대주의 대출 의무는 즉시 중단된다.
3. 대리금융기관은,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의 결과로 이약정서, 담보계약서에 의해 또는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또는 달리 대리금융기관 및/또는 대주에게 주어진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차주는 대주 또는 대리금융기관의 요구가 있는 즉시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주가 어느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로 발생한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그 후의 또는 다른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다) 차주가 본 조에 따라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대주 또는 대주의 지시에 따른 대리금융기관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하는 것으로 한다. 단, 대주 또는 대주의 지시에 따른 대리금융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시점으로 소급하여 부활하는 것으로 한다.

# 제 14 조 대리금융기관과 대주

## 제 1 항 선 임

1. 대주는 이약정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의 대리인으로 행위하도록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를 이약정서에 따른 대출거래에 관한 대리금융기관으로 선임하고, 이약정서 및 그에 언급된 서류의 규정에 따라 그를 위하여 행위하고 이약정서 및 그러한 서류상 대리금융기관에게 특별히 수권된 권한과 그에 합리적으로 부수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권하며, 이러한 수권은 이약정의기간 동안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2. 대리금융기관은 이약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주를 대리하여 행위하고 이에 합리적으로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대주를 대리하여 담보계약서 및 기타 부속서류를 작성,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그와 관련된 서류를 담보계약서의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업무 포함)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밖에 이약정서와 관련한 담보관리업무와 차주가 이약정서에 따라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 제반수수료 및 담보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 등 일체의 금원을 대주를 위하여 수령하고 동 수령금을 대주에게 지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3. 대리금융기관은 이약정서상의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차주와 대리 또는 신탁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차주에 대하여 대리 또는 신탁으로 인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함)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금융기관과 대주의 관계는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일 뿐이고, 대리금융기관은 이약정서상의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주와 신탁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대주에 대하여 이약정서에서명시적으로 규정한 의무 또는 직무 외에 다른 의무 또는 직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4. 대주는 이약정서 또는 관련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함)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금융기관과 독립하여 이약정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제 2 항 대주결정사항 및 권한

1. 이약정서의 내용 중 다음의 사항들은 대주의 동의에 따라 결정한다
2. 대출약정금의 감액 또는 증액
3. 인출가능기간의 연장
4. 대출금의 만기 변경 또는 이자지급일의 변경
5. 담보조건 또는 이자율의 변경
6. 이계약 제13조 제2항 (다)호의 기한의 이익 부활에 관한 결정
7. 거래서류상 대주의 동의 및 조치를 요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 및 조치 여부의 결정
8. 이약정서 제6조에 따른 자금집행 결정 및 자금집행 순서와 방법 등의 변경
9. 이약정서의 제12조에 따른 인출선행조건의 변경 및 수정
10. 이약정서에 달리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대주의 채권보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11. 기타 이약정에서 대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항
12. 대리금융기관은 이 항 (가)호의 대주결정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약정상의 대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기 이전에 필요한 경우 대주와 협의하고, 대리금융기관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대리금융기관은 이약정이 정한 바에 따라 대주의 서면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대주의 서면 지시에 좇아 이약정서에 따라 행위한다. 대리금융기관은 대주의 서면지시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행위를 할 것을 거절할 수 있고 이약정서에 따라 행한 행위에 대하여 대주의 추인을 구할 수 있다. 대주의 동의 또는 추인은 대주가 작성한 서면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대리금융기관은 차주 또는 대주 중 어느 누구에 대하여도 대주의 서면 지시에 의하여 행한 행위에 대하여 또는 대주의 추인을 받은 경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나아가 대주가 지시한 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관련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함)에 정하여진 대리금융기관의 권한은 이약정에 따른 대리금융기관의 업무 및 지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약정서에 따라 대리금융기관이 한 행위는 항상 대주를 구속한다.

## 제 3 항 비용의 상환

대리금융기관이 제4조에 따라 차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차주가 상환하지 않는 경우, 대주는 대리금융기관에게 이를 상환한다.

## 제 4 항 책임 및 신용평가

1. 대리금융기관 또는 그의 임원, 직원 및 대리인들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약정서에 의하여 또는 이약정서와 관련하여 그들이 행한 행위 또는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대리금융기관은, 이약정서상의 확인사항 또는 차주가 제공하거나 차주를 위하여 제공된 어떠한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대출금, 이약정서, 담보계약서 및 기타 금융관련서류 또는 금융관련서류와 관련하여 작성된 기타 서류들의 작성, 효력, 진실성, 유효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차주가 이약정서를 포함한 금융관련서류의 규정들을 이행하거나 준수하는 지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가 없다.
3. 대주는 적절한 문서 및 정보를 기초로 차주에 대하여 독자적인 신용조사 및 신용평가를 하고 그를 기초로 이약정서를 체결한 것을 확인하고, 또한 그 자신의 신용평가를 계속할 것을 대리금융기관에게 약속한다.
4. 대리금융기관이 차주로부터 상환받거나 면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주는, 대리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약정상의 그의 의무와 관련하여 대리금융기관이 부담하거나 지급한 모든 책임, 손해 및 모든 비용 등에 대하여 대리금융기관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할 것에 동의한다.

## 제 5 항 대리금융기관의 신뢰

대리금융기관은 그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또한 적절한 사람(들)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되었다고 믿은 모든 통신 또는 문서를 신뢰할 수 있고 이약정서에 관련된 사항들 및 이약정서상의 의무와 관련하여 그가 선임한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행위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신뢰의 결과에 대하여 대주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6 항 대리금융기관에 의한 지급

차주가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출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액이 제6조에 따라 유보계정으로부터의 예금인출에 의하는 경우, 이는 대리금융기관이 “별첨 가”에 첨부된 양식에 의한 “인출요청서”로 유보계정 개설은행에게 계좌이체를 요청하고, 동 은행이 각 해당 금원을 대리금융기관이 서면으로 통지한 계정으로 이체하는 방법에 의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대리금융기관이 차주로부터 대출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 즉시 이를 대주에게 대주가 대리금융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 계정으로 당일 인출가능한 자금으로 분배한다.

# 제 15 조 기타 조항

## 제 1 항 기간

이약정의기간은 이약정서의 체결일로부터(이를 포함함) 개시하여 이약정서에 따른 대주의 대출약정금이 전부 해지되는 날 또는 그보다 늦은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및 기타 이약정서를 포함한 금융관련서류에 따라 차주가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전액 상환한 날에 종료한다(이를 “이약정의기간”이라 한다). 이약정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약정서에 포함된 차주의 배상책임은 대출금의 상환 후에도 존속한다.

## 제 2 항 완전한 합의

이약정서와 그에 언급된 서류들은, 이약정서에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이약정서에 따른 대출거래에 관하여 각 당사자의 의무의 전부를 구성하며, 금융조건을 포함하여 이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그 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 제 3 항 약정서의 수정

이약정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약정서를 수정하기 위하여는 차주,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의 동의가 요구된다. 이약정서에 대한 수정이나 그 조건의 포기는 그에 의하여 구속되고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들이 서명한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 제 4 항 포기, 누적적 권리

제13조 제2항 (다)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부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금융기관 또는 대주가 이약정서 중 어느 조항에 관하여 차주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않거나 늦게 청구하더라도, 대리금융기관이 대주의 지시를 받아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그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리금융기관 또는 대주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약정서에 따라 또는 그와 관련하여 교부된 서류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리금융기관 또는 대주의 모든 권리는 누적적이며, 대리금융기관 또는 대주는 수시로 그러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

## 제 5 항 양도

1. 이약정서는 차주, 대리금융기관 및 대주 그리고 그들 각자의 승계인 및 양수인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단, 차주는 이약정서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대주는 언제든지 이약정서상의 지위,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이에 추가하여 대주는 언제든지 다른 은행(들) 또는 금융기관(들)에게 이약정서상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그로 인하여 참가인과 차주간에 직접적인 당사자 또는 권리, 의무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조건하에 참가(participation)를 허용할 수 있다.

1. 대주가 이약정서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및/또는 계약상 지위(담보에 관한 권리 및 지위, 기타 모든 부수적 권리 중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차주의 이약정서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이약정서상 대주의 지위에서 보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 및 권한 등의 행사여부 또는 행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주의 위 일부 승계인 및 양수인이 위 권리 등의 일부만을 양수하거나 이전받았는지를 불문하고, 대주의 승계인 및 양수인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이 경우, 대주는 자신이 이약정서상의 권리 또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위 일부 승계인 및 양수인의 결정에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하기로 하며 그 결정에 부합하도록 자신의 권리 또는 권한을 행사하고 이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또한 차주도 대주의 위 일부 승계인 및 양수인과 대주의 판단이 상이할 경우, 위 일부 승계인 및 양수인의 결정에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하기로 하며 그 결정에 부합하도록 자신의 권리 또는 권한을 행사하고 이약정서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1. 대리금융기관 또는 대주는 이약정서상의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잠재적 양수인 또는 참가인 또는 이약정서와 관련하여 대주와 계약관계를 가지게 될 자에게 대리금융기관 또는 대주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차주를 포함한 관련회사와 이약정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2. 대주는 대출사무소를 대주의 대한민국내 다른 사무소 또는 지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주는 즉시 대리금융기관과 차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 6 항 준거법

이약정서 및 담보계약서 등 이약정서에 따라 체결되거나 작성되는 모든 계약서 및 서류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제 7 항 관할법원

차주는 이약정서 및 그가 당사자인 담보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주 또는 차주의 재산에 대한 모든 제1심 소송이나 절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따르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자는 이약정의기간 동안 관할의 합의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 제 8 항 상계

1. 대주는 대주, 그의 본점 또는 지점에 예탁되어 있는 차주의 계좌 또는 예금을 이약정서상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기타 차주가 이약정서에 따른 대출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차주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한 채무와 상계하거나 차주를 대리하여 환급 받아 그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에 추가하여 대리금융기관은, 이약정서 제6조에 따라 대리금융기관 또는 대주에 개설된 예금계정에 예탁되어 있는 예금을 이약정서에 따라 또는 이약정서에 따른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가 대리금융기관 및/또는 대주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상계하거나 그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상계로 인한 충당은 이약정서 제5조 제4항에 정한 변제충당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 제 9 항 통지

이약정서상의 최고 또는 통지는 서면으로 다음의 주소지 또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로써 지정하는 기타 주소지 또는 연락처로 인편 또는 우편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팩스,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대주에 대하여는, 대리금융기관 앞으로 통지하기로 한다.

|  |  |
| --- | --- |
|  |  |
| 차주에게: | |
|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2, 10층(대치동, 홍우빌딩) |
| 참 조: | 전략기획실 정현 실장 |
| 전 화: | 02-556-1502 |
| 팩시밀리: | 02-556-1504 |
| 이 메 일: | richard@ctreng.com |
|  |  |
| 대주에게: | |
| 주식회사 신한은행 (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 |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4층(여의도동) |
| 참 조: | 수석 이상열 |
| 전 화: | 02-2151-7815 |
| 이 메 일: | shb53@shinhan.com |
|  |  |
| 대리금융기관에게: | |
|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 |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1, 9층(여의도동, SK증권빌딩) |
| 참 조: | 박종일 차장 |
| 전 화: | 02-769-7616 |
| 팩시밀리: | 02-780-8413~4 |
| 이 메 일: | infra@alphasset.com |

모든 통지는 인편으로 교부될 경우에는 그 교부일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발송일로부터 칠(7)일이 되는 날에,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에 대한 적절한 확인이 있는 경우 발송한 때에, 각 수령된 것으로 본다. 대리금융기관이 차주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장부 등에 기재된 일자에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 10 항 비밀유지

차주 및 대주는(대주의 경우 제15조 제5항 (다)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 법령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 ㈂ 이약정서와 관련하여 법률고문 또는 회계사 기타 전문가 등으로부터 조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 이약정서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약정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그 사본을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없고 이건 대출거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 11 항 일부무효 등

이약정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 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이약정서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서명란은 다음 장에)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약정서의 당사자들은 첫머리 기재 일자에 각자의 적법한 서명권자로 하여금 이약정서 1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한 후 대리금융기관이 보관하기로 한다.

**차 주 :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정현

직위: 대표자 사내이사

주소: 경상북도 상주시 지천동 312-5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약정서의 당사자들은 첫머리 기재 일자에 각자의 적법한 서명권자로 하여금 이약정서 1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한 후 대리금융기관이 보관하기로 한다.

**대 주 : 주식회사 신한은행**

(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직위: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약정서의 당사자들은 첫머리 기재 일자에 각자의 적법한 서명권자로 하여금 이약정서 1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한 후 대리금융기관이 보관하기로 한다.

**대리금융기관 :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최준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31, 9층(여의도동, SK증권빌딩)

**부록 I 출자자의 지분비율(예정)**

|  |  |  |
| --- | --- | --- |
| **주주명** | **보유(예정)출자지분(주)** | **지분비율(%)** |
| ㈜센트럴이엔지 | 432,000주 | 90 |
| 정현 | 48,000주 | 10 |
| **합계** | **480,000주** | **100.0** |

※1주의 금액: 오백원(￦500)

**부록 II 상환계획표**

**상환계획표**

|  |  |  |  |  |  |
| --- | --- | --- | --- | --- | --- |
| **회차** | **원금상환일** | **상환원금** | **회차** | **원금상환일** | **상환원금** |
| **(단위: 백만원)** | **(단위: 백만원)** |
| 1회차 | 2021-12-31 | 38.0 | 44회차 | 2032-09-30 | 60.3 |
| 2회차 | 2022-03-31 | 27.3 | 45회차 | 2032-12-31 | 51.6 |
| 3회차 | 2022-06-30 | 43.0 | 46회차 | 2033-03-31 | 41.6 |
| 4회차 | 2022-09-30 | 48.3 | 47회차 | 2033-06-30 | 53.6 |
| 5회차 | 2022-12-31 | 39.0 | 48회차 | 2033-09-30 | 61.7 |
| 6회차 | 2023-03-31 | 28.4 | 49회차 | 2033-12-31 | 53.1 |
| 7회차 | 2023-06-30 | 43.3 | 50회차 | 2034-03-31 | 43.2 |
| 8회차 | 2023-09-30 | 49.3 | 51회차 | 2034-06-30 | 54.9 |
| 9회차 | 2023-12-31 | 40.1 | 52회차 | 2034-09-30 | 63.2 |
| 10회차 | 2024-03-31 | 29.5 | 53회차 | 2034-12-31 | 54.7 |
| 11회차 | 2024-06-30 | 44.1 | 54회차 | 2035-03-31 | 44.8 |
| 12회차 | 2024-09-30 | 50.4 | 55회차 | 2035-06-30 | 56.2 |
| 13회차 | 2024-12-31 | 41.2 | 56회차 | 2035-09-30 | 64.8 |
| 14회차 | 2025-03-31 | 30.7 | 57회차 | 2035-12-31 | 56.3 |
| 15회차 | 2025-06-30 | 45.0 | 58회차 | 2036-03-31 | 46.5 |
| 16회차 | 2025-09-30 | 51.5 | 59회차 | 2036-06-30 | 54.6 |
| 17회차 | 2025-12-31 | 42.4 | 60회차 | 2036-09-30 | 66.4 |
| 18회차 | 2026-03-31 | 31.9 | 61회차 | 2036-12-31 | 57.9 |
| 19회차 | 2026-06-30 | 46.0 | 62회차 | 2037-03-31 | 48.3 |
| 20회차 | 2026-09-30 | 52.6 | 63회차 | 2037-06-30 | 52.8 |
| 21회차 | 2026-12-31 | 43.5 | 64회차 | 2037-09-30 | 68.0 |
| 22회차 | 2027-03-31 | 33.2 | 65회차 | 2037-12-31 | 59.6 |
| 23회차 | 2027-06-30 | 47.0 | 66회차 | 2038-03-31 | 50.0 |
| 24회차 | 2027-09-30 | 53.7 | 67회차 | 2038-06-30 | 53.7 |
| 25회차 | 2027-12-31 | 44.8 | 68회차 | 2038-09-30 | 69.7 |
| 26회차 | 2028-03-31 | 34.5 | 69회차 | 2038-12-31 | 61.4 |
| 27회차 | 2028-06-30 | 48.0 | 70회차 | 2039-03-31 | 51.8 |
| 28회차 | 2028-09-30 | 55.0 | 71회차 | 2039-06-30 | 54.7 |
| 29회차 | 2028-12-31 | 46.0 | 72회차 | 2039-09-30 | 71.4 |
| 30회차 | 2029-03-31 | 35.8 | 73회차 | 2039-12-31 | 63.2 |
| 31회차 | 2029-06-30 | 49.0 | 74회차 | 2040-03-31 | 42.8 |
| 32회차 | 2029-09-30 | 56.2 | 75회차 | 2040-06-30 | 22.4 |
| 33회차 | 2029-12-31 | 47.4 | 76회차 | 2040-09-30 | 5.9 |
| 34회차 | 2030-03-31 | 37.2 | 77회차 |  |  |
| 35회차 | 2030-06-30 | 50.1 | 78회차 |  |  |
| 36회차 | 2030-09-30 | 57.5 | 79회차 |  |  |
| 37회차 | 2030-12-31 | 48.7 | 80회차 |  |  |
| 38회차 | 2031-03-31 | 38.6 | 81회차 |  |  |
| 39회차 | 2031-06-30 | 51.2 | 82회차 |  |  |
| 40회차 | 2031-09-30 | 58.9 | 83회차 |  |  |
| 41회차 | 2031-12-31 | 50.1 | 84회차 |  |  |
| 42회차 | 2032-03-31 | 40.1 |  |  |  |
| 43회차 | 2032-06-30 | 52.4 | 합계 |  | 3,662.0 |

**부록 III 최초인출을 위한 선행조건**

1. 이건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관련 서류 등
2.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허가 조건 및 허가조건상의 필수 서류 포함)
3. 개발행위 허가증 사본(허가 조건 및 허가조건상의 필수 서류 포함)
4. 이건사업부지에 관한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 사본
6. 사용전검사필증(한국전기안전공사) 사본
7. 개발행위준공필증(부속서류 포함) 사본
8. 이건사업시설에 대한 사업개시신고수리접수증 사본
9. 한국전력거래소의 계통 승인공문 기타 한국전력거래소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한 전력거래자 등록 완료서류 사본(단, 한국전력공사 주식회사와 체결한 발전전력수급계약서가 있는 경우 발전전력수급계약서 사본)
10.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른 시공사의 하자보증증권(단, 최초인출일로부터 칠(7) 영업일 또는 달리 대리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 가능)
11. 시공사의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 및 관련 세금계산서(최초인출일 전 공사도급계약상 지급기한이 도래한 공사대금의 경우)
12. 이건사업시설에 대한 한국에너지공단의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가중치 우송: 1.026, 예리: 1.025 이상일 것)
13. 기타 대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각종 인허가, 승인 등
14. 차주 관련 서류 등
15. 차주의 정관 사본
16. 차주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7. 차주의 최근 회사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있는 경우)
18. 차주의 법인인감증명서
19. 이약정서, 그가 당사자인 담보계약서 기타 금융관련서류 및 그와 관련된 모든 서류의 작성과 이행을 승인하고, 차주를 위하여 위 서류에 서명할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차주의 이사회의사록(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포함)의 적법하게 증명된 사본과 그와 관련된 위임장 및 수임인 신분증 사본
20. 차주를 위하여 이약정서, 그가 당사자인 담보계약서, 기타 금융관련서류 및 그와 관련한 모든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은 사람(들)의 인감, 서명, 명판에 관한 증명서
21. 출자자 관련 서류
22.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23. 출자자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4. 출자자의 정관
25. 출자자의 법인인감증명서
26. 출자자의 최근 회사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27. 출자자가 당사자인 담보계약서 기타 금융관련서류 및 그와 관련된 모든 서류의 작성과 이행을 승인하고, 출자자를 위하여 위 서류에 서명할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출자자의 이사회의사록(필요한 경우) 또는 주주총회의사록의 적법하게 증명된 사본과 그와 관련된 위임장 및 수임인 신분증 사본
28. 출자자를 위하여 그가 당사자인 담보계약서, 기타 금융관련서류 및 그와 관련한 모든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은 사람(들)의 인감, 서명, 명판에 관한 증명서
29.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
30. 출자자의 주민등록등본
31. 출자자의 인감증명서
32.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33. 관리운영회사 관련 서류
34. 관리운영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5. 관리운영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36. 관리운영회사가 당사자인 담보계약서 기타 금융관련서류 및 그와 관련된 모든 서류의 작성과 이행을 승인하고, 관리운영회사를 위하여 위 서류에 서명할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관리운영회사의 이사회의사록 또는 내부품의서류 사본과 그와 관련된 위임장 및 수임인 신분증 사본
37. 관리운영회사를 위하여 그가 당사자인 담보계약서, 기타 금융관련서류 및 그와 관련한 모든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은 사람(들)의 인감, 서명, 명판에 관한 증명서
38. 일반사무수탁자 관련 서류
39. 일반사무수탁자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0. 일반사무수탁자의 정관 사본
41. 일반사무수탁자의 법인인감증명서
42. 일반사무수탁자가 당사자인 금융관련서류 및 그와 관련된 모든 서류의 작성과 이행을 승인하고, 일반사무수탁자를 위하여 위 서류에 서명할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일반사무수탁자의 위임장 및 수임인 신분증 사본
43. 관리운영재수탁사 관련 서류
44. 관리운영재수탁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5. 관리운영재수탁사의 정관 사본
46. 관리운영재수탁사의 법인인감증명서
47. 관리운영재수탁사의 최근 회사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48. 관리운영재수탁사가 당사자인 담보계약서 기타 금융관련서류 및 그와 관련된 모든 서류의 작성과 이행을 승인하고, 관리운영재수탁사를 위하여 위 서류에 서명할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관리운영재수탁사의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의 적법하게 증명된 사본과 그와 관련된 위임장 및 수임인 신분증 사본
49. 관리운영재수탁사를 위하여 그가 당사자인 담보계약서, 기타 금융관련서류 및 그와 관련한 모든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은 사람(들)의 인감, 서명, 명판에 관한 증명서
50. 담보계약서 관련서류
51. 제7조 제1항에 의한 예금근질권설정계약서, 예금통장과 거래인감, 예금계정 개설은행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 및 예금계정 개설은행의 확정일자부 승낙서(승낙서는 최초인출일로부터 칠(7)영업일 이내 제출 가능)
52. 제7조 제2항에 의한 채권근질권설정계약서, 이에 따른 확정일자부 채권질권설정통지서
53. 제7조 제3항에 의한 채권양도담보계약서, 이에 따른 확정일자부 양도통지서 및 승낙서{단, 공급인증서매매계약, 공사도급계약 및 임대차계약(임대부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부 통지서로 갈음함}
54. 제7조 제4항에 의한 동산양도담보계약서
55. 제7조 제5항에 의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처분승낙서, 양도증서, 위임장, 질권설정 등록이 되어 있는 증권 및 주주명부사본
56. 제7조 제6항에 의한 보험근질권설정계약서, 이에 따른 차주의 확정일자부 통지서 및 보험회사로부터의 확정일자부 승낙서(통지서 및 승낙서는 최초인출일로부터 칠(7)영업일 이내 제출 가능)
57. 제7조 제7항에 의한 토지담보신탁계약서, 이에 따라 대주를 위하여 토지담보신탁 설정을 신청하는 서류
58. 제7조 제8항에 의한 책임운영확약서
59. 제7조 제9항에 의한 출자자확약서
60. 관련계약서 및 서류
61. 모듈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서 사본
62. 인버터, 모듈에 대한 품질보증서 사본
63. 공사도급계약 사본
64. 관리운영위탁계약 사본
65. 임대차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서 각 사본(임대부지인 경우)
66. 일반사무위탁계약 사본
67. 이건사업시설에 관한 기술검토보고서(동 기술검토보고서의 검토사항에 대한 치유 또는 조치가 완료될 것)
68. 사업성검토보고서
69. 보험 관련 서류
70. 이약정서에 따라 부보하여야 하는 운영기간 중 보험(이하 본 호에서 같음)의 보험청약서(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음)
71. 최초인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기일에 납입된 보험료의 납입영수증(단, 보험의 성질상 보험증권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이 없는 경우는 예외임)
72. 보험증권 및 보험회사 또는 보험컨설팅회사의 부보의견서(단, 대리금융기관 이 동의하는 경우 부보계획서로 갈음하고, 보험증권 및 부보의견서는 최초 인출 후 칠(7)영업일 이내에 제출 가능)
73. 기존차입금 상환 관련 서류
74. 기존차입금 상환 관련 조기상황 요청 공문 사본
75. 기타 기존차입금 상환 관련 대주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76. 변호사 법률의견서

차주의 적법한 설립과 이약정서를 포함한 금융관련서류의 적법, 유효성에 관한 법률의견서

1. 기타 서류

대리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기타 서류들

**부록 IV 시설 및 부지내역**

1. 이건사업부지

| **구분** | **주소** | **설치면적(㎡)** |
| --- | --- | --- |
| **우송태양광발전소** | [경상북도 상주시 지천동 312-5] | [9,863] |

1. 이건사업시설

| **구 분** | **내 용** |
| --- | --- |
| **발전소명** | [우송]태양광발전소 |
| **소재지** | [경상북도 상주시 지천동 312-5] |
| **시설용량** | [765.90]Kw |
| **경 사 도** | [평지]° |
| **모듈** | 모델명: [JSMM370A]  제조사: [JSPV] |
| **모듈성능보증** | [최초1년 97.0%,, 2년~25년차 0.65%감소, 25년차 81.4% 이상의 출력성능 보증] |
| **인버터** | 모델명: [HS-P500GLO]  제조사: [효성] |
| **발전시스템** | [고정형] |
| **시공사** | ㈜센트럴이엔지 |
| **관리운영사** | 한화에너지 주식회사 |
| **발전시간보장** | * 3년간 일평균 삼점오(3.5)시간 해당 발전시간 보장(연 0.5% 효율감소적용) * 3년 이후 관리운영사의 최저시스템효율유지의무로 전환(3년째 및 이후 매년 관리운영위탁계약 유지 여부 협의) (단, 관리운영계약의 유지 여부와 별개로, 대출금 전액 상환 시까지 재수탁사가 일평균 삼점오(3.5)시간 해당 발전시간 보장(연 0.5% 효율감소적용) |
| **하자보수**  **이행보증** | 준공일(발전소별)로부터 3년  공사도급금액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 |

**부록 IV 시설 및 부지내역**

1. 이건사업부지

| **구분** | **주소** | **설치면적(㎡)** |
| --- | --- | --- |
| **예리태양광발전소** |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예리 산 64] | [8,382] |

1. 이건사업시설

| **구 분** | **내 용** |
| --- | --- |
| **발전소명** | [예리]태양광발전소 |
| **소재지** | [경상남도 창군 도천면 예리 산 64] |
| **시설용량** | [797.04]Kw |
| **경 사 도** | [남향 2도,14도,평지]° |
| **모듈** | 모델명: [JAM72S10-405MR]  제조사: [JA솔라] |
| **모듈성능보증** | [최초1년 97.0%,, 2년~25년차 0.65%감소, 25년차 81.4% 이상의 출력성능 보증] |
| **인버터** | 모델명: [HS-P500GLO]  제조사: [효성] |
| **발전시스템** | [고정형] |
| **시공사** | ㈜센트럴이엔지 |
| **관리운영사** | 한화에너지 주식회사 |
| **발전시간보장** | * 3년간 일평균 삼점오(3.5)시간 해당 발전시간 보장(연 0.5% 효율감소적용) * 3년 이후 관리운영사의 최저시스템효율유지의무로 전환(3년째 및 이후 매년 관리운영위탁계약 유지 여부 협의) (단, 관리운영계약의 유지 여부와 별개로, 대출금 전액 상환 시까지 재수탁사가 일평균 삼점오(3.5)시간 해당 발전시간 보장(연 0.5% 효율감소적용) |
| **하자보수**  **이행보증** | 준공일(발전소별)로부터 3년  공사도급금액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 |

**부록V 금전대여 법인**

|  |  |  |  |  |  |
| --- | --- | --- | --- | --- | --- |
|  | 발전사업자(차주) | 대수선비  적립금(백만원) | 최소유지  적립금(백만원) | 최초부채상환적립액(백만원) | 비고 |
| 1 |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 92 | 87 | 81 |  |
| 2 | 센트럴태양광발전소26호㈜ | 55 | 52 | 53 |  |
| 3 | 센트럴태양광발전소20호㈜ | 56 | 53 | 65 |  |
| 4 | 센트럴태양광발전소21호㈜ | 56 | 53 | 65 |  |
| 5 | 센트럴태양광발전소22호㈜ | 57 | 53 | 65 |  |
| 6 | 센트럴태양광발전소23호㈜ | 57 | 53 | 65 |  |
| 7 | 센트럴태양광발전소4호㈜ | 103 | 97 | 88 |  |
| 8 | 센트럴태양광발전소24호㈜ | 58 | 54 | 44 |  |
| 9 | 센트럴태양광발전소25호㈜ | 49 | 46 | 58 |  |
| 10 | ㈜아침태양광6호 | 101 | 95 | 66 |  |
| 11 | 센트럴태양광발전소5호㈜ | 58 | 55 | 48 |  |
| 12 | 센트럴태양광발전소6호㈜ | 60 | 56 | 56 |  |
| 13 | 센트럴태양광발전소19호㈜ | 51 | 48 | 43 |  |
| 14 | ㈜다랑쉬태양광 | 62 | 58 | 43 |  |
| 15 | 센트럴태양광발전소1호㈜ | 63 | 60 | 42 |  |
| 16 | 센트럴태양광발전소2호㈜ | 63 | 60 | 42 |  |
| 17 | ㈜도화 | 63 | 60 | 41 |  |
| 18 | ㈜지보에너지 | 31 | 30 | 20 |  |
| 19 | ㈜보문에너지 | 63 | 60 | 41 |  |
| 20 | 솔라다이렉트㈜ | 14 | 13 | 8 |  |
| 21 | 채움쏠라㈜ | 64 | 60 | 41 |  |
| 22 | 피씨솔라㈜ | 65 | 61 | 36 |  |
| 23 | 회동에너지㈜ | 42 | 40 | 24 |  |
| 24 | 제이에이치에너지㈜ | 72 | 67 | 41 |  |
| 25 | 대성쏠라㈜ | 66 | 62 | 37 |  |
| 26 | 더드림에너지㈜ | 51 | 48 | 29 |  |
| 27 | ㈜제이씨엠에너지 | 51 | 48 | 29 |  |
| 28 | 비오엠쏠라㈜ | 66 | 62 | 42 |  |
| 29 | 우성에너지㈜ | 43 | 41 | 27 |  |
| 30 | 강원발전㈜ | 198 | 186 | 121 |  |
| 31 | 에스발전㈜ | 198 | 186 | 120 |  |
| 32 | 케이발전㈜ | 198 | 186 | 122 |  |
| 33 | 영동발전㈜ | 66 | 62 | 40 |  |
| 34 | 솔라나인㈜ | 123 | 116 | 110 |  |
| 35 | 솔라원㈜ | 123 | 116 | 110 |  |
| 합계 | | **2,638** | **2,484** | **1,964** |  |

**별첨 가  
인출요청서**

일자: **\_\_\_\_\_\_**년 **\_\_\_**월 **\_\_\_**일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아래 기재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대주의 대리금융기관)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차주”)는 2021년 9월 28일자 대출약정서(“대출약정서”) 제3조에 따라 인출 의사를 통지하며 **\_\_\_\_**년 **\_\_**월 **\_\_**일, 금**\_\_\_\_\_\_\_\_\_\_\_\_\_\_\_**원(₩**\_\_\_\_\_\_\_\_\_\_\_\_\_\_\_**)의 금액을 인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차주에게 인출되는 모든 금액은 우리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지점에 차주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유보계정(계정번호: 1005-504-222420)으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는 이 인출요청서 일자 현재 다음사항을 확인합니다.

(1) 채무불이행 사유를 구성하는 사건이나, 통지 및/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구성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 대출약정서에 포함된 차주의 모든 확인사항은 이 인출요청서 작성일자 현재 진실하고 정확하며,

(3)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제12조 제1항/제2항에 명시된 필요한 선행조건은 모두 충족되었고,

(4)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차주의 모든 준수사항은 완전하게 이행되었습니다.

위에서 확인한 사항에 관하여 인출일까지 변경이 발생할 경우 차주는 이를 귀사에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귀사가 그 때까지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 위 사항들이 인출일자 현재로 확인된 것으로 보는 데 동의합니다. 이 요청서에 사용된 모든 용어는 대출약정서에서의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정현 (인)

**별첨 나   
예금인출동의서**

일자: **\_\_\_\_\_\_**년 **\_\_\_**월 **\_\_\_**일

수 신 : 우리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지점

1. 2021년 9월 일 체결된 「예금근질권설정 관련 특별약정」관련입니다.

2. 근질권자는 근질권설정자의 아래 금원의 예금인출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근질권자는 귀행에 대한 서면통지(단, Fax송부 제외)에 의하여 위 예금인출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금차 인출된 예금은 질권설정된 예금의 일부지급(예금목적물의 인출)으로서 담보해지 및 질권해지로 보지 아니하며 종전 예금근질권설정계약서의 모든 내용은 계속 유효합니다.

4. 다만, 위 예금 일부지급으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주장 또는 기타 문제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은 근질권자 및 근질권설정자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5. 인출금액 :

【계좌번호 : 】

20 년 월 일

**근질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근질권자의 담보관리기관 겸 대리인(근질권자를 위하여)**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준혁 (인)

**근질권설정자**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겸 예금주** 대표자 사내이사 정현 (인)

**근질권의 목적인 예금계좌 목록**

|  |  |  |
| --- | --- | --- |
| **예금주** | **계좌번호** | **비고** |
|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  |  |

첨부: 예금출금요청서

첨부

**예금출금요청서**

20 년 **\_\_\_**월 **\_\_\_**일

**수신 : 우리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지점 앞**

계좌번호 : 예금주 :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2021년 9월 28일자 대출약정서(“대출약정서”) 제6조에 의거 아래 금액을 위 계정에서 인출하여 아래 지정구좌로 계좌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금인출요청내역(단위:원)

|  |  |  |  |  |
| --- | --- | --- | --- | --- |
| 항 목 별 | 인출일자 | 인출요청금액 | 인출승인금액 | 비고 |
|  |  |  |  |  |
| 합 계 | |  |  |  |

2. 계좌이체요청내역(단위:원)

|  |  |  |  |  |
| --- | --- | --- | --- | --- |
| 항 목 별 | | 이체일자 | 이체요청금액 | 수취계좌번호  (예 금 주) |
|  | |  |  |  |
|  | |  |  |  |
| 합 계 | | |  |  |
| 특기사항 |  | | | |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정현 (인)

위 출금 요청을 승인함

**대리금융기관: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준혁 (인)

**별첨 다**  **예금근질권 설정계약서**

이 예금근질권설정계약서는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2021년 9월 28일 체결되었다.

**채권자겸근질권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이하 문맥에 따라 "대주" 또는 "질권자")

**채무자겸근질권설정자** 경상북도 상주시 지천동 312-5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이하 "질권설정자")

**대리금융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31, 9층(여의도동, SK증권빌딩)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고 질권자의 대리금융기관 및 담보관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대리금융기관" 또는 "담보관리기관")

**전 문**

설정자는 우송, 예리 태양광발전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및 대리금융기관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와 2021년 9월 28일자 금삼십육억육천이백만원(￦3,662,000,000) 우송, 예리 태양광발전사업 자금재조달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서(이하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다(여기서 말하는 대출약정서는 추후 수정, 변경 또는 보충된 대출약정서를 포함한다).

설정자는 대출약정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질권자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예금계정(이하 "예금계정")을 개설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일부 예금계정을 이미 개설하였거나 장차 개설할 예정이다.

질권자가 대출약정서에 따른 대출을 하기 위한 인출선행조건의 일부로서 대출약정서에 따라, 질권자 및 질권자의 대리금융기관이며 담보관리기관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설정자와 이 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설정자가 자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질권자에게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 질권자와 질권설정자 간의 권리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근질권의 설정**

질권설정자는 아래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첨 1 목록 기재의 예금계좌(이하 "예금계좌"라 한다)에 예치되었거나 예치될 예금채권에 질권자를 위하여 근질권을 설정하고 그 증서(통장 및 거래인감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를 질권자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다만, 질권자는 질권설정자로 하여금 증서를 보관하게 할 수 있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대출약정에 따라 또는 그와 관련하여, 질권설정자 질권자에게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채무 및 기타 일체의 금전채무(이하 "피담보채무"라 한다)
2. 담보한도액: 금삼십육억육천이백만원(￦3,662,000,000)의 120%

**제 3 조 대항요건의 구비**

질권설정자는 별첨 1 목록 기재 예금계좌의 개설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에 대한 승낙서를 교부받아 이에 확정일자를 득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질권설정에 관하여 대항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 4 조 근질권의 효력범위**

1. 이 계약에 따른 별첨 1 목록 기재 예금계좌에 대한 근질권의 효력은, 이 계약 체결 이후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금원 및 동 이자에 미치는 것으로 한다.
2. 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이 계약서에 따른 근질권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출되고 이체될 수 있다. 질권설정자의 인출요청에 대한 질권자의 동의는 인출된 금원에 관한 근질권의 일부해지로 간주된다.

**제 5 조 위험부담과 면책조항**

1.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게 인도한 증서가 불가항력 등 질권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분실, 손실 또는 멸실된 경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그에 대신할 증서를 재발급받아질권자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2. 질권자가 증서, 담보물수령증 등의 증서상의 인영 또는 서명을 질권설정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과 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증서 등과 도장 또는 서명에 관하여 위조, 변조, 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질권설정자가 부담하며 질권설정자는 증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 6 조 근질권의 실행**

1.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이익 상실로 말미암아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게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때에는, 질권자는 근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2.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질권자는 질권설정자를 대리하여 예금계좌로부터 금원을 인출하여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질권자가 그와 같이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곧바로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한다.
3. 제1항의 근질권 행사 또는 제2항의 대리환급 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의 채권채무의 이자 등이나 지연배상금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기간은 질권자가 근질권 실행 등을 위하여 금원을 인출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질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4. 제1항, 제2항의 경우 피담보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질권자는 대출약정서 및 질권자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 7 조 근질권의 해지**

피담보채무가 모두 이행된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근질권 설정을 해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에 관한 비용은 질권설정자가 부담한다.

**제 8 조 비용부담**

질권자가 이 계약서에 의한 권리의 보전이나 행사 등에 관한 비용, 기타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질권설정자로 인하여 질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질권설정자가 부담하며, 질권자가 대신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질권설정자가 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한다.

**제 9 조 다른 담보약정과의 관계**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따로 제공한 보증 또는 담보는 이 계약서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질권설정자가 장래 이 계약서와 별도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 10 조 계약상 지위의 양도금지**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 계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담보제공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제 11 조 일부무효 등**

이 계약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 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이 계약서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제 12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되며,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에 서명 또는 날인하기 위하여 이하 여백)*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첫머리 기재 일자에 각자의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로 하여금 이 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한 후 질권자의 담보관리기관 겸 대리인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원본을, 나머지 당사자들은 사본을 각 보관하기로 한다.

**대 주 : 주식회사 신한은행**

**겸 질 권 자** (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질권자의 담보관리기관 겸 대리인(질권자를 위하여):**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최준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1, 9층(여의도동, SK증권빌딩)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첫머리 기재 일자에 각자의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로 하여금 이 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한 후 질권자의 담보관리기관 겸 대리인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원본을, 나머지 당사자들은 사본을 각 보관하기로 한다.

**질권설정자**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_\_\_\_\_\_\_\_\_\_\_\_\_\_\_\_\_\_\_\_**

성명 : 정현

직위 : 대표자 사내이사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지천동 312-5

(별첨 1)

근질권의 목적인 예금계좌 목록

|  |  |  |
| --- | --- | --- |
| **구분** | **예금계정번호(계좌번호)** | **은행명** |
| 유보계정 | 1005-504-222420 | 우리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지점 |
| 부채상환적립계정 | 1005-904-234982 | 우리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지점 |
| 대수선비적립계정 | 1005-304-244862 | 우리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지점 |

첨부 가

**통 지 서**

일 자 : 년 \_\_월 \_\_일

수 신 : 우리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지점

제 목 : 예금근질권설정 통지

이 통지서는 당사가 귀사(귀하)에 대하여 보유하는 별첨 예금계정상 예금채권에 대한 근질권설정과 관련됩니다.

당사는 우송, 예리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 (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이하 “대주”) 및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대리금융기관”)와 2021년 9월 28일자 금삼십육억육천이백만원(￦3,662,000,000) 우송, 예리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사업 자금재조달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서(이하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귀사에게 다음 사실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1. 당사는 대출약정서와 관련한 당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당사가 귀사에 개설한 별첨 예금계정상 보유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예금채권(본 통지서 이후 동 예금계정에 입금되는 예금, 적금, 이자, 만기후 이자, 동 예금이나 적금이 기간연장 또는 개서되어 계속된 경우나 병합, 분할, 증액, 감액, 이자원가된 경우 포함)에 대하여 대주에게 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

2. 귀사가 대주 또는 대리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약정서 제13조에 규정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서면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당사의 귀사에 대한 예금채권에 기하여 귀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금액은 대주 또는 대주의 대리금융기관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동봉한 승낙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에 송부함으로써 귀사가 본 통지서의 내용을 승낙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정현 (인)

경상북도 상주시 지천동 312-5

**[확정일자]**

첨부 - 승낙서

별첨

**질권의 목적인 예금계정의 목록**

|  |  |  |
| --- | --- | --- |
| **구분** | **예금계정번호(계좌번호)** | **은행명** |
| 유보계정 | 1005-504-222420 | 우리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지점 |
| 부채상환적립계정 | 1005-904-234982 | 우리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지점 |
| 대수선비적립계정 | 1005-304-244862 | 우리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지점 |

첨부 나

**승 낙 서**

일 자 : 년 월 일

수 신 :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제 목 : 예금근질권설정에 대한 승인

당행은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가 당행에 개설한 아래 근질권의 목적인 예금계좌(이하 "예금계좌"라 합니다)에 대하여 귀사와의 사이에 예금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키로 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동 계약에 따라 해당 예금계좌에 대하여 근질권이 설정되어 현재의 계좌잔액 및 향후 동 계좌에 입금되는 모든 금원에 대하여도 근질권의 효력이 있음을 승인합니다. 다만, 동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과 관련하여 예금계좌에 대한 제3자의 가압류, 압류 등 권리주장이 있는 경우, 예금계좌 개설은행은 귀속자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질권설정자 및 질권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본 질권설정 및 질권설정에 대한 당행의 승낙으로 인하여 당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질권설정자는 그 손해 및 지연배상금, 손해배상금을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행은 향후 예금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인출 및 이체 등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귀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의 인출 및 이체요청에 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가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의 인출 전에 철회되는 경우에는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의 인출 및 이체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당행은 귀사에 본 승낙서를 발행할 때까지 동 예금계좌의 근질권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제3자로부터의 통지 또는 가압류,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받은 바 없음을 확인합니다.

우리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지점

지점장 (인)

**[확정일자]**

별첨 - 질권의 목적인 예금계정의 목록

별첨

**질권의 목적인 예금계정의 목록**

|  |  |  |
| --- | --- | --- |
| **구분** | **예금계정번호(계좌번호)** | **은행명** |
| 유보계정 | 1005-504-222420 | 우리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지점 |
| 부채상환적립계정 | 1005-904-234982 | 우리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지점 |
| 대수선비적립계정 | 1005-304-244862 | 우리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지점 |

**별첨 라**   
**채권근질권 설정계약서**

이 근질권설정계약서(“이 계약서”)는 2021년 9월 28일자로 아래 당사자들간에 체결된다.

경상북도 상주시 지천동 312-5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본점소재지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하 “차주” 또는 “설정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이하 문맥에 따라 "대주" 또는 "질권자")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31, 9층(여의도동, SK증권빌딩)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고 질권자의 대리금융기관 및 담보관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대리금융기관" 또는 "담보관리기관")

차주는 우송, 예리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질권자 및 대리금융기관과 2021년 9월 28일자로 금삼십육억육천이백만원(￦3,662,000,000) 우송, 예리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사업 자금재조달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서(이하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는 바(여기서 말하는 대출약정서는 추후 수정, 변경 또는 보충된 대출약정서를 포함한다),

차주는 이건사업시설의 완공 후 운영으로 인하여 생산된 전력의 판매에 따라 전력대금지급의무자(아래 정의됨)에 대하여 전력대금청구권(아래 정의됨)을 취득할 예정이다.

질권자가 대출약정서에 따른 대출을 하기 위한 선행조건의 일부로서 대출약정서에 따라, 질권자 및 질권자의 담보관리기관 겸 대리금융기관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차주와 이 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에 이 계약서의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정의**

이 계약서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대출약정서에서 정의된 용어들은 이 계약서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전력대금청구권”은 차주가 이건사업시설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여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그 대가로 수취할 판매대금청구권을 말한다.

“전력대금지급의무자”는 차주에 대한 전력대금 지급주체인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한국전력공사 및 기타 제3자를 말한다.

**제 2 조 질권의 설정**

차주는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에 따라 차주가 전력대금지급의무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전력대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자를 위하여 근질권을 설정한다.

1. 담보한도: 대출약정금 금삼십육억육천이백만원(￦3,662,000,000)의 120%

2. 피담보채무의 범위: 대출원리금 및 기타 대출약정서와 관련하여 차주가 질권자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하 “피담보채무”라 한다)

**제 3 조 대항요건**

차주는 이건사업시설에 대한 상업운전 개시 후 즉시 해당 전력대금지급의무자에 대하여 이 계약서에 따른 근질권설정에 관하여 “첨부 가”, “첨부 나”와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하고, 동 확정일자부 통지서 사본을 담보관리기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대리금융기관이 담보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거나 이 계약서 체결일 현재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전력대금청구권이 객관적으로 발생 가능하고 확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의 도래 즉시 해당 전력대금지급의무자에 대하여 이 계약서에 따른 근질권설정에 관하여 “첨부 가”, “첨부 나”와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하고, 동 확정일자부 통지서 사본을 담보관리기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4 조 근질권의 효력범위**

이 계약서에 따른 근질권의 효력은, 이 계약서 체결 이후 발생되는 전력대금청구권 및 그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하여도 별도의 의사표시나 기타의 조치없이 당연히 그에 미치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 질권의 실행**

1.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말미암아 차주가 질권자에게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 질권자 또는 대리금융기관은 전력대금지급의무자에게 전력대금을 질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질권 실행에 추가하여 질권자 또는 대리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기, 방법, 가격 등에 의하여 수익권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본 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피담보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질권자 명의로 전력대금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자 또는 대리금융기관은 전력대금청구권을 처분 또는 취득하기 일십(10)일 전까지 차주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제 6 조 담보가치의 유지**

차주는 질권자 및 대리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전력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 조 다른 담보약정과의 관계**

차주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별도로 제공한 담보는 이 계약서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차주가 장래 이 계약서와 별도로 다른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같다.

**제 8 조 비용부담**

질권자 및 대리금융기관이 이 계약서에 의한 권리의 취득, 보전, 행사 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비용 기타 이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차주의 부담으로 한다. 차주는 질권자 또는 대리금융기관이 본조에 의한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경우 이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제 9 조 양도**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지 양도할 수 있고,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계약서에 따른 질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차주는 피담보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자가 질권자의 모든 권리를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제 10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이 계약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2. 이 계약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은 다음 장에)*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첫머리 기재 일자에 각자의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로 하여금 이 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한 후 질권자의 담보관리기관 겸 대리인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원본을, 나머지 당사자들은 사본을 각 보관하기로 한다.

**차 주 :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겸 설 정 자**

**\_\_\_\_\_\_\_\_\_\_\_\_\_\_\_\_\_\_\_\_**

성명 : 정현

직위 : 대표자 사내이사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지천동 312-5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첫머리 기재 일자에 각자의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로 하여금 이 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한 후 질권자의 담보관리기관 겸 대리인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원본을, 나머지 당사자들은 사본을 각 보관하기로 한다.

**대 주 : 주식회사 신한은행**

**겸 질 권 자** (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질권자의 담보관리기관 겸 대리인(질권자를 위하여):**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최준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1, 9층(여의도동, SK증권빌딩)

첨부 가

**통 지 서**

일 자 : 년 \_\_월 \_\_일

수 신 : 한국전력공사

1. 이 통지서는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이하 “설정자”), 대주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이하 “질권자”), 대리금융기관으로서의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대리금융기관”) 등 사이에 체결된 2021년 9월 28일자 금삼십육억육천이백만원(￦3,662,000,000) 우송, 예리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사업 자금재조달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서(이하 “대출약정서”, 추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변경 또는 보충된 내용을 포함)와 관련됩니다.

2. 설정자는 대출원리금 및 기타 대출약정서와 관련하여 설정자가 질권자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채무(이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28일 질권자와 채권근질권설정계약(이하 “본건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설정자가 귀사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에 가질 수 있는 모든 전력거래대금청구권과 법적 이익에 대하여 질권자를 위하여 채권근질권을 설정(이하 “본건 근질권설정”)하였습니다.

3. 이에 설정자는 귀사에게 본건 근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합니다.

4. 마지막으로 이건과 관련한 귀사의 이해와 협력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차 주** **: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정현 (인)

경상북도 상주시 지천동 312-5

**[확정일자]**

첨부 나

**통 지 서**

수 신 : 한국전력거래소 결제담당자

발 신 :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 질권설정자(회원사) / ☐ 질권자)

질권설정자 연락처 : [02-556-1502] (회사내 연락처 기입)

질권자 연락처 : [02-2151-7815] (회사내 연락처 기입)

1.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소의 회원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이하 “질권설정자”라 함)는 2021년 9월 28일(이하 “계약체결일”이라 함) 귀 소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채권을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3.2조 제4항, [별표8]에 따라 주식회사 신한은행 (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이하“질권자”라 함)을 위해 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

- 아 래 -

|  |  |
| --- | --- |
| 질권설정할 채권의 범위 | |
| 해당 발전기(모두 기재) |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태양광발전기  (우송 태양광발전소, 예리 태양광발전소) |
| 질권설정할 채권 | ☑ 전력거래대금  ☐ 발전차액지원금  ☐ 기타( ) |
| 질권설정 금액 | ￦4,394,400,000 |

3. 이에 (☑ 질권설정자 / ☐ 질권설정자로부터 위임받은 질권자)는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8]에 따라 귀 소에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합니다.

4. 질권설정자 및 질권자는 본 질권설정의 효력이 질권설정 통지 도달일로부터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8] 7.11.6.5 각 호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5. 질권설정자 및 질권자는 귀 소가 본 질권설정 통지에 따라 시행한 정산 및 결제를 유효한 채무변제로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질권설정자 및 질권자는 본 질권설정과 경합하는 여타 권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귀 소의 내부규정에 따르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 --- | --- |
| 붙임 : | 1. 질권설정자의 법인(또는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2. 질권자의 법인(또는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3. 질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증 1부  4. 질권자의 사업자등록증 1부 |

2021년 월 일

|  |  |  |
| --- | --- | --- |
| 질권설정자(회원사) | 회원사명  대표자  주소 |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인)  대표자 사내이사 정현  경상북도 상주시 지천동 312-5 |
| 질권자 | 법인명(성명)  대표자  주소 | 주식회사 신한은행(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인)  [  [ |

**별첨 마**  **채권양도담보계약서**

이 채권양도담보계약서(“이 계약서”)는 2021년 9월 28일 아래 당사자들간에 체결된다.

경상북도 상주시 지천동 312-5에 등기된 본사를 두고 있는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이하 “설정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이하 문맥에 따라 "대주" 또는 “담보권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1, 9층(여의도동, SK증권빌딩)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고 질권자의 대리금융기관 및 담보관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대리금융기관” 또는 "담보관리기관")

설정자는 우송, 예리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담보권자 및 대리금융기관과 2021년 9월 28일 금삼십육억육천이백만원(￦3,662,000,000) 우송, 예리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사업 자금재조달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서(“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다(여기서 말하는 대출약정서는 추후 수정, 변경 또는 보충된 대출약정서를 포함한다).

담보권자가 대출약정서에 따른 대출을 하기 위한 인출선행조건의 일부로서 대출약정서에 따라, 담보권자 및 담보권자의 대리금융기관이며 담보관리기관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설정자와 이 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 1 조 정 의**

대출약정서에서 정의된 용어들은, 이 계약서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이 계약서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 2 조 채권의 양도**

1. 설정자는 대출원리금 및 기타 대출약정서와 관련하여 설정자가 담보권자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채무(“피담보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기재한 양도대상계약(“양도대상계약”이라 한다)상 설정자가 이미 취득하였거나 장차 취득할 모든 채권을 피담보채무의 범위 내에서 이 계약서의 체결에 의하여 담보권자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양도대상계약상의 채무는 여전히 설정자가 부담하고 담보권자는 양도대상계약상의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공사도급계약
3. 관리운영위탁계약
4. 일반사무위탁계약
5. 임대차계약 및 그 부속서류(있을 경우)
6. 공급인증서매매계약
7. 전력판매계약(대출약정서 제7조 제2항 (나)호의 경우)
8. 기타 설정자가 이건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와 체결할 기타 계약으로서 동 계약상 일정한 경우 설정자가 금원을 지급받거나 재산권을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계약 중 대리금융기관이 양도대상계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계약
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서 체결일 현재 아직 체결되지 아니한 양도대상계약에 따라 설정자가 취득할 모든 채권은, 설정자가 당해 양도대상계약에 따라 채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당사자들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이 계약서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계약상의 지위의 이전**

1. 설정자는 양도대상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 즉 계약상의 지위를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자 및 대리금융기관이 지정하여 통지하는 제3자에게 모두 이전한다. 이 경우 이전되는 계약상의 지위에는 설정자가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제목여하를 불문함)에 따라 시공사가 설정자에게 제공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의 사용에 대한 지위를 포함한다. 다만, 이 항에 따른 이전의 효력은 제5조에 정한 바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서 체결일 현재 아직 체결되지 아니한 양도대상계약의 경우에는, 설정자가 당해 양도대상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당사자들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동 계약상의 설정자의 지위가 담보권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항에 따른 이전의 효력은 그 후 제5조에 정한 바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
3. 제2조에 의한 채권의 양도는 본 조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4 조 상대방에 대한 통지 및 승낙**

1. 설정자는 이 계약서를 체결한 날로부터 오(5)영업일 이내에 양도대상계약의 상대방에게, ㈀ 설정자가 담보를 위하여 당해 계약상의 채권을 담보권자에게 양도하였고, ㈁ 양도대상계약상의 지위를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자 및 대리금융기관이 지정하여 통지하는 자에게 이전하였음을 “첨부 가”의 양식(또는 그에 준하는 양식)에 의하여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를 하고, 해당 양도대상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확정일자에 의한 승낙을 받아 대리금융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i) 설정자가 관련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서를 받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관련 계약 상대방에 대한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서로 갈음하기로 하며, (ii) 전력판매계약(대출약정서 제7조 제2항 (나)호의 경우)의 경우는 “첨부 나”의 양식 또는 전력시장운영규칙 또는 한국전력거래소(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달리 요구하는 양식으로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만 하기로 한다. 이 경우 설정자는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서 사본을 대리금융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서 체결일 현재 아직 체결되지 아니한 양도대상계약의 경우에는, 설정자는 그 체결일로부터 오(5)영업일 이내에 동 계약의 상대방에게, ㈀ 설정자가 담보를 위하여 당해 계약상의 채권을 담보권자에게 양도하였고, ㈁ 양도대상계약상의 지위를 담보권자 및 대리금융기관이 지정하여 통지하는 자에게 이전하였음을 “첨부 가”의 양식(또는 그에 준하는 양식)에 의하여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를 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첨부 나”의 양식(또는 그에 준하는 양식)에 의하여 확정일자에 의한 승낙을 받아 대리금융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정자가 관련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서를 받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관련 계약 상대방에 대한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서로 갈음하기로 한다. 이 경우 설정자는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서 사본을 대리금융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담보권자 또는 대리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설정자를 대리하여 양도대상계약의 상대방에게 채권양도 및 계약상의 지위 이전 사실을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있다. 설정자는 이 계약서에 의하여 담보권자 또는 대리금융기관에게 그러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하고, 대출약정서가 존속하는 한 그러한 대리권의 수여를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 5 조 담보권자의 권리 행사**

1. 담보권자가 제2조에 따라 취득한 채권의 행사 -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자는 대출약정서 제13조에 규정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설정자로 하여금 양도대상계약상의 채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따라서, 담보권자 또는 대리금융기관이 대출약정서 제13조에 규정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설정자와 양도대상계약상의 상대방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는 설정자가 양도대상계약상의 채권을 추심하거나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하고, 상대방은 설정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채무를 면하는 것으로 한다. 담보권자 및 대리금융기관이 본 항에 따라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담보권자 및 대리금융기관은 수령한 금액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 제3조에 따른 계약상의 지위의 이전 - ㈀ 대출약정서 제13조에 규정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였고, ㈁ 이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보권자 또는 대리금융기관은 그 취지를 설정자와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3자에게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그 제3자를 특정하여야 하고, 설정자와 계약상대방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상의 지위의 이전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하고 기타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상 사업시행자의 변경을 위하여 주무관청에 의한 사업시행자 재지정 또는 인허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담보권자 또는 대리금융기관이 위 통지를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담보권자 및 대리금융기관과 주무관청간에 사업시행자 재지정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계약상의 지위의 이전은 주무관청의 사업시행자 재지정 또는 인허가의 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에 따라 설정자의 대출약정서상의 지위를 제외한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담보권자는 그 지위의 이전이 효력을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이전된 설정자의 지위에 대한 적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이를 설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담보권자가 평가액 상당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피담보채무액과 비교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다만,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는 제3자가 설정자의 대출약정서상의 지위 또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정산을 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피담보채무의 소멸과 통지**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한 때에는 담보권자 또는 대리금융기관은 설정자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담보권자에게 양도한 채권이 다시 설정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되었다는 취지를 계약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조 비용부담**

담보권자 또는 대리금융기관의 이 계약서에 의한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비용 기타 이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합리적인 비용은 설정자의 부담으로 한다. 담보권자나 대리금융기관이 대신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설정자가 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한다.

**제 8 조 다른 담보약정과의 관계**

설정자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제공한 담보는 이 계약서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설정자가 장래 이 계약서와 별도로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도 같기로 한다.

**제 9 조 통지**

1. 이 계약서상의 통지는 서면으로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주소지 또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로써 지정하는 기타 주소지 또는 연락처로 인편 또는 우편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팩스,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담보권자에 대하여는, 대리금융기관 앞으로 통지하기로 한다.
2. 모든 통지는 인편으로 교부될 경우에는 그 교부일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발송일로부터 칠(7)일이 되는 날에,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에 대한 적절한 확인이 있는 경우 발송한 때에, 각 수령된 것으로 본다. 대리금융기관이 설정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장부 등에 기재된 일자에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 10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계약서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출약정서와 일반적인 금융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이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당사자들간의 모든 제1심 소송이나 절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 11 조 일부무효 등**

이 계약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 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이 계약서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은 다음장에)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첫머리 기재 일자에 각자의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로 하여금 이 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한 후 담보권자의 담보관리기관 겸 대리인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원본을, 나머지 당사자들은 사본을 각 보관하기로 한다.

**차 주 :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겸 설 정 자**

**\_\_\_\_\_\_\_\_\_\_\_\_\_\_\_\_\_\_\_\_**

성명 : 정현

직위 : 대표자 사내이사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지천동 312-5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첫머리 기재 일자에 각자의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로 하여금 이 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한 후 담보권자의 담보관리기관 겸 대리인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원본을, 나머지 당사자들은 사본을 각 보관하기로 한다.

**대 주 : 주식회사 신한은행**

**겸 담보권자** (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담보권자의 담보관리기관 겸 대리인(담보권자를 위하여):**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최준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1, 9층(여의도동, SK증권빌딩)

첨부 가   
**양도담보 관련 통지서 및 승낙서**

일 자 : 2021년 월 일

수 신 : [양도담보대상의 계약상대방]

제 목 : 귀사와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이하 “설정자”) 간에 년 월 일자로 체결된 [*계약 명칭기재*]상의 권리 및 지위 이전

1. 이 통지서는 설정자와 귀사간에 체결된 위 제목 기재의 계약(이하 “양도대상계약”, 추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변경, 또는 보충된 내용을 포함), 설정자, 대주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이하 “담보권자”), 대리금융기관으로서의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대리금융기관”) 사이에 2021년 9월 28일자 금삼십육억육천이백만원(￦3,662,000,000) 우송, 예리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사업 자금재조달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서(이하 “대출약정서”, 추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변경 또는 보충된 내용을 포함)와 관련됩니다.

2. 설정자는 대출원리금 및 기타 대출약정서와 관련하여 설정자가 담보권자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채무(이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28일 담보권자 및 대리금융기관과 채권양도담보계약서(이하 “본건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설정자가 귀사와 체결한 양도대상계약에 의하여 설정자가 이미 취득하였거나 장차 취득할 모든 채권을 담보권자에게 양도(이하 “본건 양도담보권설정”)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설정자 및 대리금융기관은 귀사에게 본건 양도담보권설정사실을 통지하오며, 아울러 본건 양도담보권설정를 승낙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 양도대상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는 여전히 설정자가 부담하고 담보권자는 귀사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나. 귀사가 담보권자 또는 대리금융기관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약정서 제13조에 규정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서면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귀사가 양도대상계약에 따라 설정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담보권자 또는 대리금융기관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귀사는 설정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귀사는 채무를 면합니다.

다. 또한, 설정자는 양도대상계약에 의한 설정자의 지위를 담보권자 또는 대리금융기관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지정하여 통지하는 자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전의 효력은, 귀사가 담보권자 또는 대리금융기관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약정서 제13조에 규정된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서면통지를 받은 때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라. 귀사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상의 지위의 이전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하고 기타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본건 양도담보권설정에 대한 귀사의 이해와 협력에 깊이 감사 드리며, 본 통지서에 첨부된 승낙서의 귀사의 날인란에 날인하시어 담보권자에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정자: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경상북도 상주시 지천동 312-5

대표자 사내이사 정현 (인)

**[확정일자]**

일 자: 2021년 월 일

수 신: **주식회사 신한은행**(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및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참 조: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당사는 상기 통지와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권의 설정 및 양도를 승낙합니다.

**[*양도담보대상의 계약상대방*]**

대표자 (인)

**[확정일자]**

**첨부: 법인인감 증명서 및/또는 사용인감계**

첨부 나

**(채권양도□ / 질권설정□) 통지서**

**[양수인이 1인(1법인)인 경우]**

수 신 : 한국전력거래소

통지일자: 년 월 일*[확정일자와 동일하게 기재]*

1.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소의 회원인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이하 “양도인”이라 함)는 2021년 9월 28일(이하 “계약체결일”이라 함) 귀 소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 각 표시(✔) 채권을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3.2조 제4항, [별표 8]에 따라 주식회사 신한은행(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이하 “양수인”이라 함)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아 래 -

|  |  |
| --- | --- |
| 양도할 채권의 범위 | |
| 해당 발전소 | 발전소명: 우송태양광발전소, 예리 태양광발전소  소재지: 우송태양광: 상주시 지천동 312-5  예리태양광: 경남 창녕군 도천면 예리 산64  설비용량 (kW): 우송태양광 [765.90kW], 예리 태양광 [797.04kW] |
| 양도할 채권  (본 양도통지 도달 이후에 발생하는) | □ 전력거래대금  □ 발전차액지원금  □ 기타(전력거래 이행으로 갖게 되는 금전채권을 특정) |

3. 이에 □ 양도인(□ 양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양수인)은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8]에 따라 귀 소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합니다.

4. 양도인은 위 2.항의 채권에 대한 지급청구·수령 및 정산계좌 지정·변경 권한을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8]에 따라 본 양도통지 도달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합니다.

5. 양도인 및 양수인은 본 채권양도의 효력이 본 양도통지 도달일로부터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8] 7.11.6.5 각 호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6. 양수인은 위 2.항 채권을 귀 소의 회원사가 아닌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거나 질권, 채권양도담보 등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7. 양수인은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3.1조(자금이체) 제3항 및 [별표 8] 7.11.6.3에 따라 아래 표 기재 금융계좌를 정산계좌로 지정‧신고합니다.

- 아 래 -

|  |  |
| --- | --- |
| 양수인이 지정하는 정산계좌 | |
| 은행명(금융기관명) | 우리은행 |
| 예금주 |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
| 계좌번호 | 1005-504-222420 |

8. 양도인 및 양수인은 귀 소가 본 양도통지에 따라 한 정산을 유효한 채무변제로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양도인 및 양수인은 본 채권양도와 경합하는 채권양도, 압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귀 소의 내부규정에 따르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양도인 법인(또는 개인)인감증명

: 양수인 법인(또는 개인)인감증명

: 양도인 사업자등록증

: 양수인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인 경우에 한 함)

: 양도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양수인이 본 양도통지를 할 경우에 한 함)

: 변경 정산계좌 통장 사본(양수인이 지정하는 계좌가 이전에 등록된 정산계좌와 다를 경우만 제출)

년 월 일(확정일자 기재일과 동일)

양도인(회원사) 법인명(성명)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인)

대표자 : 정현

주 소 : 경상북도 상주시 지천동 312-5

양수인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신한은행(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인)

대표자 : [

주 소 : [

[확정일자]

**전력거래 정산계좌 변경신청서**

수 신 : 한국전력거래소

통지일자: 2021년 월 일

1.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양수인(또는 양수인의 대표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는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8] 7.11.6.7에 따라 아래 표 기재 금융계좌를 정산계좌로 변경·신고합니다.

- 아 래 -

|  |  |
| --- | --- |
| 변경 후 양수인이 지정하는 정산계좌 | |
| 은행명(금융기관명) |  |
| 예금주 |  |
| 계좌번호 |  |

붙임 : 양수인이 지정하는 정산계좌 통장 사본

: 양수인 법인(또는 개인)인감증명

: 사용인감계 원본(통장인감과 법인(개인)인감이 다를 경우)

: 양수인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인 경우에 한 함)

년 월 일

양수인(양수인의 대표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인)

대표자 : [

주 소 : [

**별첨 바   
동산양도담보계약서**

이 동산양도담보계약서(“이 계약서”)는 2021년 9월 28일 아래 당사자들간에 체결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1, 9층(여의도동, SK증권빌딩)에 등기된 본사를 두고 있는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이하 “설정자”, “차주” 또는 “채무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이하 문맥에 따라 “대주” 또는 “담보권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1, 9층(여의도동, SK증권빌딩)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고 질권자의 대리금융기관 및 담보관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대리금융기관” 또는 "담보관리기관")

설정자는 우송, 예리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담보권자 및 대리금융기관과 2021년 9월 28일 금삼십육억육천이백만원(￦3,662,000,000) 우송, 예리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사업 자금재조달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서(이하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다(여기서 말하는 대출약정서는 추후 수정, 변경 또는 보충된 대출약정서를 포함한다).

담보권자가 대출약정서에 따른 대출을 하기 위한 인출선행조건의 일부로서 대출약정서에 따라, 담보권자 및 담보권자의 대리금융기관이며 담보관리기관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담보권자를 위하여 담보권자의 대리인으로서)는, 설정자와 이 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 1 조 정 의**

대출약정서에서 정의된 용어들은, 이 계약서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이 계약서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 2 조 양도담보의 설정**

채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채무자의 담보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그 소유인 아래 가목에 기재된 양도담보 대상 물건의 소유권을 담보권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상 물건을 인도하였다.

1. 양도담보 대상 물건 : 사업부지 지상에 건설 또는 설치된 각종 시설물, 공작물, 기자재, 기계, 기구 기타 이건사업시설 일체(이하 “양도물건”)

나. 담보한도 : 금삼십육억육천이백만원(￦3,662,000,000)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다. 피담보채무의 범위 : 대출약정서에 따른 대출원리금 및 기타 금융서류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담보권자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하 “피담보채무”라 한다)

**제 3 조 양도물건의 점유, 관리 등**

(1) 양도물건(제6조에 따라 교체하거나 추가한 물건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은 채무자가 담보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이후 점유, 관리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

(2) 채무자는 양도물건의 점유,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보관장소, 보관설비, 기타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모두 담보권자의 지시에 따르며 담보권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채무자는 담보권자에게 손해 또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떠한 법률상, 사실상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채무자가 양도물건의 소유권을 담보권자에게 양도하고 그 인도를 마쳤다는 표시를 양도물건에 하여야 한다.

**제 4 조 양도물건의 보존 등**

(1) 채무자는 양도물건의 멸실, 훼손, 기타의 사고 또는 가격의 하락이 있거나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곧 이를 담보권자에게 통지하며 이 경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담보권자에게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

(2) 양도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나 기타 다툼이 생길 때에는 채무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하며 담보권자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되거나 그 이익을 해칠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담보가치의 유지**

제4조 제1항의 경우에는 담보권자의 청구에 따라 채무자가 상당액의 물건을 즉시 보충하여 담보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 6 조 양도물건의 변경**

(1) 채무자는 양도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또는 새로 물건을 들여올 때에는 담보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교체한 물건이나 새로 들여온 물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도 이 계약에 의하여 모두 담보권자에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보며, 이러한 내용을 교체한 물건이나 새로운 물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양도물건에 부합된 물건도 당연히 이 계약에 의하여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한다.

**제 7 조 양도담보권의 실행**

(1)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할 때에는 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2) 담보권자는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양도물건을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물건을 취득할 수 있기로 한다. 이 경우에 담보권자는 그 처분 또는 취득 후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담보권자는 양도물건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나 화해를 할 수 있으며, 양도물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절차를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명의로) 제기하거나 취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양도물건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피담보채무의 변제 및 그 실행비용의 지출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는 그 부족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4) 담보권자는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이상 양도물건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에 관한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 계약으로써 채무자는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말미암아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때 담보권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명의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하고 이러한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위임장의 교부 등 기타 담보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매도증서 기타 소유권이나 권리의 확인서를 작성, 날인하여 양도물건을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2. 기타 이 계약의 다른 규정에 따라 요구되거나 담보권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일체를 작성, 날인, 교부 기타 방법으로 완성하는 행위

**제 8 조 양도물건의 인도, 대리처분**

(1) 담보권자로부터 양도물건의 인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고 언제든지 담보권자에게 양도물건을 인도한다.

(2) 담보권자가 양도물건을 처분할 경우 담보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에 따라 채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매매계약 기타 필요한 행위를 대리하여 처리하며 매각처분의 대금은 즉시 담보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9 조 물상대위**

양도물건에 관하여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제3자에 대한 보험금, 배상금, 보상금 등의 청구권이 생긴 때에는 담보권자는 이를 수령하여 그 수령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제 10 조 양도물건의 회보, 조사**

(1) 채무자는 양도물건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담보권자가 지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양도물건명세표를 작성하여 담보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담보권자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청구할 때에는 곧 그 당시의 양도물건명세표를 작성 제출하기로 한다.

(2) 담보권자가 필요에 따라 양도물건의 조사에 임할 경우, 채무자는 언제든지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11 조 비용부담**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담보권자의 이 계약에 의한 권리의 보전이나 행사 등에 관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담보권자가 이를 대신 지급한 때에는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 12 조 양도**

(1) 담보권자는 피담보채무에 관한 거래약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언제든지 이 계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채무자는 담보권자가 만족하는 양식과 내용으로 이러한 양도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담보권자에게 제공한다.

(2) 채무자는 담보권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채무자는 양도담보 대상 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채무자가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양도담보 대상 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담보권자의 담보권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 13 조 통지**

* 1. 이 계약서상의 통지는 서면으로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주소지 또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로써 지정하는 기타 주소지 또는 연락처로 인편 또는 우편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팩스,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담보권자에 대하여는, 대리금융기관 앞으로 통지하기로 한다.
  2. 모든 통지는 인편으로 교부될 경우에는 그 교부일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발송일로부터 칠(7)일이 되는 날에,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에 대한 적절한 확인이 있는 경우 발송한 때에, 각 수령된 것으로 본다. 대리금융기관이 설정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장부 등에 기재된 일자에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 14 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된다.

**제 15 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의 체결, 이행 또는 이 계약의 위반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6 조 양도담보의 해지**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이 계약에 따라 양도물건에 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는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 17 조 일부무효 등**

이 계약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 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이 계약서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은 다음장에)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첫머리 기재 일자에 각자의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로 하여금 이 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한 후 담보권자의 담보관리기관 겸 대리인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원본을, 나머지 당사자들은 사본을 각 보관하기로 한다.

**차 주 :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겸 설 정 자**

**\_\_\_\_\_\_\_\_\_\_\_\_\_\_\_\_\_\_\_\_**

성명 : 정현

직위 : 대표자 사내이사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지천동 312-5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첫머리 기재 일자에 각자의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로 하여금 이 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한 후 담보권자의 담보관리기관 겸 대리인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원본을, 나머지 당사자들은 사본을 각 보관하기로 한다.

**대 주 : 주식회사 신한은행**

**겸 담보권자** (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담보권자의 담보관리기관 겸 대리인(담보권자를 위하여):**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최준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1, 9층(여의도동, SK증권빌딩)

**별첨 사**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이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이하 “이 계약서”)는 2021년 9월 28일 아래 당사자들간에 체결되었다.

1. 경상북도 상주시 지천동 312-5에 그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이하 “차주”)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2, 10층(대치동, 홍우빌딩)에 그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센트럴이엔지 및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56, 에이동 3401호(도곡동, 타워팰리스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현(이하 ㈜센트럴이엔지, 정현을 합하여 “설정자(들)”)
3.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대주 겸 질권자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이하 문맥에 따라 “대주” 또는 “질권자”)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1, 9층(여의도동, SK증권빌딩)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고 질권자의 대리금융기관 및 담보관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대리금융기관” 또는 "담보관리기관")

**전 문**

차주는 우송, 예리 태양광발전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와 2021년 9월 28일자 금삼십육억육천이백만원(￦3,662,000,000) 우송, 예리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사업 자금재조달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서(이하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다(여기서 말하는 대출약정서는 추후 수정, 변경 또는 보충된 대출약정서를 포함한다).

설정자는 대출약정서에 따른 차주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자가 보유하거나보유할 예정인 차주 발행 주식(이하 “대상주식”)에 대하여 질권자에게 근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바, 대출약정서에 따라, 질권자 및 질권자의 담보관리기관 겸 대리금융기관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질권자를 위하여 질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차주와 이 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1조 정의 및 해석**

제1항 정의

대출약정에서 정의된 용어 및 표현은, 이 계약에서 달리 정의하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계약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이 계약에서 어떠한 계약이나 서류를 지칭할 경우, 이는 그때 그때 변경, 수정, 보충된 계약이나 서류를 지칭한다. 추가적으로 다음의 용어들은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권리실행사유”는 대출약정서상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차주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대상주식”은 전문에 기재된 의미를 가지며 이 계약 체결일 현재 대상주식은 부록 I에 기재된 바와 같고, 추가대상주식에 대한 추가근질권이 설정되는 경우 그 날부터 당해 추가대상주식을 포함한다.

“추가대상주식”은 제4조 제3항 나.호에 기재된 의미를 가진다.

제2항 해석

대출약정 제1조 제1항은 이 계약에 준용한다.

**제2조 근질권의 설정 등**

제1항 근질권의 설정 및 대항요건의 구비

가. 대출원리금 및 기타 대출약정서와 관련하여 차주가 질권자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채무(이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자는 이 계약에 따라 질권자에게 대상주식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질권자는 이 계약에 따라 근질권을 취득한다.

나. 설정자는, 인출일에, (i) 이 계약에 따른 근질권이 설정되었음이 명시될 수 있도록 차주로 하여금 차주의 주주명부에 근질권의 설정사실 및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ii) 차주로부터 그와 같은 주주명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대리금융기관에게 교부하며, (iii) 차주로 하여금 대상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전부 발행하게 하여 교부받은 후 모든 발행 주권에 근질권 설정사실 및 질권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그 주권을 대리금융기관에게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설정자는, 인출일에, (i) “첨부 가” 양식에 의한 처분승낙서와 (ii) “첨부 나” 양식에 의한 양도증서 및 (iii) “첨부 다” 양식에 의한 위임장을 대리금융기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채권최고액

이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근질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최고액은 금삼십육억육천이백만원(￦3,662,000,000)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항 근질권의 효력범위

이 계약에 따른 근질권의 효력은, (i) 대상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및 전환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현금, 주식 및 기타 모든 권리와 (ii) 설정자가 차주에 대해 가지는 이익(이자)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지분배당청구권 및 기타 모든 권리에 미친다.

제4항 비용 등

설정자는 이 계약에 따른 근질권의 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만일 근질권 설정 과정에서 질권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3조 설정자의 진술 및 보장**

설정자는 질권자에게 아래 사항을 진술 및 보장한다. 또한, 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설정자는 아래 사항을 계속적으로 진술 및 보장한다.

가. 차주는 한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법인이며, 설정자는 대상주식을 부록 I 기재와 같이 각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

나. 설정자는 ① 대상주식을 보유하고, ② 이 계약에 따른 각종 의무를 부담하며, ③ 이 계약 및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관련 서류들을 체결, 교부하여 그 모든 조건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적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 설정자는 대상주식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근질권 기타 담보권을 설정해 주거나 양도하거나 달리 처분한 바 없다(단, 이 계약에 따른 근질권은 제외). 이 계약에 따라 질권자는 대상주식에 대하여 최우선순위의 근질권을 취득하며, 이러한 근질권 설정에 더 이상의 조건 성취나 요건 기타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 이 계약의 체결 및 이 계약에 따른 근질권의 설정이 설정자에게 적용되는 법률, 명령, 기타 법규범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설정자가 당사자이거나 설정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 합의,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지시 등에 따른 설정자의 어떠한 의무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마. 설정자는 이 계약의 체결,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근질권 설정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구비하였다.

바. 이 계약은 설정자에 대하여 유효, 적법한 구속력을 가지며, 이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권리는 그 조건에 따라서 설정자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및 기타 채권자들의 권리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에 의해 그 집행이 제한될 수 있다.

사. 설정자의 이 계약에 따른 근질권설정행위는 설정자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며, 설정자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아. 이 계약에 따른 근질권의 설정에 따라 질권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나 제세공과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4조 설정자의 준수사항**

설정자는 피담보채무가 존속하는 한, 질권자에게 아래 사항을 이행하고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제1항 근질권의 보존

설정자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이 계약상 질권자에게 부여되었거나 부여될 근질권을 보존(대항요건의 구비 포함) 및 질권자의 권리실행을 위하여 각종 증서, 통지, 서류의 작성 및 교부 기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항 처분금지 등

설정자는 이 계약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권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가 없는 한, 대상주식을 양도, 매도하거나 대상주식에 추가로 근질권을 설정하거나 달리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기타 이를 손상, 감소, 멸실 또는 실효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 추가대상주식의 취득 등

가. 질권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가 없는 한, 이 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계속하여 설정자는 대상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이 계약 체결 후 차주가 그 전체 지분을 증가시킬 경우(증자 결의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설정자는 그러한 지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연대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설정자는 “첨부 라” 양식의 추가주식근질권설정확약서를 작성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하고 설정자가 취득하게 되는 지분 전부(이하 “추가대상주식”)에 이 계약상 근질권이 설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위 나.호의 경우 설정자는:

(a) 차주로 하여금 지체 없이 ① 관할등기소에 새로운 지분 발행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도록 하고, ② 추가대상주식에 대하여 이 계약상 질권자가 질권자로서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주주명부의 사본을 대리금융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③ 추가대상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전부 발행하게 하여 교부받은 후 모든 발행 주권에 근질권 설정사실 및 질권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그 주권을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승낙서, 양도증서 및 위임장을 대리금융기관에게 교부하도록 하여야 하고,

(b) 기타 추가대상주식에 대하여 질권자를 위하여 설정된 근질권을 보존하고 그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거나 차주 기타 제3자로 하여금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이 계약상 대상주식에 관하여 질권자에게 인정되는 모든 권리는 추가대상주식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제4항 기타

설정자는, 피담보채무액 및 근질권실행에 관한 비용이 전액 변제되기 이전에는 (i) 이 계약 기타 거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신에게 부과된 모든 의무를 계속하여 이행하고 그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며, (ii) 차주에 대하여 구상권 및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제5조 배당 및 의결권의 행사**

제1항 권리실행사유 발생 이전의 운영

권리실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설정자는 본 조 제3항 및 기타 거래계약의 조건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계약 및 기타 거래계약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대상주식으로 인하여 또는 대상주식 대신에 받을 수 있는 금전이나 재산을 수령할 수 있다.

제2항 권리실행사유 발생 이후의 운영

권리실행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는 경우, 질권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대상주식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항 의결권의 행사

설정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의 행사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 질권자 전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아래 사항들을 채택하는 어떠한 결의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차주와 다른 회사 간의 합병

2) 차주의 자산, 기타 재산이나 수익의 전부 혹은 주요부분의 매각

3) 차주의 주요 사업계획의 변경

4) 차주 정관의 주요부분의 변경

5) 차주의 자본 감소

6) 차주의 신주발행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파산절차, 회생절차, 보전처분 결정 및 그와 유사한 절차(「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 인정,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 등 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의 개시신청

8) 차주의 해산이나 청산

9) 기타 질권자의 이익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경

**제6조 질권자의 권리 실행**

제1항 근질권의 실행

차주에게 권리실행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는 경우, 질권자는 즉시,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피담보채무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질권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질권자는 질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 1) 질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취지 및 2) 질권의 실행을 저지하기 위하여서는 피담보채무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설정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설정자가 이러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일십(10)영업일 이내에 피담보채무의 전부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질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는 아래 사항들이 포함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아래 나.호의 경우 질권자는 대상주식을 처분하여 변제충당하거나, 변제에 갈음하여 대상주식을 취득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 내에서, 대상주식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자로서의 의결권 기타 대상주식에 부여된 모든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첨부 다” 양식의 위임장에 따른 의결권 등의 대리 행사 포함)

나. 질권자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대상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 경우 질권자는 대상주식의 전부나 일부를 일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가격, 시기, 방법으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할 수 있다.)

다. 질권자의 명의나 설정자의 명의로, 대상주식으로 인하여 또는 대상주식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는 금원 기타 재산을 직접 수령하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소송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제2항 잔존채무의 존속

제1항에 따라 질권자가 수령한 금액이 피담보채무액 및 근질권실행에 관한 비용을 전부 상환하는 데 부족한 경우, 차주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여전히 상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각종 비용과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금원이 있는 경우 질권자는 즉시 그 초과분을 설정자에게 반환한다.

제3항 추심금의 충당순서

제1항에 따라 질권자가 수령한 금액이 피담보채무액 및 근질권의 실행에 관한 비용을 전부 상환하는데 부족한 경우에는 대출약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제4항 항변권의 포기

질권자가 제1항에 따라서 영업상 합리적인 방식으로 대상주식을 처분한 경우, 질권자는 이에 관하여 설정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설정자는 질권자가 대상주식을 처분한 가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일체의 항변권을 이 계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제7조 담보의 계속성 및 개별성**

가. 이 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담보권은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지 않는 한 피담보채무를 위하여 계속적인 담보로서 유효하다.

나. 이 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담보는, 질권자가 피담보채무를 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취득할 다른 담보(설정자가 설정한 것이든 다른 제3자가 설정한 것이든 불문한다)에 추가하여 설정된 것이지 그 대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또한 그러한 담보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또한 다른 담보에 대하여 한도액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액 위에 이 계약에 의한 피담보채무액이 누적되는 것으로 한다. 본 항은 설정자가 질권자에 대하여 장래에 별도의 담보제공을 하거나 보증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다. 이 계약이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질권자가 가지는 각종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질권자가 사전에 ① 설정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판결을 받거나 ② 설정자의 해산이나 청산을 신청하거나 ③ 대상주식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다른 담보를 실행할 필요가 없다.

라. 질권자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서 이 계약상 피담보채무나 설정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다른 담보권과 관련하여 설정자 혹은 그 이외의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부여하거나 지불을 유예해 주거나 달리 협상을 할 수 있는바, 그러한 사실이 이 계약상 근질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양도**

이 계약 및 이 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담보는 설정자와 질권자 및 그 승계인이나 양수인에 대하여 유효, 적법한 구속력을 가진다.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지 양도할 수 있고, 어느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따른 근질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설정자는 (i)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가 질권자의 모든 권리를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ii) 피담보채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통지나 승낙)가 없이도 이 계약에 따른 근질권이 이전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설정자는 질권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가 없는 한 이 계약상 설정자의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계약의 종료 및 근질권의 해지**

이 계약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피담보채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피담보채무가 전부 이행되는 즉시 질권자는 근질권설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근질권설정 해지의 통지, 기타 근질권설정 해지에 필요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질권자가 입은 손해나 지출한 비용은 설정자가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의 배상**

가. 설정자는, 이 계약에 따른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질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한다.

나. 설정자는 이 계약에 따른 진술 및 보장이 허위이거나 잘못된 경우 그로 인하여 질권자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1조 준거법 및 관할**

이 계약 및 이 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근질권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2조 기타**

제1항 개별성

이 계약의 일부 조항이 위법하여 무효로 된 경우, 이 계약은 당해 조항이 없는 것처럼 해석되고, 이 계약상 권리, 의무도 그에 따라 해석된다.

제2항 수정

이 계약의 수정이나 조건의 포기는 이 계약의 당사자의 서면동의 또는 서면계약에 의하여만 효력이 발생한다.

제3항 부본

이 계약은 수통의 부본으로 작성될 수 있다. 이 계약의 당사자들이 서명한 개개의 부본 또는 부본 세트는, 각 경우에 있어서, 모든 목적을 위한 완전한 원본 계약이 된다.

제4항 표제

이 계약의 표제와 제목은 단순히 편의를 위하여 기재된 것으로 이 계약의 효력 및 해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제5항 완전합의

이 계약과 그에 언급된 서류 및 그 내용들은 대상주식에 관한 당사자들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고 이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이 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진 당사자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제6항 조항간 모순

이 계약의 규정과 대출약정의 규정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대출약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7항 권리포기의 부인 및 누적적 권리

질권자가 서면으로 명확하게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어떠한 조치(이행청구의 지연이나 해태, 이행청구를 하지 않거나 기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질권자가 이 계약상 권리를 포기하거나 권리실행사유의 발생을 묵인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또한 질권자가 이 계약상 인정되는 어떠한 권리를 실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당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또한 질권자는 특정한 권리를 실행하지 않더라도, 그 이외의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권리행사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아니한다.

제8항 개별적∙누적적 권리

이 계약이나 법에 의해 질권자에게 부여된 각각의 권리, 권능 및 구제수단은 개별적∙누적적이며, 질권자는 수시로 그러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다음 장에)*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첫머리 기재 일자에 각자의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로 하여금 이 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한 후 질권자의 담보관리기관 겸 대리인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원본을, 나머지 당사자들은 사본을 각 보관하기로 한다.

**설정자 :**

**㈜센트럴이엔지**

**\_\_\_\_\_\_\_\_\_\_\_\_\_\_\_\_\_\_\_\_**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2, 10층(대치동, 홍우빌딩)

대표자 사내이사 정재건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첫머리 기재 일자에 각자의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로 하여금 이 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한 후 질권자의 담보관리기관 겸 대리인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원본을, 나머지 당사자들은 사본을 각 보관하기로 한다.

**설정자 :**

**정현**

**\_\_\_\_\_\_\_\_\_\_\_\_\_\_\_\_\_\_\_\_**

주소: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56, 에이동 3401호(도곡동, 타워팰리스아파트)

주민등록번호: 830216-1\*\*\*\*\*\*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첫머리 기재 일자에 각자의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로 하여금 이 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한 후 질권자의 담보관리기관 겸 대리인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원본을, 나머지 당사자들은 사본을 각 보관하기로 한다.

**대 주 : 주식회사 신한은행**

**겸 질 권 자** (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질권자의 담보관리기관 겸 대리인(질권자를 위하여):**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최준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1, 9층(여의도동, SK증권빌딩)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첫머리 기재 일자에 각자의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로 하여금 이 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한 후 질권자의 담보관리기관 겸 대리인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원본을, 나머지 당사자들은 사본을 각 보관하기로 한다.

**차 주 :**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_\_\_\_\_\_\_\_\_\_\_\_\_\_\_\_\_\_\_\_**

성명 : 정현

직위 : 대표자 사내이사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지천동 312-5

부록

**주식의 목록**

|  |  |  |
| --- | --- | --- |
| **주주명** | **보유(예정)출자지분(주)** | **지분비율(%)** |
| ㈜센트럴이엔지 | 432,000주 | 90 |
| 정현 | 48,000주 | 10 |
| **합계** | **480,000주** | **100.0** |

# 기타 차주 자본내역

1. 발행회사: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2. 1좌의 금액: 오백원(￦500)

첨부 가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귀중**

(아래 정의된 대출약정서상 대주의 대리금융기관으로서)

**처 분 승 낙 서**

이 처분승낙서는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차주”)와 대주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대주”) 및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대리금융기관”)사이에 2021년 9월 28일자로 체결된 금삼십육억육천이백만원(￦3,662,000,000) 우송, 예리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사업 자금재조달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서(“대출약정서”, 추후 변경, 수정 또는 보충된 대출약정서를 포함한다) 및 대출약정서에 따른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28일 질권자와 당사(본인) 등 사이에 체결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와 관련됩니다.

이 처분승낙서에서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처분승낙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대출약정서 및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당사(본인)는 차주에 대한 주주이자 이 처분승낙서에 첨부된 부록에 기재된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에 따라 위 주식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였던바,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차주가 대출약정서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질권자가 위 주식을 직접 처분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당사(본인)는 위 주식을 처분하기 위하여 또는 처분 후 주식의 명의개서 등 위 주식의 처분과 관련하여 질권자가 요청하는 모든 필요한 협력을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20\_\_\_년 \_\_\_월 \_\_\_일

**㈜센트럴이엔지**

**\_\_\_\_\_\_\_\_\_\_\_\_\_\_\_\_\_\_\_\_**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2, 10층(대치동, 홍우빌딩)

대표자 사내이사 정재건

부록

**주식의 목록**

|  |  |  |
| --- | --- | --- |
| **주주명** | **보유(예정)출자지분(주)** | **지분비율(%)** |
| ㈜센트럴이엔지 | 432,000주 | 90 |
| 정현 | 48,000주 | 10 |
| **합계** | **480,000주** | **100.0** |

# 기타 차주 자본내역

1. 발행회사: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2. 1좌의 금액: 오백원(￦500)

첨부 가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귀중**

(아래 정의된 대출약정서상 대주의 대리금융기관으로서)

**처 분 승 낙 서**

이 처분승낙서는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차주”)와 대주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대주”) 및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대리금융기관”)사이에 2021년 9월 28일자로 체결된 금삼십육억육천이백만원(￦3,662,000,000) 우송, 예리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사업 자금재조달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서(“대출약정서”, 추후 변경, 수정 또는 보충된 대출약정서를 포함한다) 및 대출약정서에 따른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28일 질권자와 당사(본인) 등 사이에 체결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와 관련됩니다.

이 처분승낙서에서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처분승낙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대출약정서 및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당사(본인)는 차주에 대한 주주이자 이 처분승낙서에 첨부된 부록에 기재된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에 따라 위 주식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였던바,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차주가 대출약정서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질권자가 위 주식을 직접 처분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당사(본인)는 위 주식을 처분하기 위하여 또는 처분 후 주식의 명의개서 등 위 주식의 처분과 관련하여 질권자가 요청하는 모든 필요한 협력을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20\_\_\_년 \_\_\_월 \_\_\_일

**정현**

**\_\_\_\_\_\_\_\_\_\_\_\_\_\_\_\_\_\_\_\_**

주소: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56, 에이동 3401호(도곡동, 타워팰리스아파트)

주민등록번호: 830216-1\*\*\*\*\*\*

부록

**주식의 목록**

|  |  |  |
| --- | --- | --- |
| **주주명** | **보유(예정)출자지분(주)** | **지분비율(%)** |
| ㈜센트럴이엔지 | 432,000주 | 90 |
| 정현 | 48,000주 | 10 |
| **합계** | **480,000주** | **100.0** |

# 기타 차주 자본내역

1. 발행회사: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2. 1좌의 금액: 오백원(￦500)

첨부 나

**양수인:** 귀중

**양 도 증 서**

이 양도증서는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차주”)와 주식회사 신한은행(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이하 “대주” 또는 “질권자”) 및 대리금융기관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사이에 2021년 9월 28일자로 체결된 금삼십육억육천이백만원(￦3,662,000,000) 우송, 예리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사업 자금재조달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서(“대출약정서”, 추후 변경, 수정 또는 보충된 대출약정서를 포함한다) 및 2021년 9월 28일 질권자와 당사(본인) 등 사이에 체결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와 관련됩니다.

이 양도증서에서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양도증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대출약정서 및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당사(본인)는 차주에 대한 주주이자 이 양도증서에 첨부된 부록에 기재된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에 따라 위 주식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였던바, 이에 위 주식을 귀사에게 양도합니다. 당사(본인)는 질권자에게,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차주가 대출약정서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질권자가 재량에 따라 위 양수인의 명의를 적절히 기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이러한 권한의 부여는 피담보채무가 완전히 이행되거나 소멸한 것으로 질권자가 결정할 때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이 양도증서에 의하여 위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는 차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당사(본인)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_\_\_년 \_\_\_월 \_\_\_일

**㈜센트럴이엔지**

**\_\_\_\_\_\_\_\_\_\_\_\_\_\_\_\_\_\_\_\_**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2, 10층(대치동, 홍우빌딩)

대표자 사내이사 정재건

부록

**주식의 목록**

|  |  |  |
| --- | --- | --- |
| **주주명** | **보유(예정)출자지분(주)** | **지분비율(%)** |
| ㈜센트럴이엔지 | 432,000주 | 90 |
| 정현 | 48,000주 | 10 |
| **합계** | **480,000주** | **100.0** |

# 기타 차주 자본내역

1. 발행회사: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2. 1좌의 금액: 오백원(￦500)

첨부 나

**양수인:** 귀중

**양 도 증 서**

이 양도증서는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차주”)와 주식회사 신한은행(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이하 “대주” 또는 “질권자”) 및 대리금융기관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사이에 2021년 9월 28일자로 체결된 금삼십육억육천이백만원(￦3,662,000,000) 우송, 예리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사업 자금재조달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서(“대출약정서”, 추후 변경, 수정 또는 보충된 대출약정서를 포함한다) 및 2021년 9월 28일 질권자와 당사(본인) 등 사이에 체결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와 관련됩니다.

이 양도증서에서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양도증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대출약정서 및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당사(본인)는 차주에 대한 주주이자 이 양도증서에 첨부된 부록에 기재된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에 따라 위 주식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였던바, 이에 위 주식을 귀사에게 양도합니다. 당사(본인)는 질권자에게,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차주가 대출약정서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질권자가 재량에 따라 위 양수인의 명의를 적절히 기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이러한 권한의 부여는 피담보채무가 완전히 이행되거나 소멸한 것으로 질권자가 결정할 때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이 양도증서에 의하여 위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는 차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당사(본인)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_\_\_년 \_\_\_월 \_\_\_일

**정현**

**\_\_\_\_\_\_\_\_\_\_\_\_\_\_\_\_\_\_\_\_**

주소: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56, 에이동 3401호(도곡동, 타워팰리스아파트)

주민등록번호: 830216-1\*\*\*\*\*\*

부록

**주식의 목록**

|  |  |  |
| --- | --- | --- |
| **주주명** | **보유(예정)출자지분(주)** | **지분비율(%)** |
| ㈜센트럴이엔지 | 432,000주 | 90 |
| 정현 | 48,000주 | 10 |
| **합계** | **480,000주** | **100.0** |

# 기타 차주 자본내역

1. 발행회사: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2. 1좌의 금액: 오백원(￦500)

첨부 다

**위 임 장**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주주인 당사(본인)가 보유하고 있는 첨부 부록에 기재된 주식(이하 “보유주식”)에 대하여 \_\_\_\_\_\_\_\_\_\_\_\_\_\_(주민등록번호: \_\_\_\_\_\_\_\_\_\_\_\_\_\_\_)을 아래의 권한을 가진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1. 회사의 20\_\_\_년 \_\_\_월 \_\_\_일자 \_\_\_\_\_\_\_주주총회에 참석
2. 제1항에 명시된 주주총회의 의안에 대하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3. 제1항에 명시된 주주총회가 서면결의방식에 의할 때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4. 당사(본인)가 위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 행할 기타 모든 행위

본 위임장은 제1항에서 명시된 주주총회가 종료할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20\_\_\_년 \_\_\_월 \_\_\_일

주주:

**㈜센트럴이엔지**

**\_\_\_\_\_\_\_\_\_\_\_\_\_\_\_\_\_\_\_\_**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2, 10층(대치동, 홍우빌딩)

대표자 사내이사 정재건

부록

**주식의 목록**

|  |  |  |
| --- | --- | --- |
| **주주명** | **보유(예정)출자지분(주)** | **지분비율(%)** |
| ㈜센트럴이엔지 | 432,000주 | 90 |
| 정현 | 48,000주 | 10 |
| **합계** | **480,000주** | **100.0** |

# 기타 차주 자본내역

1. 발행회사: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2. 1좌의 금액: 오백원(￦500)

첨부 다

**위 임 장**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주주인 당사(본인)가 보유하고 있는 첨부 부록에 기재된 주식(이하 “보유주식”)에 대하여 \_\_\_\_\_\_\_\_\_\_\_\_\_\_(주민등록번호: \_\_\_\_\_\_\_\_\_\_\_\_\_\_\_)을 아래의 권한을 가진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1. 회사의 20\_\_\_년 \_\_\_월 \_\_\_일자 \_\_\_\_\_\_\_주주총회에 참석
2. 제1항에 명시된 주주총회의 의안에 대하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3. 제1항에 명시된 주주총회가 서면결의방식에 의할 때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4. 당사(본인)가 위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 행할 기타 모든 행위

본 위임장은 제1항에서 명시된 주주총회가 종료할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20\_\_\_년 \_\_\_월 \_\_\_일

주주:

**정현**

**\_\_\_\_\_\_\_\_\_\_\_\_\_\_\_\_\_\_\_\_**

주소: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56, 에이동 3401호(도곡동, 타워팰리스아파트)

주민등록번호: 830216-1\*\*\*\*\*\*

부록

**주식의 목록**

|  |  |  |
| --- | --- | --- |
| **주주명** | **보유(예정)출자지분(주)** | **지분비율(%)** |
| ㈜센트럴이엔지 | 432,000주 | 90 |
| 정현 | 48,000주 | 10 |
| **합계** | **480,000주** | **100.0** |

# 기타 차주 자본내역

1. 발행회사: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2. 1좌의 금액: 오백원(￦500)

첨부 라

**추가주식근질권설정확약서**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귀중**

(아래 정의된 대출약정서상 대주의 대리금융기관으로서)

이 확약서는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차주”)와 대주(및 질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및 대리금융기관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사이에 2021년 9월 28일자로 체결된 금삼십육억육천이백만원(￦3,662,000,000) 우송, 예리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사업 자금재조달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서(“대출약정서”, 추후 변경, 수정 또는 보충된 대출약정서를 포함한다) 및 2021년 9월 28일 질권자와 당사(본인) 등 사이에 체결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와 관련됩니다.

이 확약서에서 달리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확약서의 모든 용어는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당사(본인)는 차주에 대한 출자자이자 이 확약서 부록에 기재된 주식(“본건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에 따라 설정된 주식근질권에 추가하여, 본건 주식에 관하여 질권자 앞으로 주식근질권을 설정하는 바입니다. 이 확약서에 따라 추가로 근질권이 설정된 본건 주식에 관하여는 이 확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에 따라 대주에게 교부된 처분승낙서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설정자 :

[ ]

(인)

직 위:

성 명:

**별첨**

**주식의 목록**

**별첨 아**   
**보험근질권설정계약서**

이 보험근질권 설정계약서(“이 계약서”)는 2021년 9월 28일 아래 당사자들간에 체결된다.

경상북도 상주시 지천동 312-5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이하 문맥에 따라 “차주” 또는 “설정자”) 및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이하 문맥에 따라 “대주” 또는 “질권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1, 9층(여의도동, SK증권빌딩)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고 질권자의 대리금융기관 및 담보관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대리금융기관” 또는 "담보관리기관")

차주는 우송, 예리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사업(이하 “이건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질권자 및 대리금융기관과 2021년 9월 28일자 금삼십육억육천이백만원(￦3,662,000,000) 우송, 예리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사업 자금재조달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서(이하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는 바(여기서 말하는 대출약정서는 추후 수정, 변경 또는 보충된 대출약정서를 포함한다),

질권자가 대출약정서에 따른 대출을 하기 위한 선행조건의 일부로서 대출약정서에 따라, 질권자 및 질권자의 담보관리기관 겸 대리금융기관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질권자를 위하여 질권자의 대리인으로서)는, 설정자와 이 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 1 조 해 석**

대출약정서에서 정의된 용어는, 이 계약서에서 달리 정하거나 문맥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서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추가적으로 다음 용어들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1. “본건 보험”은 설정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건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체결하였거나 장래에 체결될 모든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발급되는 보험증권에 의한 보험(보증)(대출약정서 제10조 제4항 및 이 계약서 부록 I 참고)을 말하며, 추후 수정, 변경, 갱신, 대체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 계약서 체결 당시 아직 부보되지 아니한 이건사업관련 보험은 설정자들이 동 보험의 부보와 동시에 이 계약서에 따라 대출약정서에 따라 근질권을 설정할 때 본 건 보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보험금”이란 본건 보험에 따라 현재 및 장래에 지급될 금액 및 그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이익들을 말한다.
3. “보험회사”란 대리금융기관이 인정한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본건 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 2 조 진술 및 보장**

설정자는 이 계약서 체결일 현재 질권자와 담보관리기관에게 다음 사항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하며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 1. 본건 보험은 유효하게 부보되었거나 부보될 것이며, 이 계약서 체결일 현재 발행된 본 건 보험과 관련한 보험증권은 적법하게 발행되었고 완전히 유효하다.
  2. 본건 보험과 관련한 보험료 납부가 지체된 바 없으며, 보험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바 없고, 본건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어떠한 소송이나 법적조치를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우려가 없다.
  3. 설정자는 본건 보험의 적법한 권리자로서 본건 보험이나 본건 보험상의 금전지급청구권을 타에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질권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한 바 없다.
  4. 질권자와 담보관리기관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본 건 보험상의 권리를 취득한 바가 없다.
  5. 이 계약서에 따른 보험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설정자들을 구속하는 어떠한 계약이나 증서에 반하지 않는다.

**제 3 조 보험근질권의 설정 및 대항요건**

1. 설정자는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에 따라 ㈀ 본건 보험상 지불하기로 된 또는 지불하기로 될 모든 청구, 보험료의 반환 및 기타 본건 보험과 관련하여 지급받을 모든 금원과 청구, ㈁ 본건 보험과 관련한 설정자의 기타 권리 및 ㈂ 보험금지급청구권(이하 “보험재산”이라 총칭한다)에 대하여 질권자와 담보관리기관에게 근질권을 설정하고 그 보험증권 원본, 보험회사의 부보의견서 및 기납부한 보험료납부영수증을 담보관리기관에게 교부하기로 합의한다.

1. 담보한도: 대출약정금 금삼십육억육천이백만원(￦3,662,000,000)의 120%

2. 피담보채무의 범위: 대출원리금 기타 대출약정서와 관련하여 차주가 질권자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

1. 설정자는 이 계약서 체결 즉시 본건 보험(수정, 갱신된 것 포함)에 관하여 “첨부 가”의 양식으로 작성한 보험근질권설정통지서를 해당 보험회사에 송부하고,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서를 받아 담보관리기관에게 제출하는 등 대한민국법상 보험근질권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보험업계의 관행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증권(또는 보험인수증)에는 질권자 앞으로 근질권이 설정되었음에 대한 특별배서를 받아야 한다.

**제 4 조 설정자의 의무이행사항**

1. 설정자는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질권자와 담보관리기관에게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1. 대출약정서와 이 계약서에 따라 설정자의 동종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부보조건에 부합하는 수준의 보험을 유지한다.
   2. 본 건 보험에 관한 질권자와 담보관리기관의 권리가 제4조의 조건을 반영하고 “첨부 가”에 기재된 보험금 지급조항을 포함하여 담보관리기관이 만족하는 형태와 내용으로 보험증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3. 본 건 보험의 효력 또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포함한 보험재산을 상실, 저감 또는 불확실하게 하거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게 하거나, 본 건 보험에 관한 계약 또는 보험증권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나 이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다.
   4. 이 계약서에 따른 담보설정을 확실히 하거나 질권자와 담보관리기관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향유하기 위하여, 또는 이 계약서상 보험재산에 관한 권리와 구제수단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약, 증서, 서류의 작성이나 기타 수시로 담보관리기관에 의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2. 설정자는 보험재산 관련 일체의 권리, 권한, 이익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질권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3. 설정자는 이 계약서 또는 이 계약서에 의한 질권설정의 적법성, 유효성, 집행가능성 및 증거력을 갖추기 위한 등록, 신청, 기록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 보험근질권의 효력범위**

이 계약서에 따른 보험근질권의 효력은, 이 계약서 체결일 이후 본건 보험과 관련된 설정자의 모든 보험재산에 미치고, 본 건 보험이 기간연장 또는 개서 계속된 경우나 병합, 분할, 증액, 감액된 경우 등에도 그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나 기타의 조치없이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험업계의 관행상 기간연장 또는 개서 계속된 경우나 병합, 분할, 증액, 감액된 경우 등에 있어서 이 계약서에 따른 보험근질권의 효력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요구되는 경우, 설정자는 질권자 및 당해 보험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제 6 조 피담보채무의 소멸**

대출약정서에 의한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질권자와 담보관리기관은, 설정자의 비용으로, 이 계약서에 따라 설정된 근질권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 7 조 질권자와 설정자의 권리행사**

대출약정서상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지속되는 경우, 질권자와 담보관리기관은 근질권자로서 가지는 모든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거나 설정자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다. 설정자는 이 계약서에 의하여 위와 같은 대리권한을 질권자 및 담보관리기관에게 부여하며, 질권자 및 담보관리기관은 이를 승인한다. 이러한 대리권한의 부여는 대출약정서 및 기타 대출약정서와 관련된 설정자의 모든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제 8 조 설정자의 의무에 대한 영향의 부존재**

이 계약서에 기재된 여하한 반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정자는 보험증권상 그에 따른 의무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계속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관리기관 및 질권자는 이 계약서로 인하여 보험증권상의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담보관리기관 및 질권자는 보험증권상의 설정자의 여하한 의무이든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이행하도록 요구받거나 이행하여야 할 부담을 지지 아니한다.

**제 9 조 권한의 위임**

대출약정서상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계속되어 대출약정서 제13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상실 사실을 동 약정서상의 대리금융기관이 적법하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설정자가 동 통지를 수령한 때로부터 동 채무불이행 상태가 소멸되는(또는 대출약정서에 따라 포기되는) 때까지, 설정자는 담보관리기관 및 그의 승계인이나 양수인을 자신의 진정하고 적법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계약서상 피담보채무의 범위 내에서, 보험증권상 변제기에 달하였거나 변제기가 되는 여하한 모든 금원 및 금원에 대한 청구권을 요청 및 요구하고 이를 수령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적법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수령금액**

이 계약서에 의해 보험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설정자의 보험금은 담보관리기관에 의해 보험사고목적물 복구를 위한 지급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험사고로 인하여 대출약정서상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그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담보관리기관이 판단한 경우 수령한 보험금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제 11 조 양 도**

이 계약서 및 이 계약서에 의한 근질권설정은 설정자와 담보관리기관 및 질권자와 이들 각각의 승계인 및 양수인들을 구속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을 갖는다. 담보관리기관 및 질권자는 영업상 일반적으로 그리고 관련법령에 따라 이 계약서에 의한 자신의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대출약정서가 정한 바에 따라 어느 당사자(각각 “양수인”)에게든 언제라도 양도할 수 있다. 이 계약서의 당사자들은, 여하한 양도의 범위 내에서든, 양수인이, 만일 동 양수인이 이 계약서상의 질권자이었다면 가졌었을 것과 동일한 권리와 이익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설정자는 대주를 대리하는 담보관리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자신의 권리나 의무 중 어떠한 것도 양도할 수 없다.

**제 12 조 위험부담과 면책조항**

설정자는 담보관리기관에게 인도한 보험증권이 불가항력, 사변, 재해 등 담보관리기관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분실, 손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담보관리기관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보험증권을 재교부받아 제출하기로 한다.

**제 13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계약서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출약정서와 일반적인 금융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이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당사자들간의 모든 제1심 소송이나 절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따르기로 한다.

**제 14 조 일부무효 등**

이 계약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개 또는 수개의 조항이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이 계약서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15 조 수 정**

이 계약의 수정, 변경, 개정은 설정자와 질권자가 동의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은 다음장에)*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첫머리 기재 일자에 각자의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로 하여금 이 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한 후 질권자의 담보관리기관 겸 대리인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원본을, 나머지 당사자들은 사본을 각 보관하기로 한다.

**차 주 :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겸 설 정 자**

**\_\_\_\_\_\_\_\_\_\_\_\_\_\_\_\_\_\_\_\_**

성명 : 정현

직위 : 대표자 사내이사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지천동 312-5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첫머리 기재 일자에 각자의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로 하여금 이 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한 후 질권자의 담보관리기관 겸 대리인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원본을, 나머지 당사자들은 사본을 각 보관하기로 한다.

**대 주 : 주식회사 신한은행**

**겸 질 권 자** (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질권자의 담보관리기관 겸 대리인(질권자를 위하여):**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최준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1, 9층(여의도동, SK증권빌딩)

부록 I

**본건 보험의 목록**

|  |  |  |  |
| --- | --- | --- | --- |
| **보험회사** | **보험종류** | **보험기간** | **부보액(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가

**보험근질권 관련 통지서 및 승낙서**

일 자 : 2021년 월 일

수 신 : [ ]

1. 이 통지서는 차주로서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이하 “설정자”), 대주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이하 “질권자”) 및 대리금융기관으로서의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대리금융기관”) 사이에 2021년 9월 28일자로 체결된 금삼십육억육천이백만원(￦3,662,000,000) 우송, 예리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사업 자금재조달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서 (이하 “대출약정서”)와 관련됩니다.

2. 설정자는 대출원리금 및 기타 대출약정서와 관련하여 차주가 질권자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채무(이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28일 질권자와 체결한 보험근질권설정계약(이하 “본건 담보계약”)에 따라, 당사가 귀사와 체결한 관련 보험계약(증권번호 [ ], 이하 “보험계약”)에 의하여 설정자가 피보험자로서 귀사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가지는 일체의 권리와 이익에 관하여 질권자를 위한 보험근질권을 설정(이하 “본건 근질권설정”)하였습니다.

**보험계약의 목록**

|  |  |  |  |
| --- | --- | --- | --- |
| **보험회사** | **보험종류** | **보험기간** | **부보액(원)** |
|  |  |  |  |
|  |  |  |  |

3. 이에 설정자 및 질권자는 귀사에게 본건 근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합니다. 아울러 본건 근질권설정을 승낙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오니, 본 통지서에 첨부된 승낙서에 날인하셔서 질권자 및 대리금융기관에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 본 통지서 수령 이후 귀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은 다음의 보험금지급조항에 따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지급조항

가. 보험계약 및 관련 보험증권에 따라 귀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금원은 귀사가 대리금융기관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로부터 동 금원을 설정자나 그의 지정인에게 지급하라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는 한, 대출약정서에 따라 우리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지점에 개설된 유보계정(계좌번호: 1005-704-222917, 예금주: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나. 귀사가 대리금융기관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설정자가 대출약정서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대리금융기관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가 계좌번호를 지정하여 통지하는 담보계정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 참고로, 위 유보계정의 명의인은 설정자이지만, 당해 유보계정에 관한 설정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질권자를 위한 예금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귀사가 요청하시는 경우 본건 근질권설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본건 담보계약서의 사본과 함께 예금근질권설정계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마지막으로 이건과 관련한 귀사의 이해와 협력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설정자: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_\_\_\_\_\_\_\_\_\_\_\_\_\_\_\_\_\_\_\_**

성 명 : 정현

직 위 : 대표자 사내이사

주 소 : 경상북도 상주시 지천동 312-5

**[확정일자]**

일 자: 2021년 월 일

수 신: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대주겸질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를 위하여)

참 조: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

1. 당사는 위 통지서(이하 “본건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보험근질권의 설정을 동의 및 승낙하며, 대출약정서 및 보험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당사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이에 당사는 다음과 같이 질권자에게 확약합니다:

가. 보험은 이 승낙서 말미에 첨부된 부보조건에 따라서 부보되었습니다.

나. 당사는 모든 보험(귀사의 동의하에 갱신, 대체될 것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에 관련된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이하 “설정자”)의 권리에 대하여, 본건 통지서에 기재된 보험금지급조항에 따라 당사의 의무를 이행하며, 모든 보험에 보험금지급조항을 포함하고 배서할 것입니다.

다. 당사가 수령한 본건 통지서는 모든 보험의 보험증권 등에 첨부될 것입니다.

라. 당사가 본건 통지서를 받기까지 다른 보험양도나 질권설정 등 질권자의 권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제3자(양도인 및 설정자 제외)로부터의 권리설정에 관한 통지를 받은 바 없습니다.

마. 당사의 위 승낙은 당사가 지체된 보험료에 대한 상계나 취소권을 보유하는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만약 보험료가 지체되는 경우 대리금융기관에게 즉시 통지하여 보험료가 납부될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하고, 대리금융기관에게 일십사(14)일 이전에 통지하지 않는 한 보험을 취소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일십사(14)일 내에 지체된 보험료가 설정자 또는 질권자로부터 납입된 경우 보험은 보험료가 지체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유효하나, 동 기간 내에 납입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바. 당사는 보험계약기간 만료 일십사(14)일 전에 그 사실을 대리금융기관에게 통지하고 그 갱신 여부에 관한 여부를 지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대리금융기관에 통지하겠습니다. 또한, 보험의 취소, 무효, 해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대리금융기관에 통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보험회사 상호기재]**

대표이사 (인)

**[확정일자]**

**첨부: 1. 보험조건**

**2. 법인인감 증명서 및/또는 사용인감계**

**별첨 자   
책임운영확약서**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귀중**

(아래 정의된 대출약정서상 대주의 대리금융기관으로서)

하기 서명란에 등기된 본점 주소가 기재된 당사(들) 한화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확약인”)는(은), 우송, 예리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사업(이하 “이건사업”)을 위한 제반 시설(부대시설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일체를 포함함)(이하 “이건사업시설”)의 관리운영회사로서, 경상북도 상주시 지천동 312-5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이하 “차주”)가 이건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이하 “대주”) 및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대리금융기관”)와 체결한 2021년 9월 28일자 금삼십육억육천이백만원(￦3,662,000,000) 우송, 예리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사업 자금재조달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서(이하 “대출약정서”; 추후 대주와 차주간의 계약에 따라 수정, 변경 또는 보충된 대출약정서를 포함함)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확약하고 보증합니다.

이 확약서에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대출약정서에서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1. 확약인은 관리운영위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동 종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건사업시설을 관리, 운영, 유지보수할 것이며, 관리운영위탁계약상의 제반 의무를 관리운영위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행할 것입니다.
2. 확약인은 이건사업, 이건사업부지 및 이건사업시설의 상태(이에 대한 법률관계를 포함함)에 대하여 이미 충분한 검토를 하였고,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법률적, 사실적 하자나 흠결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숙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3. 확약인은 이건사업시설의 관리운영에 투입되는 확약인의 피고용인, 하수급인, 재수탁자 등의 선임, 감독 및 이로 인한 분규와 장비 등의 도입 및 사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4. 확약인은 관리운영위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이건사업시설의 관리운영 중 이건사업시설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하자 발생 이후 지체없이 확약인의 비용과 책임하에 이를 보수할 것이며 만약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확약인은 차주 또는 대주가 확약인의 비용으로 위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5. 확약인은 관리운영위탁계약서에 따른 관리운영수수료는 대출약정서에 따른 유보계정의 자금집행순위에 따라 지급되며, 또한 대주 및/또는 대리금융기관의 승인 하에서만 증액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급 또는 증액되지 않는 관리운영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이건사업시설을 관리운영위탁계약에 정하여진 기간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할 것입니다.
6. 확약인은 관리운영위탁계약서에 따라 이건사업시설의 관리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 안전사고, 인근시설 및 주민을 포함한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 및 손실 기타 제반 민원에 따른 일체의 사항들을 확약인의 전적인 책임하에 처리할 것입니다.
7. 확약인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규제, 민원 등으로 인하여 차주에 대해 벌과금 납부의무, 이건사업시설의 보수의무, 개선조치 이행의무 등 어떤 의무나 책임 등이 발생되는 경우, 그 원인이 확약인의 관리운영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차주의 위와 같은 의무 또는 책임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이에 대해 차주를 면책시킬 것입니다.
8. 확약인은 동종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운영위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이건사업시설의 성능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발전시간 보장 및 최저시스템효율 유지와 미달시 자금보충의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을 이행할 것이며, 이건사업시설의 성능이 관리운영위탁계약 등에 따라 차주와 대주가 예정한 수준 또는 위와 같은 요구사항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9. 확약인은 차주로부터 대출약정서를 교부받아 이건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관리운영회사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 있고, 이에 따라 대출약정서 및 관련 약정서에 포함된 주요 조건에 대하여 숙지하고 이를 승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0. 확약인은 확약인의 차주에 대한 채권은 대출약정서상 자금관리에 대한 제반 조건에 따라 지급되며, 해당 조건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채권의 지급은 대출약정서상 “후순위조건”에 따라 지급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확약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금융기관의 동의 없이는 차주에 대하여 강제집행, 소송의 제기 등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합니다.

[이하 서명페이지]

확약인은 이 책임운영확약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제반 보증의무를 부담할 것을 확약하는 의미에서 아래와 같이 이 책임운영확약서에 기명 날인하여 제출한다.

2021년 9월 28일

**확약인 :**

**한화에너지 주식회사**

\_\_\_\_\_\_\_\_\_\_\_\_\_\_\_\_\_\_\_\_

성 명 : 대표이사 정인섭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케이티앤지 세종타워 4층)

**별첨 차**  **출자자확약서**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 귀중**

(아래 기재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대주의 대리금융기관으로서)

주식회사 신한은행(알파 국내ES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이하 “대주”라 하고, 그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포함함), 대주의 대리금융기관인 귀사(이하 “대리금융기관”) 및 센트럴태양광발전소3호 주식회사(이하 “차주”) 간에 체결된 2021년 9월 28일자 금삼십육억육천이백만원(￦3,662,000,000) 우송, 예리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사업 자금재조달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서(이하 “대출약정서”; 추후 대주와 차주간의 계약에 따라 수정, 변경 또는 보충된 대출약정서를 포함함)와 관련하여, 아래 서명(기명날인)한 출자자(이하 “출자자”)는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확약한다.

**1. 정의**

이 출자자약정서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는 달리 정의되지 않은 한 대출약정서에서의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후순위” 또는 “후순위조건”은 이 출자자확약서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 출자자의 차주에 대한 자금제공과 관련하여, 이 출자자확약서를 포함한 대출약정서에 따른 대출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융관련서류에 따라 차주가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원을 변제받는데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해당 자금을 제공한 출자자가 해당 자금제공에 따른 채권(이자채권, 연체이자 채권, 수수료채권 등을 포함함)의 변제를 받기로 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그에 반하여 출자자가 변제를 받는 경우 이를 대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을 말한다.

**2. 출자자의 확인사항**

출자자는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가. 출자자는 이 출자자약정서 및 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이하 “출자자약정서 등”)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능력 기타 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출자자약정서 등은 유효하게 출자자를 구속한다.

나. 출자자에 의한 출자자약정서 등의 체결 및 이행은 관련 법령, 출자자의 정관 또는 출자자가 체결하거나 그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기존의 계약 또는 약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 출자자는 이건사업의 시행자인 차주의 설립과 출자자가 당사자인 이건사업관련계약서에 따른 출자자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제반인·허가및승인을 받았다.

다. 출자자는 그가 당사자이거나 그에게 구속력이 있는 모든 약정에 관하여 출자자의 영업, 재산 또는 재정상태에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

라. 각각 또는 전체로서, 출자자의 영업, 재산 또는 재정상태에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중재 기타 법적 분쟁이 출자자에 대하여 현재 계속되고 있지 아니하며, 출자자가 아는 한 제기될 우려가 없다.

마. 이 출자자약정서와 관련하여 출자자가 대리금융기관 또는 대주에게 교부한 출자자에 관한 모든 정보는 중요한 점에서 진정하고 정확하며 공개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정보를 불명확하게 할 소지가 있는 모든 사실을 공개하였다.

사. 차주의 주주의 지위에서 이 출자자확약서 제출일 현재 보수청구권, 주금의 반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대여금 채권 등 명목을 불문하고 차주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 또는 권한(“차주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보장하고, 출자자의 차주에 대한 금전채권은 차주로부터 후순위조건에 따라 지급된다.

아. 출자자는 이건사업시설이 공사도급계약서 등 거래서류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았으며, 이건사업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이 전력시장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배전계통에 대한 공급이 개시됨으로써 상업운전이 시작되어 차주가 이건사업시설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임을 확인한다.

**3. 준수사항**

가. 주식근질권의 설정

대출원리금, 연체이자,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차주가 금융관련서류에 따라 또는 그와 관련하여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출자자는 그가 보유하는 차주 발행의 모든 주식에 대하여 대출약정서에 따른 최초인출일 이전에 대주를 질권자로 하여 근질권을 설정하고 그 증권을 대리금융기관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최초인출일 이후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도 같은 절차를 취하기로 한다.

또한, 출자자는 차주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대리금융기관이 질권의 목적인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근질권설정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대리금융기관에게 대리금융기관이 정한 양식의 처분승낙서와 양도증서를 교부하기로 한다.

나. 인허가 등의 유지

출자자는 출자자로서 이건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출자자가 당사자인 거래약정서에 따른 출자자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제반인·허가 및 승인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이를 유지하기로 한다. 또한, 출자자는 그가 당사자인 금융관련서류 기타 그와 관련하여 작성, 체결되는 서류나 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또는 절차(이사회 결의 등을 포함)를 적절히 취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대주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동 확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주식의 처분제한 및 대주의 우선매수권

* 1. 주식의 처분제한

출자자확약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출자자확약서 등에 따른 출자자의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의 기간(“이 출자자확약서의 기간”) 동안 출자자는 차주에 대한 출자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사업관련계약서상의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금융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차주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달리 처분하지 아니한다.

출자자가 대리금융기관의 사전 서면동의를 거쳐 차주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출자자는 이 출자자약정서에 따라 그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양수인이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인수하도록 출자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절차 진행 이전에 차주를 통하여, ㈀ 출자자의 주식양도가 완료된 이후의 출자지분에 따라 이 출자자약정서상의 채무를 부담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서면 또는 새로 작성한 출자자약정서, ㈁ 양수인인 출자자가 체결한 새로운 출자지분근질권설정계약서와 ㈂ 출자자 및/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주무관청의 인허가(필요한 경우)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대리금융기관이 인정하는 서면을 대리금융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채무의 인수가 없거나 인수의 효력이 없는 경우, 주식의 양도는 대주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고, 출자자는 종래의 출자지분에 따라 이 출자자약정서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 1. 대주의 우선매수권
     1. 위 (1)호의 규정을 해함이 없이, 출자자가 차주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는 다음과 같이 동 주식을 우선 매수할 권리를 가진다.

1. 출자자가 자신이 보유하는 차주 발행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출자자 외의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출자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및 양도대상 주식수를 명기한 서면으로 대주에게 주식매도를 청약하여야 하고, 대주는 그 수령일로부터 일십사(14)일 이내에 매수 승낙의사와 매수희망 주식수를 명시한 서면을 출자자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이에 의하여 대주와 출자자 간에는 해당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 서면의 송달일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출자자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면 당해 주식에 대한 양도, 양수가 성립한다. 이 경우, 양도대금은 출자자와 대주가 서로 합의한 주식가치평가기관에 의해 산정된 공정가액으로 한다
2. 대주가 위 ①에 규정된 주식매수의 의사표시 기간 내에 매수하고자 하는 주식수를 밝힌 주식매수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의 송달을 하지 아니하거나 대금 지급기간 내에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자자와 대주 간에 그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대주는 동 주식매수를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 1. 위 (1)호에 따른 주식매도의 청약 후 매수되지 않은 보유주식이 있는 경우, 출자자는 위 (1)호의 조건 충족을 전제로 그 보유주식을 (2)호에 따라 산정된 가격 이상의 금원으로 양도할 수 있다.

라. 이익배당 등의 제한 수락

출자자는 대출약정서 제11조 제3항에 규정된 제한된 지급에 따른 이익 배당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수락한다.

마. 확인사항

출자자는 이 출자자약정서에 포함된 출자자의 확인사항이 항상 진정하고 정확한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공사도급계약서, 관리운영위탁계약서, 일반사무관리위탁계약 및 공급인증서매매계약서 등 관련 준수사항

(1) 출자자는 자신이 당사자인 사업관련계약서상의 차주의 지위 및 제반권리를 대출약정서 및 양도담보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주 또는 대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양도하는데 동의한다.

(2) 출자자는 차주로 하여금 관리운영위탁계약, 공사도급계약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대리금융기관의 동의 없이는 (i) 각 계약상의 권리를 처분(제3자를 위한 권리 설정을 포함)하거나 해지, 취소, 무효화하지 아니하고 (ii) 각 계약상 출자자의 권리에 관한 청구, 소송제기, 강제집행 등 일체의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확약한다.

사. 분쟁 등의 통지

출자자는, 각각 또는 전체로서, 그의 영업, 재산 또는 재정상태에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조사, 수사, 소송, 중재, 행정절차 등의 법적 절차의 개시 기타 법적 분쟁의 발생을 알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대리금융기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아. 대출약정서 체결에 대한 협력

출자자는 대출약정서 체결과 관련하여 (i) 자신이 보유하는 차주 발행 주식에 대한 근질권설정, (ii) 이 출자자약정서의 체결 등 대리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담보설정행위에 협력을 제공하기로 한다.

자.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이 출자자확약서의 기간 동안, 출자자는 대리금융기관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삼(3)개월 이내에 대리금융기관이 만족할 만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또한, 출자자는 대리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출자자의 재정상태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시로 대리금융기관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차. 발전시간보장 확약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시공사의 발전시간보장확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출자자는 위 발전시간보장확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회사에 일체의 지원(기술∙인력지원, 비용부담 및 금전적 지원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다하여야 한다.

카. 대안의 제시

(1) 운영기간 중 이건사업시설의 운영비용이 관리운영수수료,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른 대수선비 및 일반사무위탁수수료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또는 차주의 수입감소로 인하여 운영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출자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대주에게 만족스러운 대안을 대리금융기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출자자는 이건사업의 계속적인 영위를 위하여 관리운영회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이건사업시설에서의 관리운영수수료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 해당 이건사업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필요한 실질적 해결방안(이전 이건사업부지의 제공 또는 주선, 대출약정서상 대출조건의 변경 등을 포함한 자금재조달, 지분인수, 해당 이건사업시설에 대하여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인증서의 지속적인 매입 등)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대주에게 만족스러운 내용으로 대리금융기관에 제시하기로 한다.

타. 연체이자

출자자가 이 출자자확약서에 따른 금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출약정서에 정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4. 출자자의 확약 사항**

가. 출자자는 이 출자자확약서 제출일 이전에 차주에 대하여 납입한 주금, 투자금, 대여금 등 차주에 대한 금전채권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건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대출약정서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정상적인 상환을 위하여 차주에 대한 금전채권을 모두 무상으로 포기할 것을 확약한다.

나. 출자자는 이 출자자확약서 제출일 이후 차주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대출약정서에 따른 대주의 대출원리금채권보다 후순위로 변제받을 것이며, 대출약정서에 따른 대주의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되기 전에는 차주에 대한 금전채권을 행사(재판상, 재판외의 청구)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한다. 특히, 차주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어떠한 제소행위(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도 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한다.

다. 출자자는 차주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대출약정서에 따른 대주의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되기 전에는 차주의 이사로서 차주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차주의 다른 임원 내지 직원들도 위와 같이 보수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지 않도록 할 것을 확약한다.

마. 대출약정서 체결일 현재 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부외부채(“부외부채”)가 있는 경우, 출자자는 차주를 대신하여 부외부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5. 대출약정서 사본의 수령과 권리의 불포기**

출자자는 대출약정서의 사본을 수령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대리금융기관 또는 대주가 대출약정서 또는 이 출자자약정서에 따라 차주 또는 출자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를 지체하더라도 그들이 가지는 권리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 권리의 포기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6. 권리의 양도**

출자자는 대주가 대출약정서의 관련규정에 따라 대출약정서상의 지위, 권리 또는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출자자의 동의 없이 서면통지만에 의하여 이 출자자약정서상의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한다.

**7. 준거법 및 관할합의**

이 출자자약정서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출자자는 이 출자자약정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이나 기타 법적 절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따르기로 한다.

**8. 일부무효 등**

이 출자자약정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 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이 출자자약정서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다음장에)*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출자자는 첫머리 기재 일자에 각자의 적법한 권한 있는자로 하여금 이 출자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한 뒤 대주를 위하여 대리금융기관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제출하였다.

2021년 9월 28일

**출자자 :**

**㈜센트럴이엔지**

**\_\_\_\_\_\_\_\_\_\_\_\_\_\_\_\_\_\_\_\_**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2, 10층(대치동, 홍우빌딩)

대표자 사내이사 정재건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출자자는 첫머리 기재 일자에 각자의 적법한 권한 있는자로 하여금 이 출자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한 뒤 대주를 위하여 대리금융기관인 알파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제출하였다.

2021년 9월 28일

**출자자 :**

**정현**

**\_\_\_\_\_\_\_\_\_\_\_\_\_\_\_\_\_\_\_\_**

주소: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56, 에이동 3401호(도곡동, 타워팰리스아파트)

주민등록번호: 830216-1\*\*\*\*\*\*